

연구보고서 2017-11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효과 제고 방안

| 손태주, 이해응



제주여성가족연구원

발 간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는 정부 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법령·계획·사업 등 정책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여 정책의 성차별적인 원인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정책 수요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성별영향분석평가는 2005년에 1개 사업을 시작으로 2016년 현재 366개 과제로 양적 확대가 지속되었으나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결과를 정책개선에 반영하여 환류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이행점검은 활발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2016년에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했던 제주특별자치도의 제·개정 법령, 계획, 사업을 대상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마지막 지표인 ‘성평등 조치사항’이 2017년에 이루어진 이행현황 분석을 통해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 사례를 발굴하고 제도 효과에 대한 교육 및 홍보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특히 본 연구의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현황을 분석함에 있어서 성평등 조치사항 미이행 사유에 대한 분석과 정책 이행 모니터링 및 공무원 인터뷰 내용까지 분석한 것은 다른 연구와의 차별점인 동시에 이 연구의 목적인 정책효과 제고 방안을 모색하는데 큰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연구가 제주 지역의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정책효과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본 연구가 발간되기까지 많은 도움과 협조를 해주신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담당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더불어 본 연구를 위해 좋은 의견을 주신 전문가 자문위원님과 이행 점검 과정에 협조를 해 주신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담당 공무원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7년 12월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원장 이 은 희

연구 요약

연구 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의 제정('11.9.15) 및 시행('12.3.16)을 통해 대상정책을 제·개정 법령, 계획, 사업으로까지 확대하여 양적 확대가 지속되고 있으나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결과를 정책개선에 반영하고 환류로 연결시키는 등의 정책효과에 대한 검토가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우연·이행숙, 2016)
- 이런 이유로 강경숙 외(2016)는 지난 10년 간 제주특별자치도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추진에 따른 성과 분석 연구를 통해 실질적인 정책개선이 이행되도록 정책 개선 이행 점검 작업의 필요성을 제안함
- 본 연구는 2016년에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했던 제주특별자치도의 제·개정 법령, 계획, 사업을 대상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마지막 지표인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이 2017년에 이루어진 이행현황 분석을 통해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 사례를 발굴하여 제도 효과에 대한 홍보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또한 공무원 대상 인터뷰를 통해 과제 담당자의 성별영향분석평가서 작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교육과 컨설팅 방향을 모색하고 향후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의 정책효과 제고 방안을 제안하고자 수행함

2. 연구 내용 및 방법

가. 연구 내용

-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효과 관련 연구 검토
- 2016년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현황 분석
- '16년 제주특별자치도 제·개정 조례, 계획, 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해 '17년에 실시한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현황 결과 및 공무원 대상 인터뷰 결과 분석
-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정책별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 사례 및 우수사례(안) 선정
-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효과 제고 방안 제안

나. 연구 방법

○ 문헌 연구

- 성별영향분석평가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현황 관련 선행연구 자료 및 제주성별영향 분석평가센터 운영 결과보고서 및 여성가족부의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 자료 검토

○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현황 점검

- 2016년 성별영향분석평가서 검토 및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현황 분석 대상과제 선정
- 2016년 제주특별자치도 제·개정 조례 검색 및 해당 조항 반영 확인
-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 점검 지표 구성 및 이행 점검표 작성, 배포 및 접수·분석
- 정책 이행 모니터링단 구성 및 모니터링단 간담회 4회 개최, 현장 모니터링 실시

○ 공무원 인터뷰

- 정책효과 제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성평등 조치사항 완전이행한 과제 담당자 중심으로 진행하되 사업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실무자, 기관·총괄 담당자 등 총 33명을 대상으로 2017년 11월 10일 ~ 11월 20일 동안 이행결과에 대한 재확인, 실행과정의 어려움, 정책요구 등에 대해 수렴함

<연구 수행 절차>

1단계	연구 설계	⇔	• 연구 방향 및 내용 구성 • 연구 착수 보고
2단계	자료 검토 및 분석평가서 분석	⇔	•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팅 지원 및 추진 현황 검토 • '16년 계획 및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서 분석 ('17. 6.12, 6.26, 6.28, 7.26, 8.1, 8.2, 8.3, 8.4, 8.16, 총 9차례 회의) • '16년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이행현황 분석 ('17. 9.11~9.15, 자치법규정보시스템 활용한 이행현황 점검)
3단계	전문가 및 공무원 의견 수렴	⇔	• 도 내·외 전문가 FGI 2회 실시 : '17. 6.29~7.20 & 11.10~11.20 • 자문회의 2회 개최: '17. 8.25 & 12.4 • 공무원 간담회 3회 개최: '17. 9.1 & 12.11~12
4단계	정책개선 이행현황 분석	⇔	• 2016년 제·개정 조례 중 개선안 수용 과제의 조례 반영 여부 확인 • 2016년에 실시한 계획,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서 분석 - 분석평가서 검토, 이행 점검표 작성/배포/접수 및 분석 • 모니터링단 간담회 4회 개최('17. 10.10 & 11.6 & 11.24 & 12.6) • 공무원 인터뷰·현장 모니터링 실시('17. 11. 7~11. 20) 및 결과 분석
5단계	집필 및 정책제언	⇔	•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 사례 및 우수사례(안) 발굴 •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효과 제고 방안 제안

제2장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현황

1.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및 컨설팅 지원 현황

○ 2016년에 실시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는 전체 366개 과제로 법령 181개, 계획 5개, 사업 180개임

〈 2016년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현황 〉

(단위: 개, %)

구분		전체	법령	계획	사업
전체		366(100.0)	181(100.0)	5(100.0)	180(100.0)
1. 제외대상		34(9.3)	34(18.8)	-	-
평가 대상	2. 원안동의	145(39.6)	108(59.7)	1(20.0)	36(20.0)
	3. 자체개선	91(24.9)	6(3.3)	3(60.0)	82(45.6)
	4. 개선의견	96(26.2)	33(18.2)	1(20.0)	62(34.4)

자료: 2016년 제주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결과보고서.

○ 2016년에 실시한 제주특별자치도의 법령, 계획, 사업의 과제는 366개이며 이 중 344개 과제(94.0%)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함

〈 2016년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팅 실시율 〉

(단위: %)



주: 법령 컨설팅 실시율이 낮은 이유는 제외 법령, 원안동의의 경우에 기관 담당자가 별도의 컨설팅 없이 제출하기 때문임, 계획 및 사업 컨설팅 실시율이 높은 이유는 과제선정 단계에서 제외되거나 대체된 과제들까지 컨설팅이 지원되기 때문임

○ 성별영향분석평가서 검토 단계에서 분석평가책임관(혹은 기관 담당)이 요청한 전문가 검토(컨설팅) 현황을 보면, 187개 과제 중 151개(80.7%) 과제로 높은 비중을 보임

〈 2016년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전문가 검토 실시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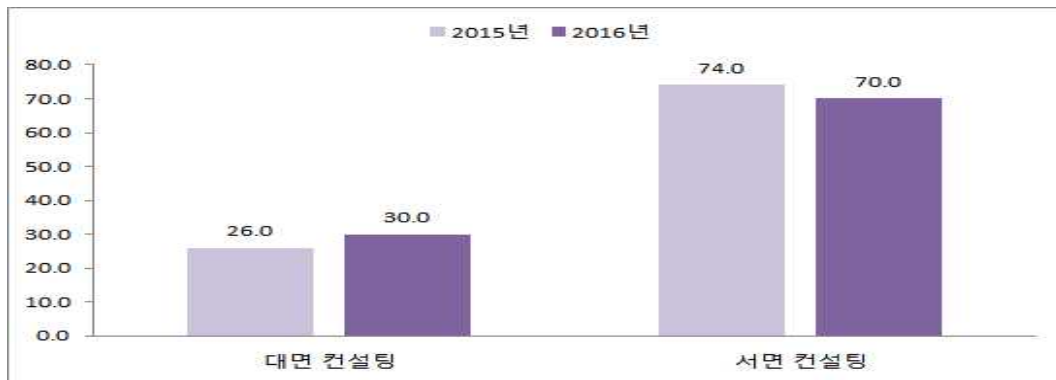
(단위: %)



○ 2016년의 경우 대면컨설팅 비율은 30.0%이고 전년 대비 4.0%p 증가 등 컨설팅 내실화에 주력함

〈 2016년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방법별 컨설팅 실시율 〉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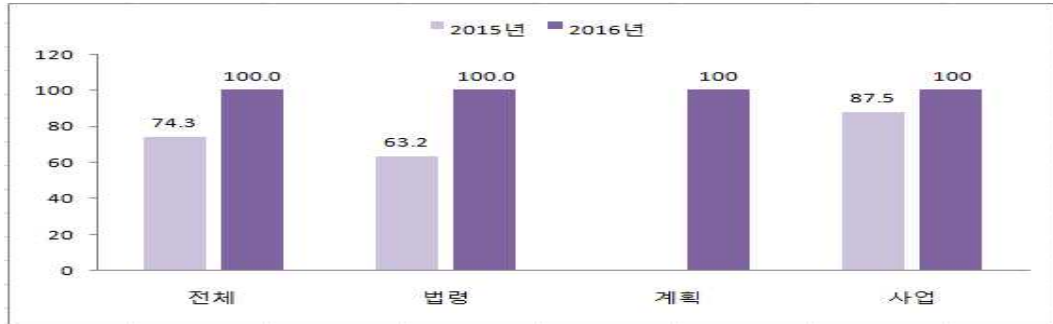


2.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수용 현황

○ 2015년과 2016년에 실시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의견을 통보한 과제의 개선의견 수용률(수용+일부수용) 현황을 보면, 2016년에는 개선의견 통보 96개 과제 모두 수용되어 2015년 개선의견 수용률 74.3% 대비 25.7%p 증가함

〈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검토의견 수용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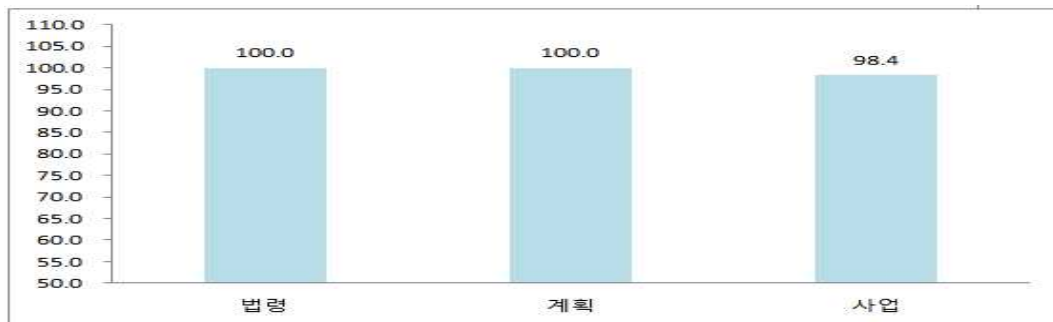
(단위: %)



- 2016년에 실시한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181개 과제 중 제외대상 과제 34개 (18.8%), 원안동의 과제 108개(59.7%), 자체개선 과제 6개(3.3%)였고, 개선의견을 통보한 법령은 33개(18.2%)이며 33개 모두 수용하여 수용률은 100.0%임
-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에 통보된 개선의견 수용률 역시 100.0%이고,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의 개선의견 수용률은 98.4%임(1개 일부 수용)

〈 대상과제 분야별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반영계획 수용률 〉

(단위 : %)



주: 반영계획서에 '개선의견'이 있는 62개 사업과제 중 61개는 '수용'되었고 1개 과제가 '일부 수용'함.

4. 소결

- 2016년에 실시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는 총 366 과제 중 '자체 개선' 및 '개선의견' 과제는 187개 과제(51.1%)이고, 개선의견 통보 96개 과제 모두

- 수용되어 100.0%의 수용률임. 2015년 개선의견 수용률 74.3% 대비 25.7%p 증가한 것임
- 2016년 제주특별자치도의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에 대한 컨설팅 실시율은 94.0% (344개 과제)이고, 분석평가책임관(혹은 기관 담당)이 요청한 전문가 검토(컨설팅) 비중 역시 80.7%로 높으며, 대면 컨설팅 실시율도 30.0%로 2015년 대비 4.0%p 증가함

제3장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현황

1.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현황 분석 개요

-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현황 분석 개요는 다음과 같음

<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현황 분석 개요 >

구 분	내 용
대상	· 2016년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수용과제 207과제 중 144개 과제 (제·개정 조례 39개 과제, 실제 이행점검표를 제출한 계획 3개 과제 및 사업 102개 과제)
기간	· 2017. 6. 12 ~ 8. 16(9차례) : 계획 및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서 분석(연구진) · 2017. 9. 11 ~ 9. 15 : 법제처 국가정보법령정보센터에서 공포된 제·개정 반영 내용 점검 · 2017. 9. 20 ~ 11. 10 : 계획 및 사업에 대한 이행점검표 접수 및 분석 - 3차례에 걸친 이행 점검표 접수(17.9.20~10.20 & 10.23~10.27 & 10.20~11.10) - 현장 모니터링 및 과제 담당·기관 담당 공무원 인터뷰(17.11.7~11.20) - 이행현황 분석 및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 우수사례(안) 발굴
방법	· 성별영향분석평가서 분석 및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 점검표 접수 및 증빙자료 분석 · 완전 이행한 과제 담당자 및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실무자 등 인터뷰 · 정책 이행 모니터링단 구성 및 현장 모니터링 실시
내용	· 분석평가서 작성 수준 및 성평등 조치사항 마련 유무 · 성평등 조치사항 구체성 정도 및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 수준 등

- 이행현황 분석을 위해 2017년 9월 20일부터 11월 10일 동안 공문, 전화, 메일, 팩스 등을 통해 3차례에 걸쳐 접수된 이행점검표는 계획 3개, 사업 103개(원안동의1) 1개 포함임. 이 중 계획 3개 과제와 사업 102개 과제를 이행현황 분석 대상과제로 함
-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2016년 제주여성가족연구원에서 수행한 강경숙 외(2016)의 분석틀을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성인지 정책 전문가 자문회의와 도 내·외 전문가 FGI, 손영숙 외(2015)의 분석틀, 2016년 여성가족부의 성별영향분석

1) 분석평가서에 성차별 요소가 발견되지 않아 개선의견이 없다고 판단되었던 원안동의 과제로 분석대상에서 제외함

평가 지침 등을 통해 대상과제별 분석 기준을 보강하여 구성함

- 법령의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현황 분석 지표는 여성가족부의 2016년 법령 성별영향 분석평가 지표인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 특성', '성별 균형 참여'를 따름
- 계획 및 사업에 대한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현황 분석 지표는 강경숙 외(2016)의 분석틀을 동일하게 유지하되 손영숙 외(2015)의 분석틀을 참고하여 '성평등 조치사항 유무', '성평등 조치사항 구체성 및 성평등 조치사항 내용',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 수준' 등 3단계로 보강하여 구성함

2.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현황 분석 결과

가. 법령

- 제·개정 조례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현황 분석 대상인 39개 제·개정 조례의 성평등 조치사항 반영률은 97.4%(38개)임. 제·개정 조례별로 살펴보면, 제정 조례의 반영률은 100.0%이고 개정 조례의 반영률은 96.8%임
- 이는 중앙부처 법령 대상 정책개선 현황 분석(김희경·조규진, 2013) 결과와 경기도 법령에 대한 정책개선 이행현황 분석(손영숙 외, 2015) 결과와 동일한 경향임

< 2016년 제주특별자치도 법령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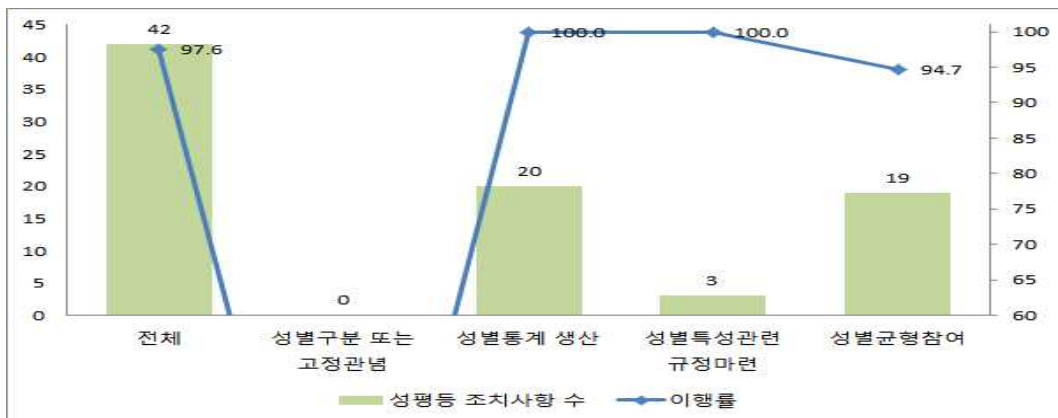
(단위 : 개, %)



- 분석 지표에 따른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현황 분석 대상인 39개 제·개정 조례의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결과를 살펴보면, 반영된 이행 건수가 가장 많은 지표는 '성별 통계 생산'으로, 총 20건의 성평등 조치사항이 제시되었고 20건 모두 이행됨(100.0%)

〈 분석 지표별 법령 성평등 조치사항 수 및 이행률 〉

(단위 : 건, %)



- '성별 특성 고려' 지표에 해당하는 성평등 조치사항은 총 23건임. '성별통계 생산' 지표에 해당하는 조례는 20건(87.0%)이며, '성별특성 관련 규정 마련' 지표에 해당하는 조례는 3건(13.0%)임
- '성별통계 생산'과 관련된 성평등 조치사항은 대부분 2014년 8월 7일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을 토대로 법령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엄격히 제한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성별분리 통계 생산'을 위해 각종 서식의 인적 기재란에 성별을 기입하도록 하는 내용과 관련된 사례들임. 이행률은 100.0%임
 - '성별 특성 고려' 중 '성별특성 관련 규정 마련'은 총 3건의 성평등 조치사항이 모두 공포된 제·개정 조례에 반영되어 100.0% 이행됨
- 2016년에 '성별 균형 참여'에 해당하는 제·개정 조례의 개선안은 총 19건이며, 그 중 18건이 반영되어 94.7%의 높은 이행률을 보임
- 미이행한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반영하지 않은 사유는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규약」 제4조 기준에 근거하여 주민참여를 독려할 수 있도록 하여 성별 균형 참여 부분은 해당이 없는 것으로 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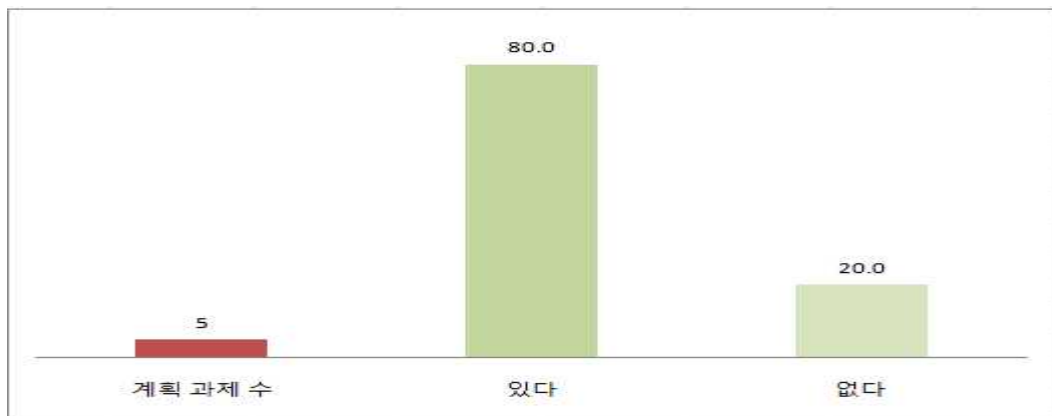
나. 계획

1) 성평등 조치사항 유무

-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현황 분석을 위한 첫 번째 분석 단계로는 2016년에 실시된 5개 계획 과제 중에서 성평등 조치사항이 마련되었는지를 분석한 결과, 원안동의 1개 과제(20.0%)를 제외한 4개 과제(80.0%)에 성평등 조치사항이 마련됨

〈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성평등 조치사항 유무 〉

(단위 : 개, %)



2) 성평등 조치사항 구체성

- 다음 단계로 분야별(법령·사업 관련 개선안)로 제시된 성평등 조치사항을 이행하고자 할 때 성별 특성 및 성별 요구도 분석을 통해 사업 수혜 범위, 대상, 방법 및 기대효과 등이 예측 가능하도록 개선안이 분명하게 제시되었는지를 살펴본 결과, 전체 법령·사업 관련 성평등 조치사항 5개 중 '구체적으로 제시' 된 것은 80.0% (법령 1건, 사업 3건)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며, '단순 제시'는 20.0%(1건)임
- 구체적으로 제시한 성평등 조치사항의 예를 들어보면,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반영', '물류종사자로서만 교육대상이 한정하고 있어 실질적 예산대비 수혜인원이 축소되지 않는 지 점검하여 교육 대상 확대 등임. '시범사업 평가 후 환류방안 마련'과 같이 구체적인 방법 등이 제시되지 않은 개선안은 단순 제시로 간주함

〈 2016년 제주특별자치도 계획에 대한 성평등 조치사항 구체성 〉

(단위 : %)



○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 결과를 제출한 3개 계획 과제에서 제안된 성평등 조치사항은 총 7건²⁾으로, 1개 계획 당 평균 약 2.3건의 개선안이 제시됨. 성평등 조치사항 내용을 법령·사업별로 보면 사업 관련 성평등 조치사항이 71.4%(5건)로 가장 많고 이어서 법령 관련 성평등 조치사항이 28.6%(2건)임

〈 2016년 제주특별자치도 계획에 대한 성평등 조치사항 내용 〉

(단위 : 건, %)



3)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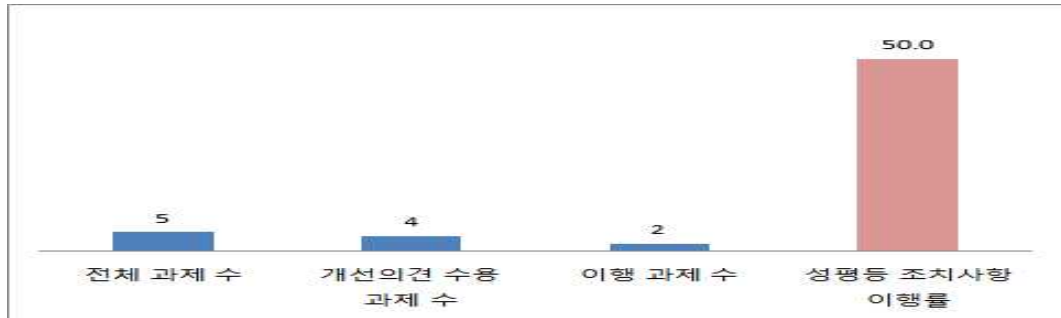
○ 마지막 단계로 이행 결과를 제출한 3개의 계획 과제 중에서 법령·사업 관련 분야별 성평등 조치사항을 한 건이라도 이행한 과제 수는 2개 과제(완전이행 1개+일부이행 1개)로 66.7%의 이행률임. 이는 2016년 계획에 대한 성평등 조치사항을 제시하거나

2) 정책개선안 내용은 법령, 사업 관련 분야별로 제시한 개선안을 성평등 조치와 관련된 내용별로 분류한 것이므로 한 과제당 수보다 더 많음. 예를 들면, 「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인 경우 개선안 내용이 법령 관련 개선안인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반영' 1건과 사업 관련 계획인 '시범 사업 평가 후 환류방안 마련' 1건으로 총 개선안은 2건으로 분석된 것임

수용한 4개 계획 과제 중 50.0%의 이행률로 전체 수준에 비하면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률이 16.7%p 낮음

< 2016년 제주특별자치도 계획에 대한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률 >

(단위 : 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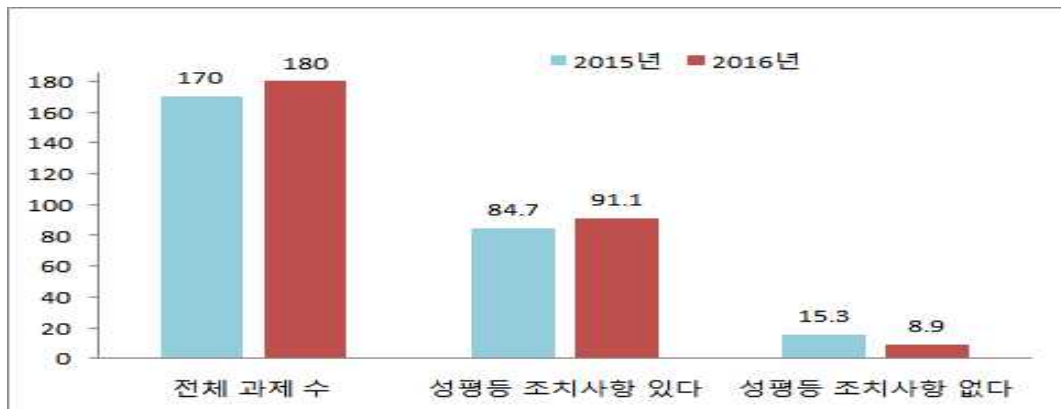
다. 사업

1) 성평등 조치사항 유무

○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현황 분석을 위한 첫 번째 단계로는 2016년에 실시된 180개 사업 중에서 성평등 조치사항이 마련되었는지를 분석한 결과, 전체 180개 과제 중 164개(91.1%)에 성평등 조치사항이 마련됨

<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성평등 조치사항 유무 >

(단위 : 개, %)



2) 성평등 조치사항 구체성

- 다음으로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 결과를 제출한 102개 사업 과제를 대상으로 분야별로 제시된 성평등 조치사항을 이행할 때 범위와 대상, 방법, 기대효과 등을 예측할 수 있도록 성평등 조치사항이 분명한지를 살펴본 결과, 전체 158개 성평등 조치사항의 76.0%가 구체적으로 제시됨

〈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성평등 조치사항 구체성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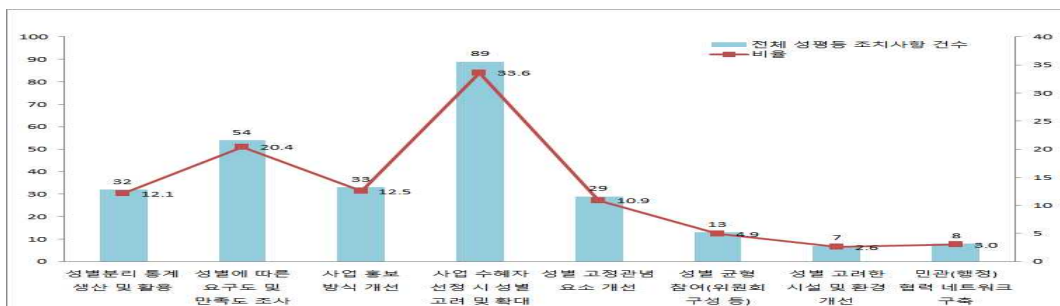
(단위 : 건, %)



- 성평등 조치사항의 구체성 정도에 따른 성평등 조치사항 내용의 예를 들면 ‘여성 위주의 금연지도자를 양성하여 자발적인 금연 홍보 참여로 금연 환경 조성에 기여’ 또는 ‘남성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설’처럼 대상과 방법 등은 구체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정확한 성별 요구의 차이가 반영되지 않은 채 한쪽 성에 편향적일 가능성이 있는 개선안임
- 이행 결과를 제출한 102개의 사업에서 제안된 성평등 조치사항은 총 265건으로, 한 개 사업 당 평균 2.6건의 성평등 조치사항이고 내용의 비율은 다음과 같음

〈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성평등 조치사항 내용 〉

(단위 : 건, %)



3)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현황

○ 마지막 단계로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 결과를 제출한 102개의 사업 과제 중에서 분야별 성평등 조치사항을 한 건이라도 이행한 과제 수는 78개(완전이행 38건+일부 이행 40건)로 76.5%임. 이를 2016년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 과제 전체로 확대하여 살펴보면, 성평등 조치사항을 제시하거나 수용한 164개 사업 과제 중 47.6%의 이행률임. 이는 전체 수준에 비하면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률이 28.9%p 낮지만 2015년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률 15.2% 대비 32.4%p 증가한 수준임

〈 2016년 제주특별자치도 사업에 대한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률 〉

(단위 : 개, %)



○ 성평등 조치사항 미이행 사유에 응답한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 담당자의 의지와 성인지 관점 결여가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과 관련된다는 것이 발견됨

- 예를 들면, ‘사업 수혜자 선정 시 성별 고려 및 확대’를 위한 개선안을 제시한 경우 ‘신청자 대부분이 여성으로 남성 신청자가 저조하여 프로그램에 적용하기 힘든 부분이 있음’ 등을 미이행 사유로 응답함
- 또한 ‘성별분리 통계 생산 및 활용’을 위한 개선안을 제시한 경우 ‘행사에 동원되는 운용인력 및 총 체험객을 파악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됨’ 등과 같이 성별 요구 차이 분석이 되지 않아 성인지적 관점이 결여되었을 때 나타나는 사례도 있음
- 그 외에 ‘예산 관련’ 개선안에서 ‘추가 교육 예산을 미확보’, ‘국비사업에서 유사한 내용의 사업이 포함되어 별도의 예산 반영이 안 됨’, ‘홍보물 제작 예산이 따로 미책정’ 되었다는 응답도 있음

3. 공무원 인터뷰 결과

가. 면접조사 개요

구분		내용
대상	선정기준	· 2016년 분석평가서에 작성한 성평등 조치사항을 완전 이행한 과제 담당자 중심으로 진행하되 사업 수행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실무자 등 선정 · 성별영향분석평가 전·현직 기관 담당자 및 총괄 담당자
	과제담당자 12개 분야 28명	·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교통 및 물류, 문화체육관광, 보건, 사회복지, 산업·통상·중소기업, 일반공공행정, 지역개발, 해양수산, 환경 등 12개 분야
	기관·총괄담당자 전·현직 5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귀포시
	합계 33명	
내용		이행결과에 대한 재확인, 실행과정의 어려움, 정책요구 등
방식		공무원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면접자 손 기록 방식으로 내용 기록
기간		2017년 11월 6일 ~ 20일

○ 면접자의 연령별 성별 현황은 다음 그림과 같음



- 직급을 보면 7급 17명, 6급 7명, 8급 이하 6명, 지도사 3명, 무응답 2명으로 7급이 가장 많고, 공무원 근무경력을 보면 1년 미만 1명, 1-3년 미만 3명, 3-5년 미만 4명, 5-10년 미만 6명, 10-20년 미만 13명, 20년 이상 5명으로 골고루 분포 되어 있음. 10년 이상 근무경력자가 18명(64.3%)임
- 성별영향분석평가 업무 경력을 보면 1년 미만이 16명, 1-3년 미만 17명으로 아직은 업무 경력이 매우 짧고, 1년 미만인 경우가 반 가까이 될 정도로 업무 파악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추정됨(세부 내용 본문 참조)

4. 소결

- 본 연구에서는 2016년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실시한 법령, 계획, 사업에 대한 성별 영향분석평가 성평등 조치사항이 실제 2017년에 어떻게 이행되었는지를 담당 공무원이 제출한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점검표와 그 실적 등을 통해 분석함
-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현황 분석 방법은 2016년 제주여성가족연구원에서 수행한 강경숙 외(2016)의 분석틀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성인지 정책 전문가 자문회의, 도내·외 전문가 FGI, 손영숙 외(2015)의 분석틀, 2016년 여성가족부의 성별영향 분석평가 지침 등을 통해 분석 방향과 분석 지표를 구성함
 - 이행 수준은 과제별 성평등 조치사항을 체크하는 방식이 아니라 성평등 조치사항 관련 분야별(법령 관련/예산 관련/사업 관련) 각 단계에 해당하는 이행 수준을 체크하게 하여 성평등 조치사항 분야별 건수와 비율, 성평등 조치사항 내용별 건수와 비율로 제시함
- 특히, 본 연구에서는 사업뿐 아니라 법령, 계획에 대해서도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 현황을 분석함. 법령의 경우는 2016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이후 공포된 자치법규 조항을 확인하여 성평등 조치사항 반영 여부를 확인하였고, 계획 과제와 사업 과제의 경우는 2016년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개선의견을 제시하거나 수용한 과제 중에서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점검표를 제출한 과제 중심으로 이행현황을 분석함
- 법령, 계획, 사업의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현황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2016년 제주특별자치도의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 사례를 제시하고 개정 조례 3개 및 사업 6개 이행 우수사례(안)을 최종 선정함. 법령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 우수사례(안)는 여성가족부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의 법령 지표 중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된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조례, 위원회 구성 시 ‘성 평등한 자격 기준을 제시’한 조례를 선정함. 사업의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 우수사례(안)는 우선,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에 대한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사례는 제외하고, 분석평가서를 충실히 작성하고 성평등 조치사항을 완전 이행한 사업, 성인지적·구체적으로 이행한 사업, 성별 수혜자 규모 혹은 예산 규모, 지역사회 협력, 유사 사업에 미친 영향 등 파급 효과가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선정함
- 공무원 대상 인터뷰는 성평등 조치사항을 완전 이행한 담당자, 과제 수행에 어려움이

많은 실무자, 성별영향분석평가 총괄 담당자 및 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제도의 정책효과 제고 방안을 모색할 목적으로 정책개선 이행 경험과 정책 요구를 수렴

제4장 성별영향분석평가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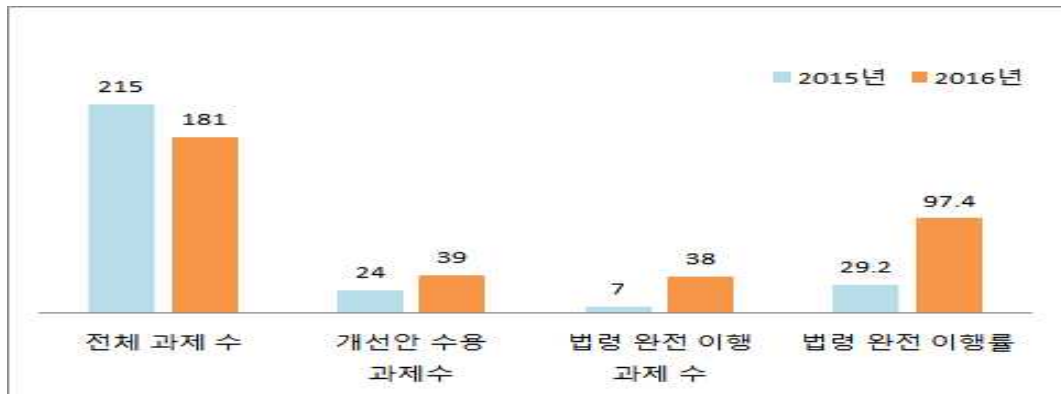
1. '16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 사례

가. 법령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5조에 근거하여 해당 연도의 제·개정 법령은 모두 성별영향 분석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고 2016년에 실시한 제주특별자치도의 법령에 대한 성별 영향분석평가 과제는 181개 과제임. 그 중 성평등 조치사항이 있는 39개 과제(자체 개선 6개+개선의견 수용 33개) 중에서 성평등 조치사항을 제·개정 조례에 반영한 이행 사례는 38개임. 개선안 수용과제 대비 97.4% 이행함(세부 이행 사례 본문 참조)

< 2016년 제주특별자치도 법령 성별영향분석평가 성평등 조치사항 완전 이행률 >

(단위: 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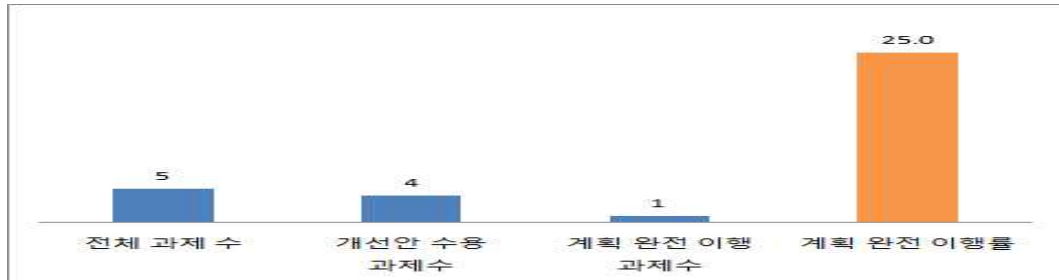


나. 계획

- 2016년에 실시한 제주특별자치도의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는 총 5개 과제이고 그 중 개선안을 제시하거나 수용한 4개 과제 중에서 성평등 조치사항을 완전 이행한 과제는 1개 과제³⁾로 개선안 수용과제 대비 완전 이행률은 25.0%임

〈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성평등 조치사항 완전 이행률 〉

(단위: 개, %)



다. 사업

- 2016년에 실시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전체 180개 과제 중에서 성평등 조치사항을 제시하거나 개선의견을 수용한 과제는 164개이고 그 중 성평등 조치사항을 완전 이행한 과제는 38개⁴⁾임(세부 이행 사례는 본문 참조)

〈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성평등 조치사항 완전 이행률 〉

(단위: 개, %)



2. '16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 우수사례(안)

가. 법령

- 3)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중 성평등 조치사항을 자체적으로 제시하거나 개선의견을 수용한 과제 중 이행점검표를 접수한 3개 과제를 중심으로 평가한 것임
- 4)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중 성평등 조치사항을 자체적으로 제시하거나 개선의견을 수용한 과제 중 이행점검표를 접수한 102개 과제를 중심으로 평가한 것임

- 법령에 대한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 우수사례(안) 선정 기준은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여성가족부, 2016)에서 제·개정 법령의 ‘성별 구분 및 고정관념’, ‘성별 특성’, ‘성별 균형 참여’ 등에 대해 3개 분석평가 항목으로 구성된 기준 지표로 구성함
- 우수사례(안) 기준에 따라 2016년 제주특별자치도의 제·개정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 분석평가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 우수사례(안)로 ‘성별 균형 참여’ 관련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개정안 조례 3개 과제를 선정함. 정책개선 우수사례(안) 개정안은 위원회 등 구성시 성별을 고려하여 ‘특정 성(性)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구체적으로 명시함. 또한 위원회 구성 등을 위한 자격 요건이 특정성별에 불리하지 않도록 성평등한 자격 요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해당 관련 경험이 많은 민간인까지 참여가 가능한 기준을 추가하여 명시함

나. 사업

- 사업에 대한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 우수사례(안) 선정 기준은 강경숙 외(2016)의 개선 사례 선정 기준을 참고하되 보다 더 강화한 3개의 평가 지표로 구성함. 평가 지표는 2015년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 사례로 선정된 사업은 제외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분석평가서를 충실히 작성하였는지, 개선안을 성인지적이고 구체적으로 완전하게 이행하였는지, 성별 수혜자 혹은 예산 규모 등에 파급 효과가 있었는지 등임
-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 우수사례(안) 선정 기준에 따라 2016년 제주특별자치도의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 우수사례(안)로 성별영향분석평가서를 충실히 작성하고 성평등 조치사항을 성인지적으로 파급 효과가 나타나도록 완전 이행한 사업 6개 과제를 선정함.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 우수사례(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농기계훈련 사업’(제주농업기술센터), ‘문화유적지 체험 프로그램 운영’(세계유산문화재부) 등 2개 사업, 제주시의 ‘아라종합복지관 야간보호사업’(주민복지과), ‘자전거타기 이용활성화 사업’(도시재생과) 등 2개 사업, 서귀포시의 ‘안덕산방도서관 프로그램 운영’(안덕산방도서관), ‘서귀포 건축포럼’(건축과) 등

제5장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효과 제고 방안

1. 이행점검 과정의 체계화

- 상반기 이행점검 알림 공문을 통한 본인 담당 사업에 대한 인지 및 실행 동력 부여
- 하반기 이행점검 실시를 통해 실적 관리 및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정책 실효성 제고
- 기관·총괄담당자는 이행점검 알림 및 이행결과 증빙서류 접수, 제주여성가족연구원에서는 연구 진행

2. 성별영향분석평가 기관총괄 담당자 특별역량강화 지원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개정 성별영향분석평가법(17.6.21.시행) 제14조에 근거하여 분석평가책임관과 실무담당자를 지정하여 분석평가 업무의 종합·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을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음(제14조2항6.)
- 본 연구의 인터뷰 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 담당자는 기관·총괄 담당자는 물론 과제 담당자의 절반 정도가 1년 미만인 경우가 많고 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의 25.0% 정도 수준에 불과하지만 분석평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과제 담당자의 스토키 수준의 향의나 남들은 하지 않을 수도 있는 분석평가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불만 등을 들어 주고 감수하기에는 과중한 부담감을 느낄 수 있다는 점임
- 기관·총괄 담당자의 부담감을 줄이기 위한 대안 중 하나는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선정, 컨설팅 일정, 교육일정 등에 대해 총괄·기관 담당자와 제주성별영향분석센터 간의 추진 과정을 체계화하여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임

3. 사례 및 실습 중심의 공무원 성(性)인지 교육 운영 체계화

-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가장 큰 어려움이자 좋은 점은 이 제도가 일종의 자체 평가(손영숙 외, 2015)라는 사실 및 본 연구의 인터뷰 결과 ‘처음부터 기획되면 어렵지 않다’는 응답처럼 과제 담당자 스스로 개선안을 찾아낸다면 자신이 담당하는 사업에 반영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임
-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업에 대한 분석평가서에 제시된 성평등 조치사항의 76.0%가 구체적으로 제시한 개선안으로 그에 따른 정책개선 이행률은 76.5%이었음. 이는 분석평가 수행 과정에서 과제 담당자 교육과 컨설팅이 비교적 잘 이루어진 결과임
- 이를 위해서는 공무원 대상의 성인지감수성교육,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예산 교육을 공무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례 및 실습 중심의 교육으로 업무의 일부분처럼 체계화하는 작업이 필요함. 또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예산 교육 이수 시 사회복지 점수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교육에 능동적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일 수 있음

4.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 사례집 등 홍보 강화

- 공무원이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개선안의 필요성을 알고 찾아내기 위해서는 단순히 분석평가 전·후만 간략하게 비교하는 것보다는 정책개선안이 기획단계에서부터 실제 이루어지는 전 과정에 대해 들려주고 보여줄 수 있는 사례가 더 효과적일 것임
- 본 연구에서 발굴한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 우수사례(안)는 과제 담당자가 개선안을 인지하고 이행 점검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개선 결과를 정리하고 인터뷰를 통해 정책개선 수행과정에 대한 생생한 경험담이 담긴 사례를 구성하여 향후 교육과 컨설팅에 활용한다면 공무원에게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의 효과를 설득하는 데 효과적일 것임
- 추가로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서귀포시 청사 로비나 주민들이 많이 오가는 공공

시설물 로비에서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 사례 사진 자료를 활용한 전시회 등을 해 보는 것도 제안함

5. 컨설팅 효과 제고를 위한 매뉴얼 개발 및 역량강화

-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과정에서 컨설팅은 과제 담당 공무원이 성인지적으로 자신의 사업을 다시 볼 수 있는 시각을 열어 주고 현실성 있는 좋은 정책개선안을 찾아내서 자신의 사업에 반영하도록 설득하는 중요한 과정임
- 본 연구의 인터뷰 과정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은 ‘부서 자체 사업’, ‘위탁기관 대행사업’, ‘공모사업’ 등 다양한 형태로 수행되고 있어서 일반적인 세부사업 하나로만 컨설팅을 하게 되면 이론과 현업의 차이가 생겨서 신뢰감을 줄 수 없을 것임
- 따라서 공무원을 설득시킬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컨설팅이 되기 위해서는 사업 특징별 컨설팅 매뉴얼 개발 필요함

목 차

제1장 서론	1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 내용 및 방법	4
가. 연구 내용	4
나. 연구 방법	4
제2장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현황	7
1.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및 컨설팅 지원 현황	9
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현황	9
나.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팅 지원 현황	10
2.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수용 현황	14
가. 검토의견 수용 현황	14
나. 대상과제 분야별 검토의견 반영 계획	15
3. 소결	16
제3장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현황	19
1.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현황 분석 개요	21
가. 이행현황 분석 개요	21
나.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현황 분석 기준	23
2.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현황 분석 결과	25
가. 법령	25
나. 계획	31
다. 사업	37
3. 공무원 인터뷰 결과	49
가. 면접조사 개요	49
나. 과제 담당 공무원의 정책개선 업무경험과 정책요구	52
다. 기관·총괄 담당 공무원의 정책개선 업무경험과 정책요구	61
라. 전문가의 정책요구	64

4. 소결	68
가. 법령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현황	69
나. 계획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현황	70
다. 사업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현황	71
라. 공무원의 성평등 조치사항 업무경험에 따른 정책 요구	72
제4장 성별영향분석평가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 사례	75
1. '16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 사례	77
가. 법령	77
나. 계획	82
다. 사업	84
2. '16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 우수사례(안)	90
가. 법령	90
나. 사업	94
제5장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효과 제고 방안	109
1. 이행점검 과정의 체계화	111
2. 성별영향분석평가 기관총괄 담당자 특별역량강화 지원	112
3. 사례 및 실습 중심의 공무원 성(性)인지 교육 운영 체계화	112
4.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 사례집 등 홍보 강화	113
5. 컨설팅 효과 제고를 위한 매뉴얼 개발 및 역량강화	114
참고문헌	115
부 록	117
1.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 점검표 예시	119
2. 면접 질문지(과제 담당자/기관총괄 담당자/전문가)	120
3. 대상과제 분야별(법령/계획/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반영계획	123

표 목 차

〈표 2-1〉 2016년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현황	9
〈표 2-2〉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팅 지원 체계	10
〈표 2-3〉 2016년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팅 지원 현황	11
〈표 2-4〉 2016년 기관별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팅 지원 현황	12
〈표 2-5〉 2016년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전문가 검토 현황	13
〈표 2-6〉 성별영향분석평가 방법별 컨설팅 지원 현황	13
〈표 2-7〉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검토의견 수용 현황(2015-2016)	14
〈표 2-8〉 대상과제 분야별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반영계획 현황	16
〈표 3-1〉 계획 및 사업에 대한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점검표 접수 현황	21
〈표 3-2〉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현황 분석 개요	22
〈표 3-3〉 성별영향분석평가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현황 분석 방향	23
〈표 3-4〉 법령에 대한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현황 분석 지표	24
〈표 3-5〉 계획 및 사업에 대한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현황 분석 지표	25
〈표 3-6〉 2016년 제주특별자치도 법령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현황	26
〈표 3-7〉 분석지표별 법령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 현황	27
〈표 3-8〉 성별통계 생산 관련 법령 중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 사례 예시	28
〈표 3-9〉 성별특성 규정 관련 법령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 사례 예시	29
〈표 3-10〉 성별 균형 참여 관련 법령 중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 사례 예시	30
〈표 3-11〉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성평등 조치사항 유무	31
〈표 3-12〉 계획에 대한 분야별 성평등 조치사항 구체성	33
〈표 3-13〉 계획에 대한 분야별 성평등 조치사항 내용	34
〈표 3-14〉 계획에 대한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 현황	35

〈표 3-15〉 계획에 대한 분야별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현황	36
〈표 3-16〉 사업에 대한 성평등 조치사항 유무	37
〈표 3-17〉 사업에 대한 성평등 조치사항 분야별 구체성 정도	39
〈표 3-18〉 구체성 정도에 따른 성평등 조치사항 내용의 예시	39
〈표 3-19〉 사업에 대한 분야별 성평등 조치사항 내용	42
〈표 3-20〉 사업에 대한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현황	43
〈표 3-21〉 사업에 대한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현황	44
〈표 3-22〉 구체성을 갖춘 성평등 조치사항 완전 이행 사례 예시	44
〈표 3-23〉 사업에 대한 성평등 조치사항 미이행 사유	45
〈표 3-24〉 사업에 대한 성평등 조치사항 미이행 사례의 향후 개선안	47
〈표 3-25〉 면접조사 개요	49
〈표 3-26〉 공무원 면접 참여자 기본 사항	50
〈표 4-1〉 법령 성별영향분석평가 성평등 조치사항 완전 이행을	77
〈표 4-2〉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 사례	78
〈표 4-3〉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성평등 조치사항 완전 이행을	83
〈표 4-4〉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성평등 조치사항 완전 이행을	84
〈표 4-5〉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성평등 조치사항 완전 이행 사례	85
〈표 4-6〉 법령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 우수사례(안) 선정 기준	90
〈표 4-7〉 법령 성별영향분석평가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 우수사례(안)	91
〈표 4-8〉 사업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 우수사례(안) 선정 기준	95
〈표 4-9〉 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 우수사례(안)	95

그 림 목 차

〈그림 1-1〉 연구 수행 절차	6
〈그림 2-1〉 2016년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팅 실시율	11
〈그림 2-2〉 2016년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전문가 검토 실시율	12
〈그림 2-3〉 2016년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방법별 컨설팅 실시율	13
〈그림 2-4〉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검토의견 수용률	14
〈그림 2-5〉 대상과제 분야별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반영계획 수용률	15
〈그림 3-1〉 2016년 제주특별자치도 법령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률	26
〈그림 3-2〉 분석 지표별 법령 성평등 조치사항 수 및 이행률	27
〈그림 3-3〉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성평등 조치사항 유무	31
〈그림 3-4〉 2016년 제주특별자치도 계획에 대한 성평등 조치사항 구체성	32
〈그림 3-5〉 2016년 제주특별자치도 계획에 대한 성평등 조치사항 내용	34
〈그림 3-6〉 2016년 제주특별자치도 계획에 대한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률	35
〈그림 3-7〉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성평등 조치사항 유무	37
〈그림 3-8〉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성평등 조치사항 구체성	38
〈그림 3-9〉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성평등 조치사항 내용	41
〈그림 3-10〉 2016년 제주특별자치도 사업에 대한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률	43
〈그림 3-11〉 연령별, 성별 공무원 면접자	51
〈그림 3-12〉 직급별, 근무경력별 공무원 면접자	51
〈그림 4-1〉 법령 성별영향분석평가 성평등 조치사항 완전 이행률	77
〈그림 4-2〉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성평등 조치사항 완전 이행률	82
〈그림 4-3〉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성평등 조치사항 완전 이행률	84
〈그림 5-1〉 성별영향분석평가 이행점검 추진 체계(안)	111

제 1 장

서 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성(性)평등 실현을 위한 전략도구로서 이는 법령·계획·사업 등 정책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수 있는 성(性) 차별적인 요소를 미리 검토, 분석, 평가하여 개선안을 반영하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도민이 체감하는 성평등 정책을 실현하는 것임
-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의 제정('11.9.15) 및 시행('12.3.16)을 통해 2005년부터 광역 단위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했던 대상정책을 제·개정 법령, 계획, 사업으로까지 확대하도록 규정하여 실시되고 있음
- 이에 맞춰 제주의 경우는 2005년 1개 사업을 시작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추진 하였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의 제정 및 시행('14.8.20) 이후 2016년 현재 제주도의 추진 과제 수는 법령 181개, 계획 5개, 사업 180개 등 총 366개로 양적 확대가 지속되고 있음(2013년 235개, 2014년 260개, 2015년¹⁾ 385개)
- 실제 성별영향분석평가법(제12조 관련)에는 법령·계획·사업에 대한 분석평가서 검토결과가 개선의견으로 통보된 정책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분석평가 책임관(또는 실무담당자)²⁾이 정책개선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종합분석한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음³⁾
- 그러나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결과를 정책개선에 반영하고 환류로 연결시키는 등의 정책효과에 대한 검토는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임우연·이행숙, 2016). 이런 이유로 강경숙 외(2016)는 지난 10년 간 제주특별자치도의 성별영향 분석평가제도 추진에 따른 성과 분석 연구를 통해 실질적인 정책개선이 이행 되도록 정책개선 이행 점검 작업에 따른 후속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함
- 따라서 본 연구는 2016년에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했던 제주특별자치도의 제·개정 법령, 계획, 사업을 대상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마지막 지표인 ‘성평등을

1) 2015년 과제 수 증가의 원인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해 자치법규 과제 수가 2014년 92개에서 2015년 215개로 급증하였기 때문임

2) 개정 「성별영향분석평가법」 ('17.6.21.시행) 제14조(분석평가관과 실무담당자의 지정 및 임무)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분석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분석평가업무를 총괄하는 분석평가책임관과 실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3)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제9조(종합분석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분석평가 추진실적 및 정책개선 실적을 점검하고 종합분석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한 조치사항' 이 2017년에 이루어진 이행현황 분석을 통해 정책개선 이행 사례를 발굴하여 제도 효과에 대한 홍보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또한 공무원 대상 인터뷰를 통해 과제 담당자의 성별영향분석평가서 작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교육과 컨설팅 방향을 모색하고 향후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의 정책효과 제고 방안을 제안하고자 수행함

2. 연구 내용 및 방법

가. 연구 내용

-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효과 관련 연구 검토
- 2016년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현황 분석
 - 제주특별자치도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팅 지원 실적 및 제주특별자치도 제·개정 조례, 계획,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실적
- 2016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제주특별자치도 제·개정 조례, 계획, 사업에 대해 2017년에 실시한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현황 결과 및 공무원 인터뷰 결과 분석
-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정책별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 사례 및 우수사례(안) 선정
-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효과 제고 방안 제안

나. 연구 방법

1) 문헌 연구

- 성별영향분석평가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현황 관련 선행연구 자료 검토
- 2016년 여성가족부의 성별영향분석평가지침, 2016년 제주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운영 사업 결과보고서 및 2016년 제주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보고서 등 검토

2)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현황 점검

- 2016년 성별영향분석평가서 검토 및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현황 분석 대상과제 선정
 - 법령의 경우는 2016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한 제·개정

조례 181개 과제 중 검토의견 통보서 내용에서 '자체개선안 동의'(6개), '개선 의견'(33개)으로 분류된 39개 과제를 대상과제로 선정

- 계획의 경우는 2016년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수행한 5개 계획 과제의 분석평가서 내용을 검토하고 성평등 조치사항이 있는 4개 계획 과제를 대상 과제로 선정(※ 이행 점검표는 5개 계획 과제 모두 작성, 배포)
- 사업의 경우는 2016년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귀포시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수행한 180개 과제의 분석평가서 내용을 검토하고 성평등 조치사항이 있는 164개⁴⁾ 사업 과제를 대상과제로 선정(※ 이행 점검표는 180개 사업 과제 모두 작성, 배포)
- 2016년 제주특별자치도 제·개정 조례 검색 및 해당 조항 반영 확인
 - 법제처의 국가정보법령정보센터에서 2016년에 성별영향분석평가 이후 공포된 제주 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제·개정 조례 중 성평등 조치사항을 수용한 제·개정 조례의 전문을 검토하여 성평등 조치사항 내용의 반영 여부를 확인
-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 점검 지표 구성 및 이행 점검표 작성, 배포
 -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점검 지표는 2016년 제주여성가족연구원에서 수행한 강경숙 외 (2016)의 지표와 동일하게 유지하되, 연구진 회의 및 제주도내·외 전문가 FGI 의견을 토대로 수정·보완하여 성평등 조치사항 유무, 구체성과 내용, 이행수준 등임
 - 분석평가서 작성의 충실도 정도와 성평등 조치사항 유무, 성평등 조치사항 내용의 구체성에 대한 평가는 연구진이 9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검토하여 분석
 - 이행 점검 대상과제의 성평등 조치사항에 과제 담당 공무원이 작성한 내용을 성평등 조치사항 분야별(법령 관련/예산 관련/사업 관련)로 정리하여 이행 점검표 작성
 - 이행 점검표는 과제담당 공무원에게 배포하고 이행 증빙자료와 함께 접수
-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 점검표 접수 및 분석
 - 이행현황 분석을 위한 이행 점검표는 3차례에 걸쳐 총 106개 접수됨
 - 1차(17.9.20-10.20) 15개 접수(계획 1개 과제, 사업 14개 과제)
 - 2차(17.10.23-10.27) 35개 접수(계획 2개 과제, 사업 33개 과제), 총 50개
 - 3차(17.10.23-11.10) 56개 접수(계획 1개 과제, 사업 55개 과제), 총 106개 접수
- 정책개선 이행 모니터링단 구성 및 모니터링단 간담회 4차례 개최
- 현장 모니터링 지표·공무원 인터뷰 질문지 구성 및 현장 모니터링 실시

4) 실제 분석평가서를 검토하여 반영결과 제출서 내용에 따른 과제 수로 GIA(성별영향분석평가) 시스템에 등록된 과제 수와 다름

3) 공무원 인터뷰

○ 공무원 인터뷰는 향후 정책효과 제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진행함

- 대상 : 성평등 조치사항을 완전 이행한 과제 담당자를 중심으로 진행하되 사업 수행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실무자, 기관 담당자 및 총괄 담당자 등 총 33명
- 기간 : 2017년 11월 10일 ~ 11월 20일
- 방법 : 연구 책임자가 이행점검표 및 증빙자료 접수 후 공무원과 전화 통화를 통해 사전에 일정을 잡고 모니터링단과 내용을 공유한 후 연구진이 개발한 구조화된 질문지를 통해 진행함. 연구진 역시 가능한 일정 내에서는 현장 모니터링에 동행 · 참관함
- 내용 : 정책개선안 이행에 대한 어려움, 이행 과정에 대한 결과, 필요 지원 내용 등

○ 이상의 연구 수행 절차는 다음의 그림과 같음

〈그림1-1〉 연구 수행 절차

1단계	연구 설계	⇔	- 연구 방향 및 내용 구성 - 연구 착수 보고
2단계	자료 검토 및 분석평가서 분석	⇔	-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팅 지원 및 추진 현황 검토 '16년 계획 및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서 분석 ('17. 6.12, 6.26, 6.28, 7.26, 8.1, 8.2, 8.3, 8.4, 8.16., 총 9차례 회의) '16년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현황 분석 ('17. 9.11~9.15, 자치법규정보시스템 활용한 이행현황 점검)
3단계	전문가 및 공무원 의견 수렴	⇔	- 도 내·외 전문가 FGI 2회 실시 : '17. 6.29-7.20 & 11.10-11.20 - 자문회의 2회 개최: '17. 8.25 & 12.4 - 공무원 간담회 3회 개최: '17. 9.1 & 12.11-12
4단계	정책개선 이행현황 분석	⇔	2016년 제·개정 조례 중 개선안 수용 과제의 조례 반영 여부 확인 2016년에 실시한 계획,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서 분석 - 분석평가서 검토, 이행 점검표 작성/배포/접수 및 분석 - 모니터링단 간담회 4회 개최('17. 10.10 & 11.6 & 11.24 & 12.6) - 공무원 인터뷰 · 현장 모니터링 실시('17. 11. 7 ~ 11. 20) 및 결과 분석
5단계	집필 및 정책제언	⇔	-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 사례 및 우수사례(안) 발굴 -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효과 제고 방안 제안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현황

1.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및 컨설팅 지원 현황
2.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수용 현황
3. 소결

1.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및 컨설팅 지원 현황

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현황

- 2016년에 실시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는 전체 366개 과제로 법령 181개, 계획 5개, 사업 180개임
- 이 중 분석평가서 작성이 필요 없는 제외대상은 34개였고, 분석평가서에 성차별이 발견되지 않아 개선의견이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원안동의 과제는 145개(39.6%), 정책개선안을 분석평가서에 충실히 제시한 자체개선 과제는 91개(24.9%)임. 분석평가서 내용을 성평등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정책개선 의견을 추가로 제시한 개선의견 통보 과제는 96개(26.2%)임. 개선의견 96개 중 이를 수용한 과제는 95개, 일부 수용한 과제는 1개임
- 법령, 계획, 사업별로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법령은 181개(100.0%) 과제 중 제외대상 34개(18.8%), 원안동의 108개(59.7%), 자체개선⁵⁾ 6개(3.3%), 개선의견 33개(18.2%)임
- 계획은 5개(100.0%) 과제 중 원안동의 1개(20.0%), 자체개선 3개(60.0%), 개선의견 1개(20.0%)임
- 사업은 180개(100.0%) 과제 중 원안동의 36개(20.0%), 자체개선 82개(45.6%), 개선의견 62개(34.4%)임

〈표 2-1〉 2016년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현황

(단위: 개, %)

구분		전체	법령	계획	사업
전체		366(100.0)	181(100.0)	5(100.0)	180(100.0)
1. 제외대상		34(9.3)	34(18.8)	-	-
평가 대상	2. 원안동의	145(39.6)	108(59.7)	1(20.0)	36(20.0)
	3. 자체개선	91(24.9)	6(3.3)	3(60.0)	82(45.6)
	4. 개선의견	96(26.2)	33(18.2)	1(20.0)	62(34.4)

자료: 2016년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결과보고서.

5) 제출된 분석평가서의 자체개선안에 동의한다는 의견으로 분석평가 절차는 종료됨

나.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팅 지원 현황

1)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팅 지원 체계

-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2015년 1월 여성가족부 지정 제주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를 위탁 운영하게 되면서, 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팅 지원은 과제 담당 공무원이 체크리스트와 성별영향분석평가서를 작성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 시스템(GIA시스템)에 제출하기 전에 서면(GIA시스템 또는 메일 등)과 대면 등으로 진행됨. 또한 분석평가책임관(혹은 기관 담당)은 분석평가서 검토 단계에서 필요 시 전문가에게 검토의견을 요청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여성가족부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
- 성별영향분석평가 분석평가책임관(혹은 기관 담당)은 과제 담당 공무원이 제출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검토해야 하지만 담당자의 잦은 교체와 젠더 전문성 역량 부족 등의 이유로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를 포함한 전문가에게 검토의견을 요청하고 있음
- 전문가 자문을 받지 않은 과제의 경우는 담당자가 자체적으로 ‘개선의견’을 도출하지 못하고 대부분 별도의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없다는 ‘원안동의’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음(강경숙 외, 2016)

〈표 2-2〉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팅 지원 체계

구 분	과제 담당 공무원	분석평가책임관 (기관 담당 공무원)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1단계	체크리스트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서 작성, GIA시스템에 제출		정책 개선안 마련을 위한 젠더 전문가 컨설팅 (서면 및 대면)
2단계		분석평가서 검토	전문가 검토의견 자문 (서면: GIA시스템)
	분석평가서 검토 결과, ‘개선동의’가 있는 경우 - 반영계획서 제출	분석평가서 검토의견 통보 - ‘개선사항 없음’, ‘자체 개선안 동의’, ‘개선의 견’중 통보	
3단계	차기년도 반영계획 이행	정책 개선 관리 및 실적 보고(여성가족부)	

자료: 2016년 성별영향분석평가지침(여성가족부, 2016) 재구성.

6) 성별영향분석평가(GIA)시스템 사이트주소: <http://gia.mogef.go.kr>(행정망 및 인터넷망에서 접속 가능)

2) 컨설팅 지원 현황

- 2016년에 실시한 제주특별자치도의 법령, 계획, 사업의 과제는 366개이며 이 중 94.0%인 344개 과제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함
- 법령의 경우에는 181개 과제 중 79.6%인 144개 과제에 대해 컨설팅을 실시함
 - 컨설팅 지원 과제수가 과제 수보다 적은 이유는 제외 법령 또는 원안동의에 해당하는 자치법규로 과제 담당자가 기관 담당자에게 별도의 컨설팅 없이 제출하기 때문임
- 계획의 경우에는 5개 과제 중 6개(120.0%) 과제에 대해 컨설팅을 실시하였고, 사업의 경우에는 180개 중 194개(107.8%) 과제에 대해 컨설팅을 실시함. 계획 및 사업의 컨설팅 지원 과제 수가 과제 수보다 많은 이유는 과제선정 단계에서 제외되거나 대체된 과제들까지 컨설팅이 지원되었기 때문임

〈그림 2-1〉 2016년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팅 실시율

(단위: %)



주: 법령 컨설팅 실시율이 낮은 이유는 제외 법령, 원안동의의 경우에 기관 담당자가 별도의 컨설팅 없이 제출하기 때문임.

〈표 2-3〉 2016년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팅 지원 현황

(단위: 개, %)

구분	과제 수(A)	컨설팅 지원 과제 수(B)	컨설팅 실시율 (B/A×100)
법령	181	144	79.6
계획	5	6	120
사업	180	194	107.8
계	366	344	94.0

자료: 2016년 제주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결과보고서.

- 사업에 대한 기관별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팅 실시율을 살펴보면, 제주특별자치도 본청(124.5%)과 서귀포시청(112.5%), 제주시청(88.9%) 순으로 높게 나타남. 컨설팅 비율이 가장 낮은 제주시청의 경우도 약 90%대의 컨설팅 실시율을 보임

〈표 2-4〉 2016년 기관별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팅 지원 현황

(단위: 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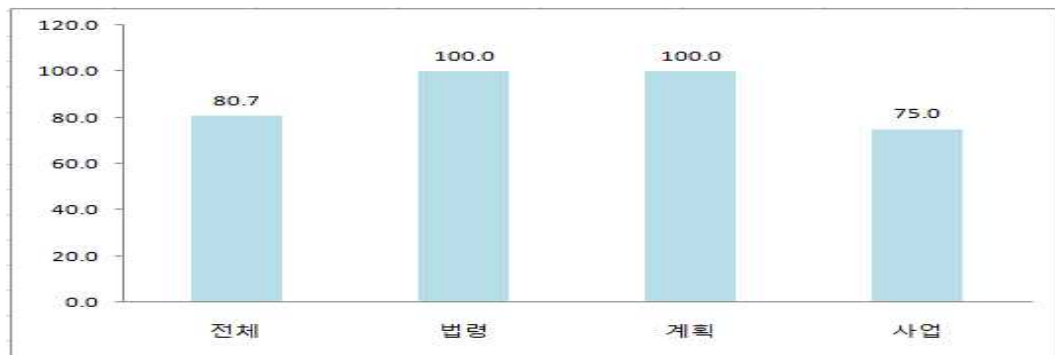
구분	과제 수(A)	컨설팅 지원 과제 수(B)	컨설팅 실시율 (B/A×100)
제주도청	53	66	124.5
제주시청	63	56	88.9
서귀포시청	64	72	112.5
계	180	194	107.8

자료: 2016년 제주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결과보고서.

- 성별영향분석평가서 검토 단계에서 분석평가책임관(혹은 기관 담당)이 요청한 전문가 검토(컨설팅) 현황을 보면, 187개 과제 중 151개(80.7%) 과제로 높은 비중을 보임
- 자체개선안 및 개선의견으로 통보된 대상정책별로 살펴보면, 법령(39개) 및 계획(4개)과제는 모두 전문가 검토의견을 거쳤고, 사업의 경우는 144개 과제 중 108개(75.0%)가 전문가 검토의견을 거쳤음. 기관별로 사업에 대한 전문가 검토(컨설팅) 현황을 보면, 제주도청(48개)과 서귀포시청(60개)의 경우는 개선의견이 있는 모든 과제에 대해 전문가 검토의견을 요청함. 이와는 달리 제주시청(36개)의 경우는 기관 담당자가 자체적으로 검토결과를 통보하여 기관별로 현격한 차이가 나타남

〈그림 2-2〉 2016년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전문가 검토 실시율

(단위: %)



〈표 2-5〉 2016년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전문가 검토 현황

(단위: 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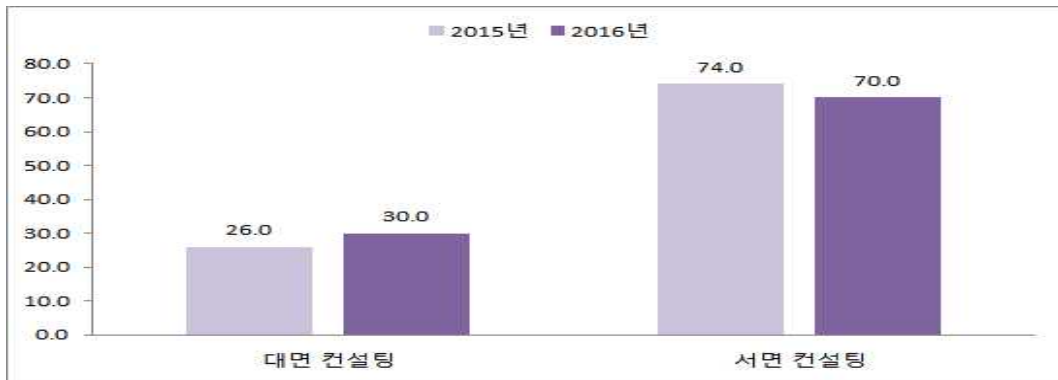
구분		자체개선안 및 개선의견 과제 수(A)	전문가 검토 지원 과제 수(B)	전문가 검토 실시율 (B/A×100)
법령		39	39	100.0
계획		4	4	100.0
사업	제주도청	48	48	100.0
	제주시청	36	-	-
	서귀포시청	60	60	100.0
	소계	144	108	75.0
계		187	151	80.7

자료: 2016년 제주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결과보고서.

- 성별영향분석평가 방법별 컨설팅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한 과제 당 서면(GIA시스템, 메일 등) 컨설팅 후에 과제 담당자와의 1:1 대면 컨설팅 순으로 진행함. 2016년의 경우 대면컨설팅 비율은 30.0%이고 전년 대비 4.0%p 증가 등 컨설팅 내실화에 주력함

〈그림 2-3〉 2016년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방법별 컨설팅 실시율

(단위: %)



〈표 2-6〉 성별영향분석평가 방법별 컨설팅 지원 현황

(단위: 개, 건 수, %)

구분	과제 수 (A)	방법별 컨설팅 지원 수			컨설팅 지원 비율 (B/A×100)
		계(B)	대면	서면 (GIA시스템, 메일, 전화 등)	
2015	385	524(100.0)	136(26.0)	388(74.0)	136.1
2016	366	627(100.0)	188(30.0)	439(70.0)	17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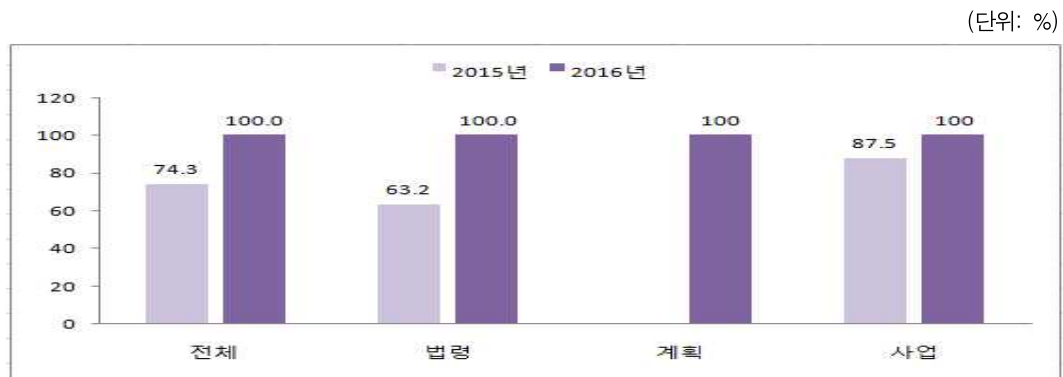
자료: 2016년 제주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결과보고서.

2.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수용 현황

가. 검토의견 수용 현황

- 2015년과 2016년에 실시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의견을 통보한 과제의 개선의견 수용률(수용+일부수용) 현황을 보면, 2016년에는 개선의견 통보 96개 과제 모두 수용되어 수용률은 100.0%로 2015년 개선의견 수용률 74.3% 대비 25.7%p 증가함
- 정책 대상별로 살펴보면, 법령의 경우 2016년에는 개선의견 통보 33개 과제 모두 수용되어 수용률은 100.0%로 2015년 개선의견 수용률 63.2% 대비 36.8%p 증가함. 사업의 경우 2016년에는 개선의견 통보 62개 과제 모두 수용되어 수용률은 100.0%이며, 2015년 개선의견 수용률 87.5% 대비 12.5%p 증가함

〈그림 2-4〉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검토의견 수용률



〈표 2-7〉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검토의견 수용 현황(2015-2016)

(단위: 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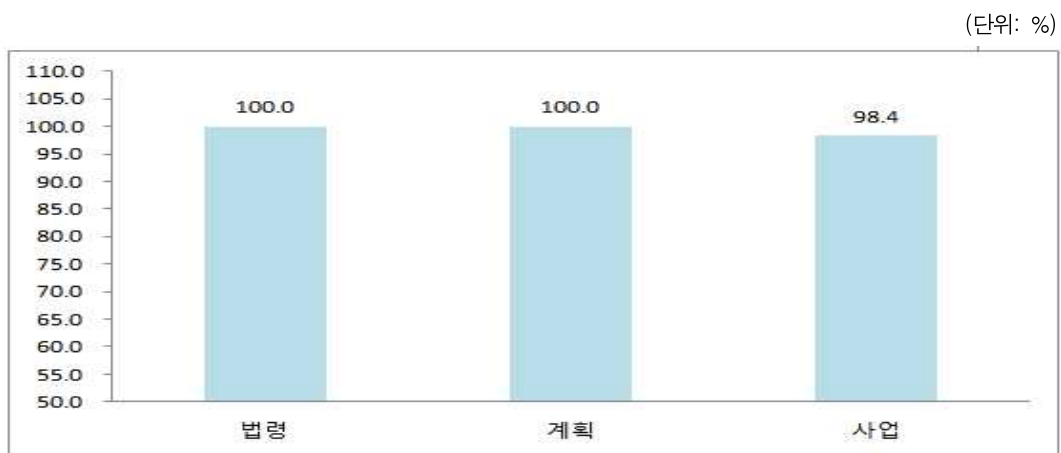
		개선의견 과제 수	개선의견 수용 과제 수 (수용+일부수용)	개선의견 수용률 (수용+일부수용)
2015	법령	38(100.0)	24	63.2
	계획	-	-	-
	사업	32(100.0)	28	87.5
	계	70(100.0)	52	74.3
2016	법령	33(100.0)	33	100.0
	계획	1(100.0)	1	100.0
	사업	62(100.0)	62	100.0
	계	96(100.0)	96	100.0

자료: 2016년 제주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결과보고서.

나. 대상과제 분야별 검토의견 반영 계획

- 2016년에 실시한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181개 과제 중 제외대상 과제 34개 (18.8%), 원안동의 과제 108개(59.7%), 자체개선 과제 6개(3.3%)였고, 개선의견을 통보한 법령은 33개(18.2%)이며 33개 모두 수용하여 수용률은 100.0%임
- 2016년에 실시한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는 5개로 원안동의 과제 1개, 자체개선 과제 3개임. 개선의견 과제는 1개이며, 통보된 개선의견은 수용됨(100.0%)
- 2016년에 실시한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는 총 180개(제주도청 53개, 제주시청 63개, 서귀포시청 64개)로 원안동의 36개, 자체개선 82개임. 개선의견 과제는 62개로 통보된 개선의견 중 61개(98.4%)는 수용되었고, 1개(1.6%)는 일부 수용됨
- 기관별로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현황을 살펴보면, 자체개선 과제 비중은 제주특별자치도청(47.2%)과 제주시청(57.1%)은 높은데 비해, 서귀포시청의 경우는 개선의견 통보 비중이 60.9%로 높음. 원안동의 과제의 경우는 제주특별자치도청 9.4%, 서귀포시청 6.3%로 낮은 비율을 나타내는 것과 대조적으로 제주시청의 경우는 42.9%로 높음. 이는 분석평가 검토의견 단계에서 전문가 컨설팅을 거치지 않고 기관 자체적으로 검토의견을 통보함에 따라 원안동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여겨짐

〈그림 2-5〉 대상과제 분야별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반영계획 수용률



주: 반영계획서에 '개선 의견'이 있는 62개 사업과제 중 61개는 '수용'되었고 1개 과제가 '일부 수용'함.

〈표 2-8〉 대상과제 분야별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반영계획 현황

(단위 : 개, %)

	계	제외 대상	원안 동의	자체 개선	개선 의견	반영계획		
						수용	불수용	일부수용
법령	181 (100.0)	34 (18.8)	108 (59.7)	6 (3.3)	33 (18.2)	33 (100.0)	-	-
계획	5 (100.0)	-	1 (20.0)	3 (60.0)	1 (20.0)	1 (100.0)	-	-
사업	소계	180 (100.0)	-	36 (20.0)	82 (45.6)	61 (98.4)	-	1 (1.6)
	도본청	53 (100.0)	-	5 (9.4)	25 (47.2)	22 (95.7)	-	1 (4.3)
	제주시	63 (100.0)	-	27 (42.9)	36 (57.1)	-	-	-
	서귀포시	64 (100.0)	-	4 (6.3)	21 (32.8)	39 (100.0)	-	-

자료: 2016년 제주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결과보고서 재구성.

3. 소결

-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현황 및 컨설팅 지원 현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2016년에 실시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는 총 366개 과제이고 대상과제 분야별로는 법령 181개 과제, 계획 5개 과제, 사업 180개 과제임. 이 중 ‘자체개선’ 및 ‘개선의견’한 과제는 187개 과제로 전체 대상과제 수의 51.1%를 차지함 (법령 39개 과제, 계획 4개 과제, 사업 144개 과제)
 - 2016년에는 개선의견 통보 96개 과제 모두 수용되어 수용률은 100.0%임. 2015년 개선의견 수용률 74.3% 대비 25.7%p 증가한 것임
- 2016년에 실시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에 대한 컨설팅은 344개 과제(94.0%)에 대해 지원되었고, 자치법규와 달리 계획 과제와 사업 과제의 경우에는 과제 선정 단계에서 제외되거나 대체된 과제까지 컨설팅이 지원되어 대상과제 분야별 컨설팅 지원율에는 다소 차이가 있음(법령 79.6%, 계획 120.0%, 사업 107.8%)
 - 2016년에는 성별영향분석평가서 검토 단계에서 분석평가책임관(혹은 기관 담당)이 요청한 전문가 검토(컨설팅) 비중이 187개 과제 중 80.7%로 높은 편이고 사업 과제의 경우에도 144개 과제 중 75.0%가 전문가 검토의견을 거침

- 방법별 컨설팅 지원에서도 한 과제 당 서면(GIA시스템, 메일 등) 컨설팅 후에 과제 담당자와의 1:1 대면컨설팅 순으로 진행하여 컨설팅의 질적 내실화에 주력함. 대면 컨설팅 실시율은 30.0%로 2015년 대비 4.0%p 증가함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현황

- 1.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현황 분석 개요
- 2.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현황 분석 결과
- 3. 공무원 인터뷰 결과
- 4. 소결

1.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현황 분석 개요

가. 이행현황 분석 개요

1) 이행현황 분석 목적

- 2016년에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했던 제주특별자치도의 제·개정 조례, 계획, 사업을 대상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마지막 지표인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이 2017년에 이루어진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 사례를 발굴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효과에 대한 홍보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공무원 대상 인터뷰를 통해 과제 담당자의 성별영향분석평가서 작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교육과 업무 담당자별 컨설팅 방향을 모색하여 향후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의 정책효과 제고 방안 제안하고자 함

2) 이행현황 분석 대상, 방법 및 기간

- 분석 대상은 2016년에 실시한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 분야별 (법령, 계획, 사업) 성평등 조치 반영계획을 수용한 207과제 중 144개 과제(69.6%)임
 - 법령의 경우는 2016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한 제·개정 조례 중 검토의견 통보서 내용에서 개선의견을 제시하거나 수용한 39개 과제
 - 계획 및 사업의 경우는 성평등 조치사항을 제시하거나 수용한 168개 과제(계획 4개, 사업 164개) 중에서 실제 이행점검표를 접수한 106개 과제임(계획 3개 및 사업 103개 과제 중 원안동의가 1개 제외). 접수된 이행점검표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3-1〉 계획 및 사업에 대한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점검표 접수 현황

구분		계획 (a)	사업				합계 (a+b)
			도 본청	제주시	서귀포시	소계(b)	
1차	‘17. 9. 20 ~ 10. 20	1	9	4	1	14	15
2차	‘17. 10. 23 ~ 10. 27	2	24	4	5	33	35
3차	‘17. 10. 23 ~ 11. 10	-	10	19	27	56	56
합계		3	43	27	33	103	106

- 7) 분석평가서에 성차별 요소가 발견되지 않아 개선의견이 없다고 판단되었던 원안동의 과제로 분석대상에서 제외함

- 분석 기간은 먼저, 계획 및 사업의 경우는 2017년 6월 12일부터 8월 16일까지 9차례의 연구진 회의를 통해 분석평가서를 검토·분석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실제 이행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계획 및 사업 과제에 대한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점검표를 작성, 배포, 접수를 2017년 9월 20일부터 11월 10일 사이 3차례에 걸쳐 진행함
- 1차는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시·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성별영향분석평가 담당자의 행정문서 협조를 통해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 점검표를 과제 담당자에게 배포
 - 2차는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의 공문으로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점검표 배포·접수
 - 3차는 책임연구자가 이행 점검표 미제출 담당자별로 전화, 메일, 팩스로 배포, 접수
 - 개정 조례의 경우는 2017년 9월 11일부터 9월 15일까지 법제처의 국가정보법령정보 센터를 통해 정책개선안 수용한 제·개정 조례의 전문을 검토하여 반영 여부를 확인
- 분석 방법은 2016년 각 계획 및 사업의 성별영향분석평가서 분석 및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점검표 접수·분석, 모니터링단 구성 및 현장 모니터링, 공무원 인터뷰(과제 담당자 및 기관·총괄 담당자 포함) 등을 통해 수렴된 이행 결과를 지표별로 분석
- 모니터링단은 책임연구자와 공동연구자 외에 제주 지역 성인지 정책 컨설턴트 2명을 포함한 총 4명으로 구성한 후 4차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진행 과정을 공유하고 이행 현황 점검 결과 평가를 통해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사례 및 우수사례(안) 발굴
- 이행현황 분석 개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표 3-2〉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현황 분석 개요

구 분	내 용
대상	· 2016년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수용과제 207과제 중 144개 과제 (제·개정 조례 39개 과제, 실제 이행점검표를 제출한 계획 3개 과제 및 사업 102개 과제)
기간	· 2017. 6. 12 ~ 8. 16(9차례) : 계획 및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서 분석(연구진) · 2017. 9. 11 ~ 9. 15 : 법제처 국가정보법령정보센터에서 공포된 제·개정 반영 내용 점검 · 2017. 9. 20 ~ 11. 10 : 계획 및 사업에 대한 이행점검표 접수 및 분석 - 3차에 걸친 이행 점검표 접수(17.9.20~10.20 & 10.23~10.27 & 10.20~11.10) - 현장 모니터링 및 과제 담당·기관 담당 공무원 인터뷰(17.11.7~11.20) - 이행점검 결과 및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 우수사례(안) 발굴
방법	· 성별영향분석평가서 분석 및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 점검표 접수 및 증빙자료 분석 · 완전 이행한 과제 담당자 및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실무자 등 인터뷰 · 정책 이행 모니터링단 구성 및 현장 모니터링 실시
내용	· 분석평가서 작성 수준 및 성평등 조치사항 마련 유무 · 성평등 조치사항 구체성 정도 및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 수준 등

나.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현황 분석 기준

-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2016년 제주여성가족연구원에서 수행한 강경숙 외(2016)의 분석틀을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성인지 정책 전문가 자문회의와 도내·외 전문가 FGI, 손영숙 외(2015)의 분석틀, 2016년 여성가족부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 등을 토대로 대상과제별 분석 기준을 보강하여 구성함. 그 내용을 요약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음

〈표 3-3〉 성별영향분석평가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현황 분석 방향

구분	성과분석 및 개선 방안(강경숙 외, 2016)	정책효과 제고 방안 연구(본 연구)
법령	- 여성가족부 GIA 시스템에 등록된 제주 지역 성평등 정책 개선 관리 실적	- 개선안을 수용한 공포된 제·개정 조례가 실제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하여 이행현황 점검 1.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관련 조항 유무 2. 성별 특성 관련 유무 2-1 ⇨ 성별 특성 관련 지침 혹은 규정 유무 2-2 ⇨ 성별분리 통계 생산 유무 3. 성별 균형 참여 관련 조항 유무
계획		1. 성평등 조치사항 유무 ⇨ 있다, 없다 2. 성평등 조치사항 적절성 및 내용 2-1 ⇨ 단순 제시, 구체적 제시, 구체적 성인지적 제시 2-2 ⇨ 정책개선안 내용에 대한 분석 3. 성평등 조치사항 분야별(법령·사업 관련) 이행수준 ⇨ 미이행, 이행예정, 일부이행, 대체로이행, 완전이행
사업	1. 성평등 조치사항 유무 ⇨ 있다, 없다 2. 성평등 조치사항 적절성 ⇨ 적절, 부적절 3. 조치사항 이행수준 ⇨ 미이행, 일부이행, 이행	1. 성평등 조치사항 유무 ⇨ 있다, 없다 2. 성평등 조치사항 적절성 및 내용 2-1 ⇨ 단순 제시, 구체적 제시, 구체적 성인지적 제시 2-2 ⇨ 성평등 조치사항 내용에 대한 분석 3. 성평등 조치사항 분야별 이행수준 ⇨ 미이행, 이행예정, 일부이행, 대체로이행, 완전이행

1) 법령에 대한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현황 분석 지표

- 법령의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현황 분석 지표는 여성가족부의 2016년 법령 성별영향 분석평가 지표인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 특성’, ‘성별 균형 참여’를 따름

〈표 3-4〉 법령에 대한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현황 분석 지표

분석 지표		내용
성별구분 또는 고정관념		· 제·개정 조례 등 적용 대상에 성별(남녀)을 구분하는 조항이 있는지, 사용하는 용어 중 성별고정관점에 의한 표현이 있는지, 성별 고정관념이 있는 지 등 점검 예) 불임치료를 위한 휴가를 신설할 경우 불임치료는 부부가 함께 받을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하므로 남녀근로자 모두가 대상이 되어야 함
성별 특성 고려	성별 통계 생산	· 사회문화적, 경제적, 신체적 조건에 따른 성별 격차 원인 파악을 위한 기초 자료 구축 예) 각종 서식에서의 남녀 구분, 제·개정 조례 본문에 통계·서식에 성별 표기 등 명시
	성별 특성 관련 규정	· 제·개정 조례 및 지침 등에 정책 수혜 및 수급 요건에 성별 고려한 규정이 있는 지 점검
성별 균형 참여		· 각종 위원회 등의 위원회 자격 요건이 특정성에 불리하게 작용되고 있지 않는 지 등 점검, 개선함. 예)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2항 근거, 반영

- ‘성별구분 또는 고정관념’은 제·개정 조례 등 적용 대상에서 성별(남녀)을 구분하는 조항이 있는지, 사용된 용어에 성별 고정관념에 의한 표현은 없는 지 등을 점검하는 것임. 즉,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한쪽 성에 불리한 결과를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을 모두 포함함(손영숙 외, 2015)
 - 예를 들면 불임치료를 위한 휴가를 신설할 경우 여성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남성 불임에 대한 고려가 없을 뿐 아니라 불임치료는 부부가 함께 받아야 된다는 점에서 남녀근로자 모두가 사업 수혜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임(여성가족부, 2016)
- ‘성별통계 생산’은 사회문화적, 경제적, 신체적 조건에 따른 성별 격차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구축하여 활용하기 위한 것임
 - 예를 들면 각종 서식에서의 남녀 구분, 자치법규 본문에 통계·서식 등에 성별 표기 등을 명시하는 것임
- ‘성별특성 관련 규정’은 제·개정 조례 및 지침 등에 정책 수혜 및 수급 요건에 성별에 따른 고려가 되지 않아 특정 성(性)에 불리하지 않는 지 등을 점검하고, 해당 내용이 있을 경우 개선하는 것임
- ‘성별 균형 참여’는 각종 위원회 등의 자격 요건이 특성성별에 불리하게 작용되고 있지 않는지 등을 점검하고,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의 2항을 근거로 반영하는 것임

2) 계획 및 사업에 대한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현황 분석 지표

- 강경숙 외(2016)의 분석틀을 동일하게 유지하되 성인지 정책 전문가 의견 및 손영숙 외(2015)의 분석틀을 참고하여 보강한 계획 및 사업에 대한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현황 분석 지표는 다음과 같이 3단계로 구성함

〈표 3-5〉 계획 및 사업에 대한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현황 분석 지표

구분	분석 지표	분석 기준
1단계	성평등 조치사항 유무	· 성평등 조치사항이 마련되어 있는가? ① 있다, ② 없다
2단계	성평등 조치사항 구체성	· 성평등 조치사항이 성별 요구도 분석을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가? ① 단순 제시: 남녀 수혜 비율 '50:50'과 같이 단순히 기재적으로 제시 ② 구체적 제시: '남성의 참여율 제고'와 같이 대상과 방법은 구체적이나 분석 평가서에 정확한 성별 요구도 분석이 반영되지 않은 개선안 ③ 성인지적·구체적 제시: '아동의 특성(장애 아동, 다문화, 청소년 등)에 맞는 맞춤형 돌봄형 프로그램 개발'처럼 사업 수혜 범위, 대상, 방법, 기대효과 등이 예측 가능하도록 제시된 개선안
	성평등 조치사항 내용	· 성평등 조치사항은 어떤 항목의 내용으로 마련되었는가? ① 성별분리 통계, ② 성별에 따른 요구도 조사, ③ 사업 홍보 방식, ④ 사업 수혜자 선정 시 성별 고려, ⑤ 성별 고정관념 요소 개선, ⑥ 성별 균형 참여, ⑦ 성별 고려 시설 개선, ⑧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성별 요구 반영된 항목
3단계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 수준	· 성평등 조치사항은 실제 어느 정도 이행되었는가? ① 미이행, ② 이행예정, ③ 일부이행, ④ 대체로 이행, ⑤ 완전 이행 · 이행예정 혹은 이행하지 못한 경우 그 이유는 무엇인가?

2.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현황 분석 결과

가. 법령

1)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현황

- 제·개정 조례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현황은 2016년에 실시된 181개의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제·개정 조례 중에서 검토의견 통보 결과 '자체개선'으로 처리된 6개와 '개선의견'을 통보한 33개를 더해 총 39개 과제에 대해 실제로 공포된 자치법규에 개선의견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분석함

-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현황 분석 대상인 39개의 제·개정 조례의 정책개선안 반영률은 97.4%(38개)임. 제·개정 조례별로 살펴보면, 제정 조례의 반영률은 100.0%이고 개정조례의 반영률은 96.8%로 제정안 반영률이 개정안 반영률보다 더 높음
- 이는 중앙부처 법령 대상 정책개선 현황 분석(김희경·조규진, 2013) 결과와 경기도 법령에 대한 정책개선 이행현황 분석(손영숙 외, 2015) 결과와 동일한 경향임

〈그림 3-1〉 2016년 제주특별자치도 법령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률

(단위 : %)



〈표 3-6〉 2016년 제주특별자치도 법령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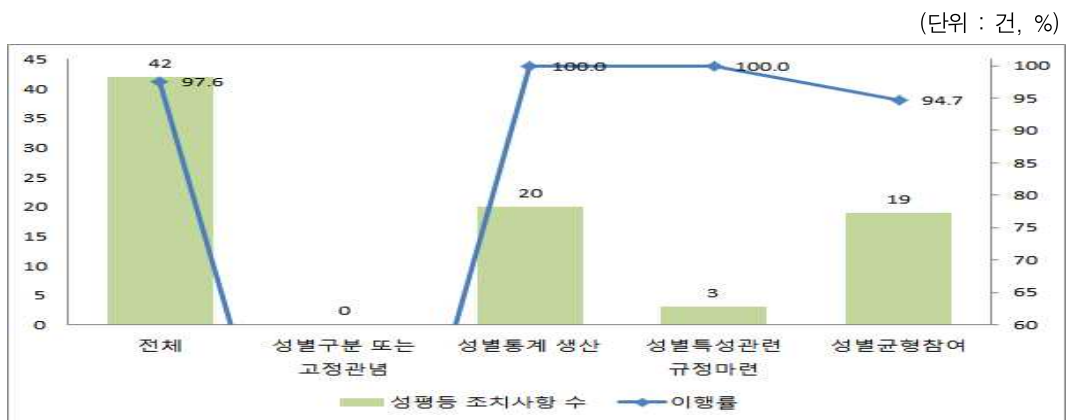
(단위 : 개, %)

구분		전체	개선의견 수용	이행 점검 결과		기타
				이행	미이행	불수용
제정 조례	자체개선	1(100.0)	1(100.0)	1(100.0)	-	-
	개선의견수용	7(100.0)	7(100.0)	7(100.0)	-	-
	소계	8(100.0)	8(100.0)	8(100.0)	-	-
개정 조례	자체개선	5(100.0)	5(100.0)	5(100.0)	-	-
	개선의견수용	26(100.0)	26(100.0)	25(96.2)	-	1(3.8)
	소계	31(100.0)	31(100.0)	30(96.8)	-	1(3.2)
전체 합계		39(100.0)	39(100.0)	38(97.4)	-	1(2.6)

2) 분석 지표별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현황

- 분석 지표에 따른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현황 분석 대상인 39개의 제·개정 조례의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현황을 보면, 반영된 이행 건수가 가장 많은 지표는 '성별 통계 생산'으로, 총 20건의 성평등 조치사항이 제시되었으며 이에 대해 20건 모두 이행되어 이행률은 100.0%임
- 제시된 성평등 조치사항 항목별로 이행률을 보면, '성별통계 생산(20건, 100.0%)'은 물론 '성별특성 관련 규정 마련'의 경우 총 3건의 성평등 조치사항에 대해 3건 모두 이행됨(100.0%). 그 다음으로 '성별 균형 참여'의 경우 총 19건의 성평등 조치사항에 대해 18건이 이행되어 이행률은 94.7%임

〈그림 3-2〉 분석 지표별 법령 성평등 조치사항 수 및 이행률



〈표 3-7〉 분석지표별 법령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 현황

(단위 : 건, %)

이행 점검 분석지표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		
		합계	이행	미이행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	-	-
성별 특성 고려	성별통계 생산	20(100.0)	20(100.0)	-
	성별특성 관련 규정 마련	3(100.0)	3(100.0)	-
성별 균형 참여		19(100.0)	18(94.7)	1(5.3)
계		42(100.0)	41(97.6)	1(2.4)

주: 1개의 자치법규에 2개 이상의 개선의견이 제시된 경우에는 중복하여 건수로 합산됨에 따라 총합계가 정책개선 이행 분석 대상 과제수인 39개(자체개선 6개+개선건의 수용 33건)를 초과하여 나타남

가)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은 제·개정 조례에 남녀를 명시적으로 구분하는 것,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한쪽 성에 불리한 결과를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을 모두 포함한 지표임(손영숙 외, 2015). 본 연구에서는 해당 지표의 개선안은 없음

나) 성별 특성 고려

- ‘성별 특성 고려 지표’에 해당하는 성평등 조치사항은 총 23건이며, 이를 내용에 따라 ‘성별통계 생산’과 ‘성별고려 명시’로 구분하여 분석함
 - ‘성별 특성 고려’ 총 23건의 성평등 조치사항 중 ‘성별통계 생산’ 지표에 해당하는 조례는 20건(87.0%)이고 ‘성별특성 관련 규정 마련’ 지표에 해당하는 조례는 3건(13.0%)임

□ 성별통계 생산

- ‘성별통계 생산’과 관련된 성평등 조치사항은 대부분 2014년 8월 7일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을 토대로 법령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엄격히 제한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성별분리 통계 생산을 위해 각종 서식의 인적 기재란에 성별을 기입하도록 하는 내용과 관련된 사례들임
 - 생년월일란에 성별구분란을 기 반영한 2건의 제·개정 조례를 포함하여 성별통계 생산 관련 성평등 조치사항을 수용한 20건에 대한 이행률은 100.0%임
 - 이는 성별통계 생산과 관련된 성평등 조치사항은 별지서식 변경 등 수용하기에 비교적 쉬운 내용으로 저항감이 크지 않은 성(性) 중립적 개선안이기 때문으로 여겨짐

〈표 3-8〉 성별통계 생산 관련 법령 중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 사례 예시

부서	법률명	주요 성평등 조치사항 반영 내용
해양 산업과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별지 제10호서식, 제12호서식까지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하되, 성별 구분란을 기재 <개정 2016.11.9>
방호 구조과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안	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 서식의 경우,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성별 구분란을 기재하여 성별 통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시행 2017.01.27.]
정보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서식에 대한 성별분리 통계 생산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할 수 있도

부서	법률명	주요 성평등 조치사항 반영 내용
담당관	제주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등 지원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록 성별란 별지2호서식 기재 . [시행 2016.06.22.]
정보융합 담당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조례”)	생년월일란에 성별 구분란을 추가하여 성별 통계 구축 기반 마련. 별지1호서식, 별지2호서식, 별지3호서식 반영 . [시행 2016.12.30.]

□ 성별특성 관련 규정 마련

- ‘성별 특성 고려’ 중 ‘성별특성 관련 규정 마련’은 총 3건의 성평등 조치사항이 모두 공포된 제·개정 조례에 반영되어 이행(100.0%)되었으며, ‘성별통계 생산’이나 ‘성별 균형 참여’ 지표에 비해 그 내용이 비교적 다양하다는 특징을 보임

〈표 3-9〉 성별특성 규정 관련 법령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 사례 예시

부서	법률명	주요 성평등 조치사항 반영 내용
도시 건설과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조의3(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시설 구조 및 설치기준 등) ① 제주특별법 제406조제2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구조 및 설치기준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 및 관광객을 위한 오락·휴양·편의·관광시설 등 연령과 성별의 구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고려할 것 [본조신설 2017.3.29.]
농업 기술원 기술지원 조정과	제주특별자치도 선도농업인육성기금 조례 일부 개정	제8조(선도농업인육성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 ② 위원회의 위원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2016.12.30.>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과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장, 농업기술원 기술지원 국장이 된다. 다만, 제1호의 경우는 2명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 기금운용이나 기금관련 분야 전문가 3. 농업인단체 관계자 4. 농업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
보건 위생과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설치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5. 공공보건의료 자원 실적통계, 지역 내 성별·연령별 등 공공보건의료 이용 현황과 실태에 관한 사항 구축 및 모니터링 [시행 2017.03.08.]

다) 성별 균형 참여

- ‘성별 균형 참여’ 지표는 2015년 7월 1일 시행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근거하여, 위원회는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의미함. 즉, 위원회 구성 시 어느 한쪽 성이 불리하지 않도록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남녀)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거나 위원회 자격 요건을 완화하도록 하는 성평등 조치사항이 주 내용임
- 2016년에 ‘성별 균형 참여’에 해당하는 제·개정 조례의 성평등 조치사항은 총 19건이며, 그 중 18건이 반영되어 94.7%의 높은 이행률을 보임
 - 수용된 성평등 조치사항은 대부분 한쪽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나, 여성 전문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건축, 어업 등)는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하여 위원회를 부서와 협의하여 구성했으면서도 관련 조례에는 명시되지 않음. 이는 위촉직 위원의 성비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 등을 감안한 결과로 보임

〈표 3-10〉 성별 균형 참여 관련 법령 중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 사례 예시

부서	법률명	주요 성평등 조치사항 반영 내용
기업 통상과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제14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심의)④ 당연직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 기업지원을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위원의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6.12.30.>
교통 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113조 제1항에 따라 구성하되 성별균형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다. [시행 2016.09.28.]
식품원에 특작과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육성 및 지원 조례	제4조(향토음식육성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당연직 위원은 향토음식 육성업무 담당 국장과 관광 등 관련부서 과장으로 하며,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특정 성(性)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디자인 건축 지적과	제주특별자치도 주거복지 조례(조례 명칭 변경 제주특별자치도 주거복지 기본 조례)	양성평등기본법에 위촉직 위원일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고 명시된 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위원회는 구성하였으나 조례에는 따로 명시 않음 [시행 2016.09.28.]

- 성별 균형 참여 관련 성평등 조치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조례는 총 1건임
- 미이행한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반영하지 않은 사유는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규약」 제4조 기준에 근거하여 주민참여를 독려할 수 있도록 하여 성별 균형 참여 부분은 해당이 없는 것으로 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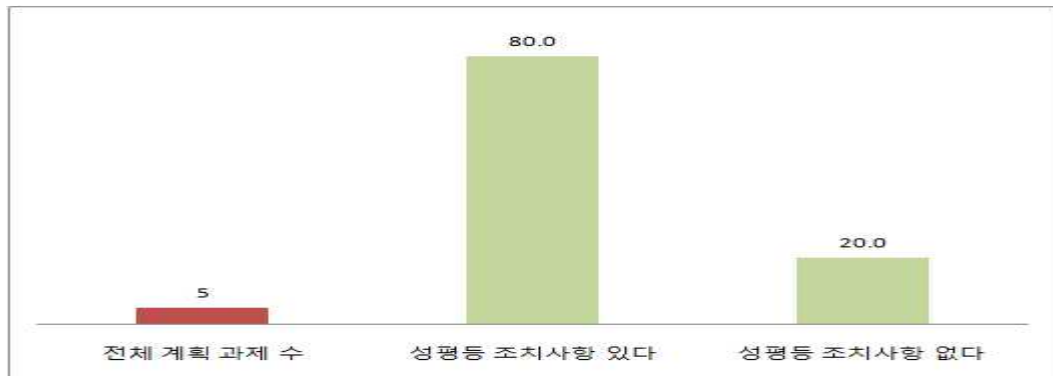
나. 계획

1) 성평등 조치사항 유무

-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현황 분석을 위한 첫 번째 분석 단계로는 2016년에 실시된 5개의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계획 과제 중에서 성평등 조치사항이 마련되었는지를 분석함
- 계획에 대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한 전체 5개 과제 중 원안동의 1개 과제(20.0%)를 제외한 4개 과제(80.0%)에 성평등 조치사항이 마련됨(자체개선 3개+개선의견 1개)

〈그림 3-3〉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성평등 조치사항 유무

(단위 : 개, %)



〈표 3-11〉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성평등 조치사항 유무

(단위 : 개, %)

구 분		전체	비율
전 체		5	100.0
성평등 조치사항	있다	4	80.0
	없다	1	20.0

2) 성평등 조치사항 구체성

- 다음 단계로 성평등 조치사항을 마련한 제주특별자치도의 2016년 성별영향분석평가 4개 계획 과제 중에서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 결과를 제출한 3개 계획 과제(75.0%)를 대상으로 분야별 성평등 조치사항의 구체성과 성평등 조치사항의 내용을 분석함
- 성평등 조치사항의 구체성 정도는 성평등 조치사항을 이행할 때 성별 특성 및 성별 요구도 분석을 통해 사업 수혜 범위, 대상, 방법 및 기대효과 등이 예측 가능하도록 성평등 조치사항이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제시되었는지에 따라 분류함

가) 분야별 성평등 조치사항 구체성

- 분야별(법령·사업 관련 개선안)로 제시된 성평등 조치사항을 이행하고자 할 때 대상, 범위, 방법 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성 정도를 살펴본 결과, 전체 법령·사업 관련 성평등 조치사항 5개 중 ‘구체적으로 제시’ 된 것은 80.0%(법령 1건, 사업 3건)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며, ‘단순 제시’는 20.0%(1건)임
- 구체적으로 제시한 성평등 조치사항의 예를 들어보면,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반영’, ‘물류중사자로만 교육대상이 한정하고 있어 실질적 예산대비 수혜인원이 축소되지 않는 지 점검하여 교육 대상 확대’, ‘질환의 종류는 성별, 연령별에 따라 다르므로 세부사업 추진 시 성별, 연령별 분리하여 기초자료 생성 운영관리’ 등임. ‘시범사업 평가 후 환류방안 마련’과 같이 구체적인 방법 등이 없는 경우는 단순 제시로 간주함

〈그림 3-4〉 2016년 제주특별자치도 계획에 대한 성평등 조치사항 구체성

(단위 : %)



〈표 3-12〉 계획에 대한 분야별 성평등 조치사항 구체성

(단위 : 건, %)

구체성 정도	성평등 조치사항		
	법령	사업	전체
단순 제시	-	1(25.0)	1(20.0)
구체적 제시	1(100.0)	3(75.0)	4(80.0)
성인지적 구체적 제시	-	-	-
합계	1(100.0)	4(100.0)	5(100.0)

주: 1개 계획 당 개선안을 법령, 사업 분야별로 묶어서 중복 합산됨에 따라 대상과제 수보다 개선안 수가 더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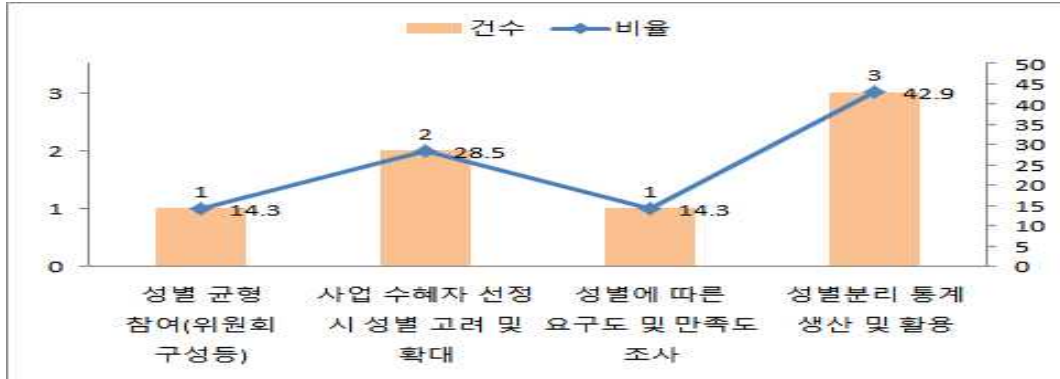
나) 분야별 성평등 조치사항 내용

-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 결과를 제출한 3개 계획에서 제안된 성평등 조치사항은 총 7건⁸⁾으로, 1개 계획 당 평균 약 2.3건의 성평등 조치사항이 제시됨. 성평등 조치사항 내용을 법령·사업별로 살펴보면 ‘사업 관련’ 성평등 조치사항이 71.4%(5건)로 가장 많고 이어서 ‘법령 관련’ 성평등 조치사항이 28.6%(2건)임
- 성평등 조치사항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성별분리 통계 생산 및 활용’과 관련된 내용이 7건 중 42.9%(3건)로 가장 큰 비중을 나타냄. 그 다음으로 ‘사업 수혜자 선정 시 성별 고려 및 확대’ 28.5%, ‘성별에 따른 요구도 및 만족도 조사’ 및 ‘성별 균형 참여(위원회 구성 등)’ 각 14.3%씩 순임
- 분야별로 살펴보면, ‘법령 관련’ 성평등 조치사항은 2건 성평등 조치사항 중에서 ‘성별분리 통계 생산 및 활용’과 ‘성별 균형 참여(위원회 구성 등)’가 각각 50.0%(각 1건씩)씩 차지함. ‘사업 관련’ 성평등 조치사항은 5건 개선안 중에서 ‘성별분리 통계 생산 및 활용’과 ‘사업 수혜자 선정 시 성별 고려 및 확대’가 각각 40.0%씩(각 2건씩)이고, ‘성별에 따른 요구도 및 만족도 조사’는 20.0%(1건)로 나타남

8) 성평등 조치사항 내용은 법령, 사업 관련 분야별로 제시한 성평등 조치사항을 내용별로 분류한 것이므로 한 과제당 수보다 더 많음. 예를 들면, 「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인 경우 성평등 조치사항 내용이 법령 관련 성평등 조치사항인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반영’ 1건과 사업 관련 계획인 ‘시범사업 평가 후 환류방안 마련’ 1건으로 총 성평등 조치사항은 2건으로 분석된 것임

〈그림 3-5〉 2016년 제주특별자치도 계획에 대한 성평등 조치사항 내용

(단위 : 건, %)



〈표 3-13〉 계획에 대한 분야별 성평등 조치사항 내용

(단위 : 건, %)

구분	성평등 조치사항		
	법령	사업	전체
성별분리 통계 생산 및 활용	1(50.0)	2(40.0)	3(42.9)
성별에 따른 요구도 및 만족도 조사	-	1(20.0)	1(14.3)
사업 수혜자 선정 시 성별 고려 및 확대	-	2(40.0)	2(28.5)
성별 균형 참여(위원회 구성 등)	1(50.0)	-	1(14.3)
합계	2(100.0)	5(100.0)	7(100.0)

주: 1개 계획당 제시된 각 개선안 내용을 항목별로 중복 합산함에 따라 대상과제 수보다 개선안 수가 더 많음(평균값=2.3건)

○ 따라서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 제시된 성평등 조치사항은 ‘사업 관련’ 개선안이 71.4%로 대부분이며 특히 ‘성별분리 통계 관련’ 개선안이 42.9%로 비중이 높은 편임. 성평등 조치사항의 질적 측면에서 보면 ‘구체적으로 제시’된 성평등 조치사항이 80.0%로 대체로 양호하다고 할 수 있지만 성별 특성과 성별 요구도 차이를 반영한 ‘성인지적 제시’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임

3)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현황

○ 마지막 단계로 성평등 조치사항을 마련한 제주특별자치도의 2016년 성별영향분석평가 4개 계획 과제 중에서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 결과를 제출한 3개 계획 과제

(75.0%)를 대상으로 분야별(법령·사업 관련) 성평등 조치사항의 이행 수준을 분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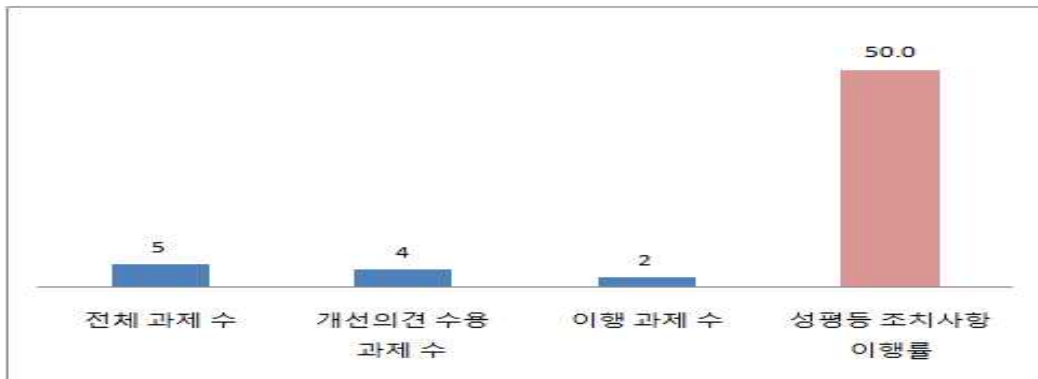
- 성평등 조치사항의 이행 수준은 실제 개선안을 어느 정도 이행했는지의 정도에 따라 ‘미이행’, ‘이행 예정’, ‘일부 이행’, ‘대체로 이행’, ‘완전 이행’으로 구분되며, 과제 담당자가 제출한 이행 점검표와 증빙자료를 검토한 후 전화 혹은 인터뷰 등으로 확인

가)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현황

- 이행 결과를 제출한 3개의 계획 과제 중에서 법령·사업 관련 분야별 성평등 조치사항을 한 건이라도 이행한 과제 수는 2개 과제(완전이행 1개+일부이행 1개)로 단위 과제당 이행률은 66.7%임. 이를 2016년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계획 과제 전체로 확대하여 살펴보면, 성평등 조치사항을 제시하거나 수용한 4개 계획 과제 중 50.0%의 이행률을 보여 전체 수준에 비하면 이행률이 16.7%p 낮은 수준임

〈그림 3-6〉 2016년 제주특별자치도 계획에 대한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률

(단위 : 개, %)



〈표 3-14〉 계획에 대한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 현황

(단위 : 개, %)

구분	분석평가 과제 수	개선의견 수용 과제 수(a)	한 건이라도 이행한 과제 수			
			소계(d=b+c)	완전 이행(b)	일부 이행(c)	이행률 (d/a*100)
2016	5	4(100.0)	2(100.0)	1(50.0)	1(50.0)	50.0

나) 분야별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률

- 이행 결과를 제출한 3개의 계획 과제 중에서 분야별 성평등 조치사항을 한 건이라도 이행한 것은 3건(완전이행 2건+일부이행 1건)임. 완전 이행한 성평등 조치사항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법령 관련’ 1건과 ‘사업 관련’ 성평등 조치사항 1건임

〈표 3-15〉 계획에 대한 분야별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 현황

(단위 : 건, %)

이행 수준	성평등 조치사항		
	법령	사업	전체
미이행	-	1(25.0)	1(20.0)
이행 예정	-	1(25.0)	1(20.0)
일부 이행	-	1(25.0)	1(20.0)
대체로 이행	-	-	-
완전 이행	1(100.0)	1(25.0)	2(40.0)
합계	0(100.0)	3(100.0)	5(100.0)

- 구체성을 갖춘 성평등 조치사항을 완전 이행한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법령 관련’ 성평등 조치사항으로는 ‘성별 균형 참여(위원회 구성 등)’와 관련해서 위원회 구성 시 특정성별이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구성계획(유니버설디자인위원회와 통합 운영)’을 마련하는 내부문서에 제시하고 완전 이행함
 - ‘사업 관련’ 성평등 조치사항은 ‘성별 수혜자 선정 시 성별 고려 및 확대’와 관련 내용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계획에서 시범사업 평가 후 환류방안을 제안하고 제주시 및 서귀포시 NEW 사무형 주거환경관리사업(화북금산지구 및 법환지구) 정비계획수립 시 행정시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시범사업을 추진, 완전 이행함
- 성평등 조치사항 ‘미이행 사유’에 응답한 내용을 보면, 해당 과제의 성평등 조치사항에 대해 공무원의 인사이동 시 원활하지 않은 업무 인수인계와 관련이 있다고 보임
- 이상의 계획에 대한 이행현황 분석 결과, 성평등 조치사항의 수준이 성인지적이고 구체적인 개선안은 없어서 아직 개선의 의지는 남아있지만 구체적으로 제시된 개선안이 전체 개선안의 80.0%를 차지함. 이는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 마련된 성평등 조치사항의 내용이 대체로 제도의 취지에 맞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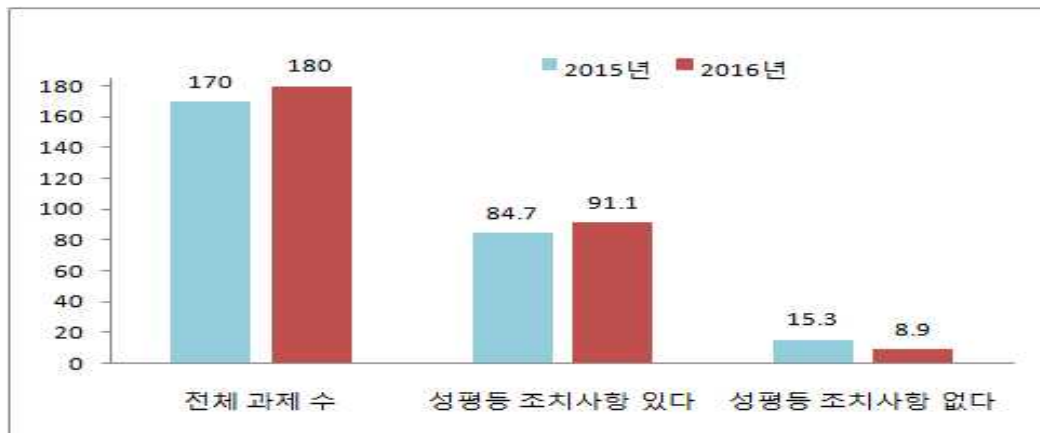
다. 사업

1) 성평등 조치사항 유무

○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현황 분석을 위한 첫 번째 단계로는 2016년에 실시된 180개 사업(제주특별자치도청 사업 53개, 제주시청 63개, 서귀포시청 64개) 중에서 성평등 조치 사항이 마련되었는지를 분석한 결과, 전체 180개 과제 중 164개(91.1%)에 성평등 조치사항이 마련됨. 이는 2015년에 실시된 사업 중 84.7%(총 170개 중 144개)과제에 정책개선안이 마련되었던 것에 비해 6.4%p 증가함

〈그림 3-7〉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성평등 조치사항 유무

(단위 : 개, %)



〈표 3-16〉 사업에 대한 성평등 조치사항 유무

(단위 : 개, %)

구 분			전체	제주특별자치도청	제주시청	서귀포시청
2016	성평등 조치 사항	있다	164(91.1)	48(90.6)	54(85.7)	62(96.9)
		없다	16(8.9)	5(9.4)	9(14.3)	2(3.1)
		소계	180(100.0)	53(100.0)	63(100.0)	64(100.0)
2015	성평등 조치 사항	있다	144(84.7)	40(87.0)	59(80.2)	45(88.2)
		없다	26(15.3)	6(13.0)	14(19.2)	6(11.8)
		소계	170(100.0)	46(100.0)	73(100.0)	51(100.0)

2) 성평등 조치사항 구체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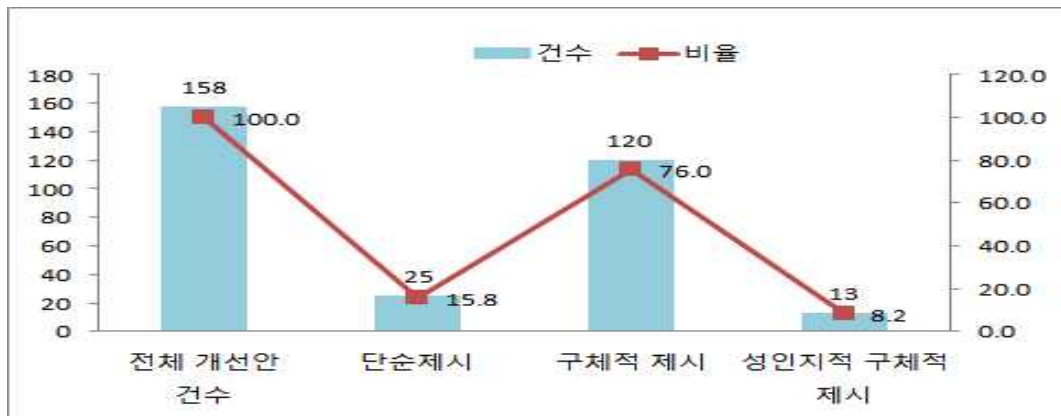
- 다음 단계로 성평등 조치사항을 마련한 제주특별자치도의 2016년 성별영향분석평가 164개 사업 과제 중에서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 결과를 제출한 102개 과제를 대상으로 분야별 성평등 조치사항의 구체성 및 성평등 조치사항의 내용을 분석함
- 성평등 조치사항의 구체성 정도는 성평등 조치사항을 이행할 때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범위와 대상, 방법, 기대효과 등을 예측할 수 있도록 성별 특성 및 성별 요구도 차이 분석으로 성평등 조치사항이 명확한지에 따라 분류함
 - 성평등 조치사항의 내용은 ‘성별 분리 통계 생산 및 활용’, ‘성별에 따른 요구도 및 만족도 조사’, ‘사업 홍보 방식 개선’, ‘사업 수혜자 선정 시 성별 고려 및 확대’, ‘성별 고정관념 요소 개선’, ‘성별 균형 참여’, ‘성별 고려한 시설 및 환경 개선’,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으로 분류함

가) 분야별 성평등 조치사항 구체성

- 분야별(법령·예산·사업 관련 개선안)로 제시된 성평등 조치사항을 이행하고자 할 때 대상, 범위, 방법 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성 정도를 살펴본 결과, 전체 158개 성평등 조치사항의 76.0%가 구체적으로 제시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8.2%는 성인지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됨. 단순히 제시된 것은 15.8%로 비교적 낮음

〈그림 3-8〉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성평등 조치사항 구체성

(단위 : 건, %)



〈표 3-17〉 사업에 대한 성평등 조치사항 분야별 구체성 정도

(단위 : 건, %)

구체성 정도	성평등 조치사항			
	법령	예산	사업	전체
단순 제시	11(40.7)	5(15.6)	9(9.1)	25(15.8)
구체적 제시	15(55.6)	25(78.1)	80(80.8)	120(76.0)
성인지적 구체적 제시	1(3.7)	2(6.3)	10(10.1)	13(8.2)
합계	27(100.0)	32(100.0)	99(100.0)	158(100.0)

주: 1개 과제 당 법령, 예산, 사업 관련 분야별로 개선안을 묶어서 중복 합산하여 대상과제 수보다 개선안 수가 더 많음

○ 구체성 정도에 따른 성평등 조치사항 내용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음

〈표 3-18〉 구체성 정도에 따른 성평등 조치사항 내용의 예시

구체성 정도	성평등 조치사항 내용의 예시
단순 제시	· ‘남녀 비율을 50:50으로 참가자 모집 시 반영하여 예산 집행’과 같이 기계적인 예산 배분을 제시한 개선안 · ‘만족도 조사를 통해 성별, 연령별 교육 프로그램 요구사항 조사할 필요성 있음’과 같이 향후 추진에 대한 의지가 불분명한 개선안 · ‘평가위원의 성별비율을 균등하게 함으로써 평가 시 한쪽 성향에 치우치지 않도록 사업추진’ 처럼 성별균형 비율(예: 특정성별이 40%이상 치우치지 않도록) 등이 제시되지 않은 개선안 등
구체적 제시	· ‘여성 위주의 금연지도자를 양성하여 자발적인 금연 홍보 참여로 금연 환경 조성에 기여’ 또는 ‘남성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설’처럼 대상과 방법 등은 구체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정확한 성별 요구의 차이가 반영되지 않은 채 한쪽 성에 편향적일 가능성이 있는 개선안 · ‘운전자 및 보행자 야간 및 우천 시 안전 고려 가드레일 설치 시 형광이나 자체 발광 센터 등 고려’와 같이 주야간 및 우천 시 수혜자의 안전성을 고려한 안전시설에 대한 적절한 계획이 적시되지 않아서 형광이나 자체 발광 센터 간 코너 및 직선거리 등 고려, 개수, 위치 등 구체적 인 제시가 필요한 개선안 등
성인지적 구체적 제시	· ‘아동의 특성(장애아동, 다문화, 청소년)에 맞는 맞춤형 돌봄형 프로그램 개발’ 또는 ‘수혜에 있어서 성별 격차가 나지 않으나 세부 프로그램에 따라 성별 참여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세부프로그램별 성별 분리통계 구축’과 같이 사업 수혜의 범위와 대상, 방법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제시되었다고 판단되는 개선안 등

○ 세부 분야별로 구체성 정도를 살펴볼 때 구체성(구체적+성인지적·구체적)을 갖춘 성평등 조치사항의 비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사업 관련’(90.9%)이고 가장 낮은 분야는 ‘법령 관련’ 성평등 조치사항임(59.3%)

- ‘사업 관련’ 성평등 조치사항은 기존 사업에 대한 평가 및 성별고정관념 해소를 위한 이미지 홍보 계획, 성별분리 통계 생산과 향후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만족도 조사 등 구체적이고 적절한 사업 계획 및 담당자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의 중요성을 고려한 교육 등을 제시함. 특히 사업비를 타 기관에 위탁하고 관리하는 경우에는 사업관리 지침이나 과업지시서 등에 성평등 조치를 위한 개선안을 마련할 수 있음
- ‘예산 관련’ 성평등 조치사항은 성별 요구 차이를 반영하여 구체적으로 예산 계획이 제시되어야 하지만 ‘교육 기회의 공정한 제공을 위한 예산편성’을 통하여 행정능력의 편중 방지 등과 같이 구체적인 예산 반영 계획을 제시하지 않는 등의 경향이 나타남
- ‘법령 관련’ 성평등 조치사항은 다른 분야에 비해 특정 사업 대상에 대한 성별분리 통계 자료 생성 및 성인지 관점에서의 사업 지침, 과업지시서 등에 반영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하므로 다른 분야에 비해 보다 더 구체적이고 성인지성을 갖추어야 하지만 비교적 낮은 수준을 보임

나) 성평등 조치사항 내용

- 이행점검표를 통해 이행 결과를 제출한 102개의 사업에서 제안된 성평등 조치사항은 총 265건으로, 한 개 사업 당 평균 2.6건의 성평등 조치사항이 제시됨. 성평등 조치사항 내용을 법령, 예산, 사업 성평등 조치사항으로 보면, 사업 관련 성평등 조치사항이 67.5%(179건)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예산 관련 성평등 조치사항이 16.6%(44건), 법령 관련 성평등 조치사항이 15.9%(42건)임
- 성평등 조치사항 내용별로 살펴보면, ‘사업 수혜자 선정 시 성별 고려 및 확대’가 총 265건의 성평등 조치사항 중 33.6%(89건)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이는 예산과 사업 관련 성평등 조치사항의 분야에서도 공통적임. 그 다음으로는 ‘성별 요구도 및 만족도 조사’가 20.4%(54건), ‘사업 홍보 방식 개선’이 12.5%(33건) 순으로 나타남
- 성평등 조치사항 내용별, 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법령 관련’ 성평등 조치사항은 총 42건 중 ‘성별분리 통계 생산 및 활용’이 31.0%(13건)로 가장 비중이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성별에 따른 요구도 및 만족도 조사’ 21.4%(9건), ‘사업 수혜자 선정 시 성별 고려 및 확대’ 14.3%(6건) 순으로 나타남
 - ‘예산 관련’ 성평등 조치사항은 총 44개 중 ‘사업 수혜자 선정 시 성별 고려 및

확대'가 63.6%(28건)로 가장 높은 비중으로 대부분을 차지함. 그 다음은 '성별에 따른 요구도 및 만족도 조사', '사업 홍보 방식 개선', '성별 고정관념 요소 개선'이 각 9.1%(각 4건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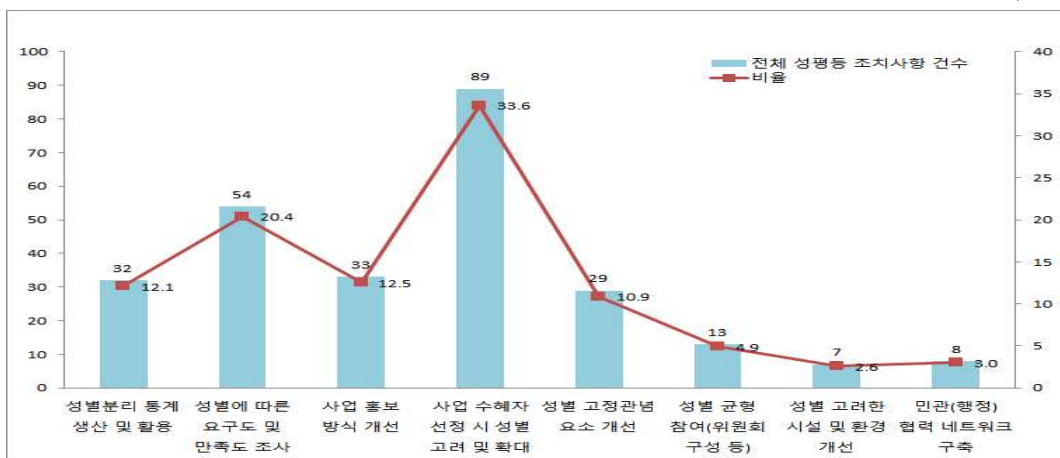
- '사업 관련' 성평등 조치사항은 총 179개 중 '사업 수혜자 선정 시 성별 고려 및 확대'가 30.7%(55건)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그 다음으로는 '성별에 따른 요구도 및 만족도 조사'가 22.9%(41건), '사업 홍보 방식 개선'이 14.6%(26건), '성별 고정관념 요소 개선' 11.7%(21건), '성별분리 통계 생산 및 활용' 10.6%(19건) 순임

○ 따라서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 제시된 성평등 조치사항은 '사업 관련' 성평등 조치사항이 67.5%이며 특히 '사업 수혜자 선정 시 성별 고려 및 확대'와 '성별에 따른 요구도 및 만족도 조사', '사업 홍보 방식 개선', '성별분리 통계 생산 및 활용' 등에 대한 성평등 조치사항이 비중이 높게 나타남

- 성평등 조치사항의 질적 측면에서 보면 구체성(구체적+성인지적·구체적)을 갖춘 개선안이 84.2%로 대체로 양호하다고 할 수 있지만 '성차별적인 문구 자체(특히, 여성의 몸매 강조)'와 같이 여성의 몸매 강조 등 성차별적인 문구 자체가 선언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성인지적이고 구체적인 대안 제시는 상대적으로 부족함

〈그림 3-9〉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성평등 조치사항 내용

(단위 : 건, %)



〈표 3-19〉 사업에 대한 분야별 성평등 조치사항 내용

(단위 : 건, %)

개선안 내용	성평등 조치사항			
	법령	예산	사업	전체
성별분리 통계 생산 및 활용	13(31.0)		19(10.6)	32(12.1)
성별에 따른 요구도 및 만족도 조사	9(21.4)	4(9.1)	41(22.9)	54(20.4)
사업 홍보 방식 개선	3(7.1)	4(9.1)	26(14.6)	33(12.5)
사업 수혜자 선정 시 성별 고려 및 확대	6(14.3)	28(63.6)	55(30.7)	89(33.6)
성별 고정관념 요소 개선	4(9.5)	4(9.1)	21(11.7)	29(10.9)
성별 균형 참여(위원회 구성 등)	5(11.9)	1(2.3)	7(3.9)	13(4.9)
성별 고려한 시설 및 환경 개선		3(6.8)	4(2.2)	7(2.6)
민관(행정) 협력 네트워크 구축	2(4.8)		6(3.4)	8(3.0)
합계	42(100.0)	44(100.0)	179(100.0)	265(100.0)

주: 1개 사업당 제시된 각 개선안 내용을 항목별로 중복 합산함에 따라 대상과제 수보다 개선안 수가 더 많음(평균값=2.6건)

2)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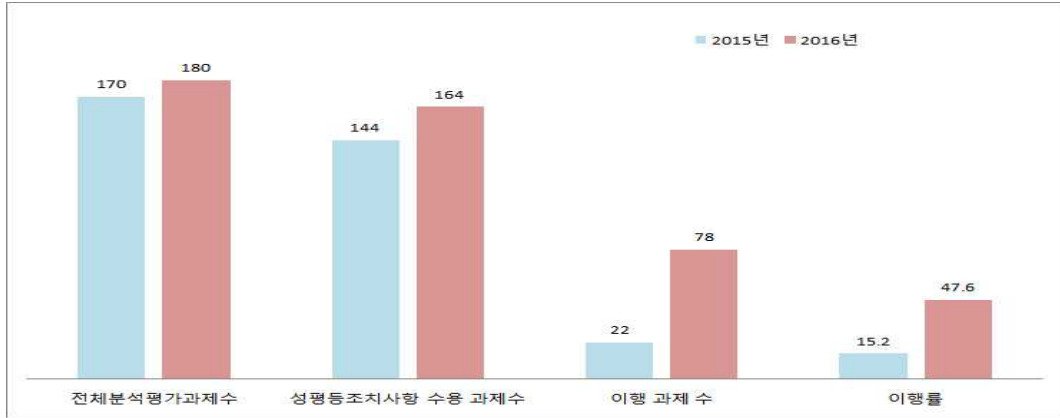
- 마지막 단계로 성평등 조치사항을 마련한 제주특별자치도의 2016년 성별영향분석평가 164개 사업 과제 중에서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 결과를 제출한 102개 사업 과제(62.2%)를 대상으로 분야별 성평등 조치사항의 이행 수준을 분석함
- 성평등 조치사항의 이행 수준은 실제 성평등 조치사항을 어느 정도 이행했는지의 정도에 따라 ‘미이행’, ‘이행 예정’, ‘일부 이행’, ‘대체로 이행’, ‘완전 이행’으로 구분되며, 과제 담당자가 제출한 이행 점검표와 증빙자료를 검토한 후 전화 혹은 인터뷰 등을 통해 확인함

가)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현황

-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 결과를 제출한 102개의 사업 과제 중에서 분야별 성평등 조치사항을 한 건이라도 이행한 과제 수는 78개(완전이행 38건+일부이행 40건)로 76.5%임. 이를 2016년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 과제 전체로 확대하여 살펴보면, 성평등 조치사항을 제시하거나 수용한 164개 사업 과제 중 47.6%의 이행률을 보임. 이는 전체 수준에 비하면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률이 28.9%p 낮지만 2015년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률 15.2% 대비 32.4%p 증가한 수준임

〈그림 3-10〉 2016년 제주특별자치도 사업에 대한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률

(단위 : 개, %)



〈표 3-20〉 사업에 대한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현황

(단위 : 건, %)

구분	분석평가 과제 수	성평등조치사항 수용 과제 수(a)	한 건이라도 이행한 과제 수			
			소계(d=b+c)	완전 이행(b)	일부 이행(c)	이행률 (d/a*100)
2015	170	144(100.0)	22(100.0)	6(27.3)	16(72.3)	15.2
2016	180	164(100.0)	78(100.0)	38(48.7)	40(51.3)	47.6

주. 2016년 '일부이행'은 2015년과 비교하기 위해 이행 점검표에 '일부이행', '대체로 이행'으로 체크한 과제를 '일부이행'으로 함.

나) 분야별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현황

-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 결과를 제출한 102개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 과제 중에서 분야별 성평등 조치사항을 한 건이라도 이행한 것은 127건(완전 이행 52건+대체로 이행 14건+일부 이행 42건)임. '완전 이행'한 성평등 조치사항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사업 관련' 성평등 조치사항이 37.5%(36건)로 가장 비중이 높고, 이어서 '예산 관련' 성평등 조치사항이 31.4%(11건), '법령 관련' 성평등 조치사항이 18.5%(5건) 순임

〈표 3-21〉 사업에 대한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현황

(단위 : 건, %)

이행 수준	성평등 조치사항			
	법령	예산	사업	전체
미이행	6(22.2)	12(34.3)	13(13.5)	31(19.6)
이행 예정	4(14.9)	4(11.4)	11(11.5)	19(12.0)
일부 이행	9(33.3)	6(17.2)	27(28.1)	42(26.6)
대체로 이행	3(11.1)	2(5.7)	9(9.4)	14(8.9)
완전 이행	5(18.5)	11(31.4)	36(37.5)	52(32.9)
합계	27(100.0)	35(100.0)	96(100.0)	158(100.0)

○ 구체성을 갖춘 성평등 조치사항을 완전 이행한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표 3-22〉 구체성을 갖춘 성평등 조치사항 완전 이행 사례 예시

분야	완전 이행한 성평등 조치사항 내용의 예시
법령 관련 성평등 조치사항	· ‘성별분리 통계 생산 및 활용’과 관련해서는 프로그램 운영계획에 성별 교육 수혜율 집계 및 청년층 참여 가산점 등 공모사업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과업 지침을 마련하여 완전 이행함
예산 관련 성평등 조치사항	· ‘성별에 따른 요구도 및 만족도 조사’와 관련해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남성의 수요를 반영한 신규교육 내용 개발에 예산 편성의 필요성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고 이행점검표 작성 과정에서 각 프로그램별 남녀분리통계를 내면서 남녀별로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자료화하여 완전 이행함. 특히 담당자 인터뷰 과정에서 남성의 수요를 반영한 신규교육 내용을 만들고 남녀노소 참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과 홍보 강화 등 사업이 완전 이행한 것을 확인됨
사업관련 성평등 조치사항	· 사업 관련 개선안으로 ‘사업 수혜자 선정 시 성별 고려 및 확대’와 관련해서는 농기계 훈련 과정에서 여성 맞춤형 농기계훈련과정을 별도 신설 예정으로 개선안을 제시하고 완전 이행함. 낮은 여성의 참여율을 감안하여 여성친화형 농업기계 교육을 개설하고 기존 남성 중심의 크고 조작레버가 많은 농기계들의 조작레버를 여성이 단순하고 쉽게 만든 미니 트랙터, 동력 분무기 등을 마련하여 참여자의 만족도를 향상하는 데 효과가 컸던 사업으로 확인됨

○ 성평등 조치사항 미이행 사유에 응답한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 담당자의 의지와 성인지 관점 결여가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과 관련된다는 것이 발견됨

- 예를 들면, ‘사업 수혜자 선정 시 성별 고려 및 확대’를 위한 개선안을 제시한 경우 ‘신청자 대부분이 여성으로 남성 신청자가 저조하여 프로그램에 적용하기 힘든 부분이

있음', '수강생 대부분이 여성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참여도, 운영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여 여성 수강생 위주의 프로그램을 계획함' 등을 미이행 사유로 응답함. 또한 '성별분리 통계 생산 및 활용'을 위한 개선안을 제시한 경우 '행사에 동원되는 운용인력 및 총 체험객을 파악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됨', '이미 학생들의 신청·접수를 마무리한 상태여서 남녀를 구분할 자료가 없음', '특정 성별에 치우치지 않게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기 때문에 별도의 선호도 조사를 할 필요가 없었음', '참가자 대부분이 초등학생이 대상이나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성향이나 참여 의지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가 많음' 등의 응답을 함. 이는 성별 요구 차이 분석이 되지 않아 성인지적 관점이 결여되었을 때 나타나는 사례임

- 그 외에 '예산 관련' 성평등 조치사항에서 '추가 교육 예산을 미확보', '국비사업에서 유사한 내용의 사업이 포함되어 별도의 예산 반영이 안 됨', '홍보물 제작 예산이 따로 미책정' 되었다는 응답도 있음

○ 성평등 조치사항 미이행 사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표 3-23〉 2016년 제주특별자치도 사업에 대한 성평등 조치사항 미이행 사유

구분		미이행 사유
제주도	주민봉사대원 운영	(사업)2017년 신규대원 모집 시 남성대원 위주로 원한다고 신문광고 홍보 등의 노력을 하였으나 봉사대 활동이 주로 평일 주간시간대 이뤄지고 실비지원 또한 소액(4시간 미만 1만원, 4시간 이상 2만원)이므로 사회활동을 하지 않은 여성대원 참여율이 높음
	범도민 안전체험 한마당 운영	(사업)체험객에 대한 성·연령별 통계를 파악하기 위해선 신청서식을 활용하여 사전 접수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데 행사 특성상 불특정 다수인이 개별적으로 참석하여 파악하기 어려움. 또한 행사에 동원되는 운용인력 및 총 체험객을 파악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됨
	전문자원봉사자 양성 아카데미	(예산)2016년 대비 추가 교육 예산 미확보로 인하여 남성 자원봉사자 수요 교육과정에 예산 확대 필요하나 이행하지 못함
	산림기능인교육훈련	(예산)여성교육생을 위한 소형 기계톱 등 구입 확대는 우리도 지자체에서 직접 교육 장비를 구입하지 않는 사항으로 해당 없음 (사업)산림기능인교육훈련은 산림전문교육기관인 산림조합중앙회임업기술훈련원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교육훈련생 모집 시 별도의 성별 구분 없이 선착순으로 모집
	귀농귀촌인 재능기부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예산) 현 사업은 귀농귀촌인과 선주민 간 융합 프로그램으로 예산을 증액하고자 했으나, 귀농귀촌 박람회 개최와 같은 국비사업에서 유사한 내용의 사업이 포함되어 있어서 별도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음

구분		미이행 사유
제주시	중소기업지원 (생활과학고실운영)	(사업)2016년 생활과학고실 운영 지원 당시 이미 학생들의 신청·접수를 마무리한 상태여서 남녀를 구분할 자료가 없었음. 2017년 상반기까지도 업무대행 기관에서 관련 통계에 필요한 자료를 구축하지 못하였음
	문화의집 프로그램 운영	(법령)자체 규칙은 동 주민자치위원회와 충분히 논의 필요 (사업)프로그램의 수강생들이 대다수 여성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참여도, 운영지속 가능성을 고려해 여성 수강생 위주의 프로그램을 계획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법령)지역 공동체 사업은 국가직접 일자리 사업이어서 지침 변경이 어려워 이행불가 사항임
	에월도서관 문화학교 운영	(예산)농어촌 지역은 수요가 적어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사업)농어촌 지역이어서 수요가 적어 다양한 강좌, 탄력 근무제를 필요로 하지 않음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운영	(사업)연호 프로그램 신청자 모집 홍보물을 회원 가정에 배포하고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신청을 받는 과정에서 신청자 대부분이 여성으로 남성 신청자가 저조하여 프로그램에 적용하기 힘든 부분이 있었음
	청소년건강육성 및 활동지원(청소년상담 복지지원센터운영)	(사업)업무 대비 인력부족하며, 전화 및 사이버상담 등 비대면 서비스 이용이 많았음
서귀포시	흔디드링 친환경체험 농장운영	(예산)홍보물 제작 예산이 따로 미책정 (사업)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사업으로 천지동 남성위원의 비율이 훨씬 높은 관계로 자동적으로 참여 여성 비율이 적음
	동부도서관운영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사업)다양한계층별, 연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특성성별에 치우치지 않게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기 때문에 별도의 선호도 조사를 할 필요성이 없었음
	서부도서관운영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사업)서부도서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대부분 초등학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많은데 참가자들의 대부분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신청하기 보다는 부모의 성향이나 참여 의지에 따라 참가 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음 - 따라서 프로그램의 직접적인 참가자들의 의견을 듣고 프로그램을 수립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며, 도서관의 특성상 독서프로그램을 주로 운영하는데 독서프로그램의 경우 남학생들의 신청이 여학생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면이 있음
	조간불리지역 수산물불제	(사업)조간불리시스템에 대량검증자료 현행화 지원

○ 이상의 미이행 사유에 따라 일부 과제 담당자들은 이행점검 시점에 성평등 조치사항을 수행하지 못한 문제점을 발견하고 다음과 같이 향후 성평등 조치사항을 제시함

〈표 3-24〉 사업에 대한 성평등 조치사항 미이행 사례의 향후 개선안

구분		미이행 사례의 향후 성평등 조치사항
제주도	주민봉사대원 운영	(사업)지속적으로 신규대원 모집 시마다 남성대원 가입독려 예정
	범도민 안전체험 한마당 운영	(사업)향후 이행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최근 몇 년간 평균 체험객의 샘플(예: 평균 체험객 10~20%) 자료를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음
	전문자원봉사자 양성 아카데미	(예산)사업내용 및 수행방식 등에서 교육 모집 시 남성 참가자 우선 선발 실시
	산림기능인 교육훈련	(예산) 숲 꾸기 설계, 감리 교육 등은 중앙부처(산림청)에서 제도개선 및 교육확대 필요
제주시	중소기업지원 (생활과학교실운영)	(사업)하반기부터는 신청서 상에 성별을 표시하는 란을 만들어 접수할 수 있도록 업무대행기관에 요청한 상태임
	장애인가족지원 센터 운영	(사업) 2018년 프로그램 운영시 부모자조모임을 부와 모로 분리하여 운영할 계획임. 프로그램 운영 시간도 아버지들이 프로그램에 장애인자녀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주말이나 저녁 등 운영 시간을 다양화할 계획
	청소년건강육성 및 활동지원(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	(사업)2018년 사업계획 및 프로그램 수립 시(성별 요구를 보다 세분화하여 조사 등) 반영하여 이행할 계획임
서귀포시	서부도서관운영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사업)보드게임 및 신문 등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남학생들의 흥미를 높이고자 함

○ 이상의 결과를 정리하면, ‘법령 관련’ 성평등 조치사항은 전체 성평등 조치사항 265건 중 15.8%를 차지하여 양적으로는 가장 적지만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률(일부이행+대체로이행+완전이행)은 62.9%로 높은 편임. 성평등 조치사항 내용 중 성별 요구도의 차이를 반영할 수 있는 ‘성별분리 통계 생산 및 활용’ (31.0%)과 ‘성별에 따른 요구도 및 만족도 조사’(21.4%)의 비중이 70.9%로 높음. 하지만 성평등 조치사항의 구체성(구체적+성인지적 구체적)은 59.3%로 사업과 예산 관련 성평등 조치사항보다 낮은 수준임

- ‘사업 관련’ 성평등 조치사항은 전체 성평등 조치사항의 67.6%를 차지하여 성별영향 분석평가를 통한 성평등 조치사항의 대부분이 이에 해당하며,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률 역시 75.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이는 성평등 조치사항의 구체성이 90.9%로 높게 적시된 것과 연관이 있다고 보임

- ‘예산 관련’ 성평등 조치사항은 양적으로 볼 때 전체 성평등 조치사항의 16.6%로 낮은 편이고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률 역시 54.3%로 낮지만, 성평등 조치사항의 구체성이 93.8%로 높음
- 이처럼 전체 성평등 조치사항 중 사업 관련 성평등 조치사항 내용이 구체적이고 이행률이 높다는 것은 법령이나 예산 성평등 조치사항이 관련 지침이나 예산 확보 등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에 비해 과제 담당자의 확고한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함

3. 공무원 인터뷰 결과

가. 면접조사 개요

- 인터뷰대상 33명 : 공무원 인터뷰는 이행사례에 대한 이행확인과 실행과정의 어려움 및 정책요구를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면접 참여자는 2016년 분석평가서에 작성한 성평등 조치사항을 완전히 이행한 과제담당 공무원 중심으로 진행하되 접수 과정에 특별히 어려움을 호소했던 과제담당 실무자 1명을 포함하여, 사업 분야별 현 과제담당자 28명과 성별영향분석평가 전·현직 기관 및 총괄담당 5명을 인터뷰
- 인터뷰 질문 내용 : 미리 제출한 이행점검표를 바탕으로 이행결과에 대한 재확인 부분과 실행과정의 어려움, 그리고 정책요구 등 세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됨
- 인터뷰 방식 : 공무원 업무 특성상 민감한 문제가 될 수 있기에 녹음을 하지 않고 전문 면담자(정책이행 모니터링단)가 손 기록을 통해 인터뷰 내용을 기록함
- 인터뷰 기간 : 2017년 11월 6일 ~ 20일

〈표 3-25〉 면접조사 개요

구분		내용
대상	선정기준	· 2016년 분석평가서에 작성한 성평등 조치사항을 완전 이행한 과제 담당자 중심으로 진행하되 사업 수행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실무자 등 선정 · 성별영향분석평가 전·현직 기관 담당자 및 총괄 담당자
	과제담당자 12개 분야 28명	·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교통 및 물류, 문화체육관광, 보건, 사회복지, 산업·통상·중소기업, 일반공공행정, 지역개발, 해양수산, 환경 등 12개 분야
	기관·총괄담당자 전·현직 5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귀포시
	합계 33명	
내 용		이행결과에 대한 재확인, 실행과정의 어려움, 정책요구 등
방 식		공무원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면접자 손 기록 방식으로 내용 기록
기 간		2017년 11월 6일 ~ 20일

○ 면접 참여자 기본사항은 다음과 같음

〈표 3-26〉 공무원 면접 참여자 기본 사항

사례	나이	성별	직급	근무경력	성별영향분석평가 업무경력
1	40대	남	7급	10-20년미만	1년미만
2	20대	남	8급이하	1년미만	1년미만
3	30대	여	7급	5-10년미만	1년미만
4	40대	남	7급	10-20년미만	1-3년미만
5	40대	여	7급	20년이상	1년미만
6	20대	남	8급이하	1-3년미만	1-3년미만
7	4대	여	7급	10-20년미만	1-3년미만
8	40대	남	8급이하	5-10년미만	1년미만
9	50대	여	6급	10-20년미만	1년미만
10	40대	여	6급	10-20년미만	1년미만
11	50대	여	6급	20년이상	1-3년미만
12	30대	여	8급이하	3-5년미만	1년미만
13	40대	남	6급	1-3년미만	1-3년미만
14	40대	여	7급	10-20년미만	1-3년미만
15	30대	남	농촌지도사	10-20년미만	1-3년미만
16	30대	여	7급	10-20년미만	1년미만
17	40대	남	7급	10-20년미만	1년미만
18	40대	여	6급	20년이상	1-3년미만
19	40대	여	청소년지도사	5-10년미만	1-3년미만
20	40대	여	7급	10-20년미만	1-3년미만
21	30대	여	7급	3-5년미만	1-3년미만
22	40대	여	6급	20년이상	1-3년미만
23	50대	여	7급	20년 이상	1년미만
24	50대	남	농촌지도사	10-20년미만	1년미만
25	30대	여	7급	5-10년미만	1년미만
26	40대	여	6급	10-20년미만	1-3년미만
27	40대	남	7급	10-20년미만	1년미만
28	40대	여	7급	3-5년미만	1년미만
29	30대	여	7급	10-20년미만	1년미만
30	20대	여	8급이하	1-3년미만	1-3년미만
31	30대	여	7급	5-10년미만	1-3년미만
32	40대	여	7급	5-10년미만	1-3년미만
33	20대	남	8급이하	3-5년미만	1-3년미만

○ 면접 참여자 공무원 연령대를 보면 20대 4명, 30대 8명, 40대 17명, 50대 4명으로 40대가 가장 많고, 성별로 보면 남성 11명, 여성 22명으로 여성이 남성의 2배 정도임.

여성공무원이 남성공무원보다 훨씬 많이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그림 3-11〉 연령별, 성별 공무원 면접자



○ 직급을 보면 7급 17명, 6급 7명, 8급이하 6명, 지도사 3명, 무응답 2명으로 7급이 가장 많고, 공무원 근무경력을 보면 1년 미만 1명, 1-3년미만 3명, 3-5년미만 4명, 5-10년미만 6명, 10-20년미만 13명, 20년이상 5명으로 골고루 분포 되어 있음. 그중 10년 이상 근무경력자가 18명(64.3%)임

〈그림 3-12〉 직급별, 근무경력별 공무원 면접자



○ 성별영향분석평가업무 경력을 보면 1년 미만이 16명, 1-3년 미만 17명으로 아직은 업무 경력이 매우 짧고, 1년 미만인 경우가 반 가까이가 될 정도로 업무 파악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추정됨

나. 과제담당 공무원의 성평등 조치사항 업무경험과 정책요구

1) 성별영향분석평가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 경험

□ 이행점검을 통한 인지 및 이행 효과 제고

- 이행점검표 작성제출을 통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업무 확인하고 인지하는 과정
 - 성별영향분석평가 업무 과제담당자들은 이행점검 공문 및 이행점검표 제출 서류를 받고서 본인 담당 사업이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라는 것을 인지하고 올해 정책개선 사항에 대해 확인하고 점검하는 과정이 되었음 대부분의 과제담당자가 ‘숙지하게 되었고’, ‘사업에 대한 정리가 되고’, ‘책임감이 부여’ 됨을 알 수 있음

“이행점검표를 작성하면서 분리통계를 내다보니 내 자신이 잘 정리된듯함. 사업에 대해 다시 한번 숙지가 되고 업무를 수행하는데 책임감이 좀 더 생김” 사례7

“이행점검표를 통해 그래도 사업 내용을 숙지하는 계기가 됨. 이행점검표를 작성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진 것 같음. 장애인 시설에 대한 고려, 배려 등 고민하게 하는 계기가 됨” 사례8

“작성하면서 다시 한번 사업을 전반적으로 정리하게 되고 숙지하게 됨. 이행점검이라는 절차가 부담은 있었지만 더 잘해내야겠다는 책임감이 생김” 사례20

○ 이행점검을 계기로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 동력 부여

- 본인이 담당하고 있는 사업이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과제인 것을 인지하고 있었을 지라도 성평등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행 점검표 작성 제출하는 과정에 성평등 조치사항대로 사업이 진행되었는지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고, 진행되지 못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성평등 조치사항 이라면 진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실질적으로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함

“우선 상반기의 경우 이전 담당자가 수행을 해서 돌봄형 프로그램 문화체험 프로그램 성별 분리통계는 모두 수행이 되었다. 다만 인수인계가 안 되었을 뿐이다. 완료되지 않은 한 가지 개선안인 성폭력예방교육의 경우는 본인이 진행을 했다. 그 당시 아동관련사업에 예방교육이 필요하다는 행정적 분위기가 있어 시행을 했고 결과적으로 개선안은 완전이행 되었다.” 사례12

“담당자가 오기 전에 분리통계 등은 일부 진행되어 있었고, 본인이 담당 후 성폭력 예방교육은 제주시 청소년 경찰학교를 통하여 진행했다. 개선안을 이행하기 위하여 복지관과 접촉하는 등 여러 가지로 노력했다.” 사례6

○ 이행점검 인터뷰를 통한 컨설팅 효과

- 이행점검 인터뷰를 하면서 지난 해 작성했던 분석평가서의 성평등 조치사항에 대한 확인과 올해 이행점검 증빙서류 제출에 대한 재확인 등을 통해 발견되는 문제점에 대한 컨설팅 효과가 있었음. 예를 들어 수탁사업의 경우 과업지시서 혹은 사업 협약서에 성별, 연령별 분리통계, 만족도 조사 등 사항을 넣을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하고, 내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진행이 됨

“(오늘 이렇게 얘기 나누니)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작성했던 서류들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기대하게 되고, 안전성에 대한 안목이 생겼다. 향후 성별을 고려하고 소외된 계층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더 기획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 공연을 관람한 관람객들에게 만족도 설문을 해보는 것은 물론, 가족 동반 관람객들에게도 어떤 편의시설들을 제공하면 좋을 까 고민하게 되는 것도 향후 나의 인식이 개선되어지는 좋은 예인 것 같다.” 사례28

“(얘기한 것처럼) 어린이 놀이시설 주변은 외부에 노출되기 쉽도록 나뭇가지를 정비하고, 가로 등등을 정비하여 개선하여 반영할 것이다. 항상 매해마다 점검하는 편의시설과 놀이시설들이지만 소외계층이 없도록 내년에는 더욱더 신경 쓸 예정이다 …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불편사항을 접수하여 통계를 내보고 주민자치센터 등과 연결하여 설문조사 해볼 계획도 있다.” 사례27

○ 이행점검 인터뷰를 통해 성인지 감수성이 향상되고 성인지 관점의 파급 효과 발견

- 인터뷰 대상이 주로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 완성도가 높은 과제담당자를 만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에 대한 이해와 실천 의지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향후 다른 사업을 담당하더라도 성인지적 관점으로 고려하고 정책을 이행할 의지를 발견할 수 있음

“처음에는 단어도 생소하고 입에 익숙지 않았지만 차츰 그 부분은 나아진 것 같다. 그리고 인식 개선에도 도움이 되었다. 그래서 다른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도 성별영향에 대한 관점으로 보려는 부분도 생겼다.” 사례33

“사업계획서를 쓸 때 기본적인 것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별에 대한 것을 분리해야 한다는

것만 인식해도 그것만으로도 제도를 이해하는 거 아닌가. 참여 연령대가 궁금해졌다. 통계 자체가 분석서를 쓰는 기반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례11

“교육을 받고 나서 그리고 사업을 수행하면서 다른 사업에 대입하여 바라보는 관점이 생겼다. 장애인, 노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을 하게 되었다.” 사례13

□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 과정의 어려움

○ 성별분리통계에 대한 이분법적인 사고와 과제선정에 대한 거부감

- 성별분리통계가 남녀를 구분하고 굳이 차별화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본인이 담당하는 사업이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음. 남녀비율을 50대 50으로 목표하는 것은 아닌 것에 대해서는 개념적으로 이해하지만 사업대상과 사업수혜자가 남녀로 구분하여 기입하기에 남녀 이분법적인 구분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문제제기가 있음 (사례31)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업을 수행하다보니 어찌 보면 당연히 남녀의 비율이 차이가 난다. 그런데 이를 성별분리통계를 내어 분석하고 원인격차를 헤아려 보려하는 것이 무리 아닌가 하는 그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힘들었다. 즉 ‘내 과제가 왜 선정된 것인지?’라는 의문이 든 것이 사실이다.” 사례33

“내 과제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은 지울 수 없었음. 컨설팅은 성별 비율을 맞추는데 치중하는 경향으로 느껴졌다. 아직 우리가 완전 이해를 못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수치와 현실에 괴리감이 느껴지는 것은 사실이다.” 사례 29

“우선, 개인적으로는 남녀의 성비를 나누는 것 자체가 불평등하고 모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내 업무가 왜 과제에 선정이 되었을까도 생각했다.” 사례11

○ 잦은 인사이동과 인수인계가 원활하지 않는 점

- 면접했던 공무원 중 반 정도는 인수인계를 받지 못했고, 설령 받더라도 구체적인 업무내용에 대해 전달 받지 못했고, 교육 및 컨설팅 참가 신청을 하라는 공문을 받고서야 본 사업이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라는 것을 알게 되고 정책개선 이행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점검표를 받고서야 다시 확인하게 되어 정책개선을 이행하는데 큰 어려움으로 작동하고 있음.

“인수인계시 그런 부분을 알기는 어렵고 인수인계 양식에도 그런 것이 없다. 일상의 사업이 많아서 성별영향분석평가까지 알기 어렵다.” 사례12

“인사이동이 있으면서 전 담당자의 인수인계 부분이 다소 어려웠다” 사례2

“인사이동으로 인수인계 부분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받게 됨으로 해서 부담이 되었다. 체계적인 인수인계를 받는다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고, 그저 해야 되는 일 중 하나로 인식만 되었을 뿐이다.” 사례28

○ 성별격차 해소하기 위한 업무자체의 어려움

- 성별영향분석평가 업무에 대해 인지하고 정책개선 사항을 이행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사회문화적 여건 및 사업환경 여건 등으로 업무자체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음. 예를 들어 수혜도가 낮은 남성(혹은 여성)의 비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기 어려운 점 등임

“이주민 여성들이 안정된 정착이 주목표인 우리 사업에서는 다문화 가정의 남편 분들을 참여시키는 것 자체가 어려움이 있다. 예를 들면, 가정폭력을 없애고 개선하기 위한 프로그램에 부부가 같이 참여하여야 하는데 남편들은 꺼리는 경향이 있다. 이 부분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고민 중인데 쉽지 않다.” 사례28

“치매라는 것이 여성의 비율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여성 수혜자의 비율이 높을 수 밖에 없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남성 수혜의 비율을 높이는 것이 업무 부담으로 다가온다.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 부분에서 질적인 성과와 양적인 성과에 대한 괴리감을 느낀다... 목표치에 도달하는 것이 상당한 압박이다. 목표치는 내려갈 수 없고, 어찌되었건 올라가야만 하는 상황이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사례29

○ 성별영향분석평가 분석의 어려움

- 사업의 성별요구도 차이에 대한 분석, 사업대상과 사업수혜자 통계 및 성별격차 원인 분석에 대한 이해와 수행 등 기본 분석서 작성 과정의 어려움을 토로함

“성별요구차이나 성별특성을 반영하는 것이 힘들었다. 대상자의 조건이 있어 대상자가 거의 결정되어 있고 대상자를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는데 그런 차원에서 성별요구도의 통계를 제시하는 것이 어려워 통계자료에 더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었으면 한다. 전체 사업대상자와 수혜자를 구분하는 것이 힘들었다. 통계를 낼 때 주민인구와 경제활동인구를 구분해서 쓰는 것도 힘들었고, 성별 비율을 맞추는 것도 제주도의 특성을 볼 때 힘든 것 같다.” 사례7

“용어자체가 어려웠다. 그리고 이해하기도 힘들었고, 일을 진행할 때 어디에다 기준을 두어야 할지도 막막했다. 대상자와 수혜자... 누가 혜택을 보는지... 내가 생각할 때는 불특정다수가 대상자이고 수혜자인데 뭘 기준으로 하라는 건지 기준을 잡기도 너무나 어렵게 느껴졌다.” 사례8

○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일정 및 추진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어려움

- 전체적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예산에 대한 인지와 이해가 있으나, 이것의 추진일정 및 추진체계에 대해 이해가 미흡하여 상당한 혼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일 년에 교육, 컨설팅, 분석서 작성 및 제출, 이행점검 이런 일정과 추진체계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도가 매우 낮아 업무 수행에 어려움 있음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을 쓰는 방법을 모르겠다. 두 개가 구분되지도 않는다. 성별영향분석평가서를 써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성인지예산서를 또 쓰고 이후에 또 이행점검이 있고, 성인지예산은 목표치를 수치로 써야 하니까 더 어렵다. 두 가지가 혼동되고 성별영향분석평가도 컨설팅과 이행점검이 모두 혼동되었다. 원래는 분석평가서를 내고 컨설팅을 받으면 끝나는 것인 줄 알았는데 컨설팅 이후 평가서를 수정해야 하는 줄은 몰랐다. 또 이행점검이라고 해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니까 번거롭다.” 사례5

□ 성평등 조치사항을 잘 이행할 수 있었던 요점

○ 부서장의 관심도와 책임감

- 인터뷰 결과 인수인계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인 것을 안 경우는 부서장이 ‘전체를 총괄하면서 챙기기 때문’이라는 점을 알 수 있음. 부서장이 인지하고 전달하기 때문에 과제담당자도 ‘협력해서 해 나갈 수’ 있었다는 점(사례 24, 사례 16)

○ 사업 담당의 지속성

- 이번 인터뷰 결과 3년째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특별직의 경우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정책개선 사항에 대해 처음부터 추진할 수 있기에 이행 효과가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음. 본인이 맡은 10개 사업 중 하나만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사업이지만 기타 사업에도 모두 성인지적 관점을 갖고 기획 실행하고 있으며 이런 관점이 스스로에게 내면화되었다고 느끼고 있음. 이런 내면화가 사업 전체의 만족도를 끌어올렸고 개인적인 삶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함

“지난해 분석평가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업무를 담당해서 알고 있는 내용들이고 인수인계로 인한 힘든 점이 없었다. 연령대별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의뢰하여 진행했다. 연령별로 분석 가능했다. 법령에는 2017년 자원봉사 활성화 시책 추진사업에 대한 보조금 교부 결정 및 교부 시 사업 참여자 성별 현황자료를 포함하여 실적보고 제출 요청했다. 2017년부터는 성별분리 통계가 구축되었다.” 사례7

“이제야 조금은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에 대한 개념이 좀 생긴다. 지난해 분석서 작성을 직접 했고, 올해 이행점검표까지 작성했기 때문인 것 같다.” 사례28

“늘 해오던 것이라 딱히 어려움은 없다. 지역과 연계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협조도 잘 이루어지고 많이 도와줘서 잘하고 있다.” 사례20

○ 컨설팅과 성인지 교육을 받는 것

- 면접자 대부분이 컨설팅 혹은 교육 혹은 컨설팅과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고 실제로 도움이 되었다고 기술함.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 성인지적 관점과 형식적 평등이 아닌 여러 가지의 개선안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됨. 특히 대면컨설팅은 직접적 피드백이 가능하여 개선안을 도출하고 사업 진행하는데 도움이 되었음을 발견할 수 있음

“컨설팅은 필요하고 대면이 더 이해가 쉬웠다. 이전에 다른 컨설팅에서는 전문가 한명이 설명을 하면 여러명이 듣고 있다가 질문정도 할 수 있었는데, 성별컨설팅의 경우는 1:1로 개별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니 좋았고 평가서 쓰는 데에 도움이 되었다” 사례5

“교육을 받은 후 제도를 이해하고자 노력한 것은 물론이고, 성별에 대한 그리고 예산의 쓰임과 분리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다. 교육 후 장애인 관련 사업이나, 아동 그리고 노인대상 사업은 단순 수치보다는 질적인 것이 더 의미가 있는 경우가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다른 사업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있고, 향후 다른 부서로 가더라도 성별/성인지 관점으로 보는 경우가 생길 것 같다. 그래서 성평등 조치사항도 발굴하면서 성과 관리하는데 노력하게 되지 않을까 한다.” 사례29

2) 과제담당 공무원의 정책 요구

□ 부서평가에 반영 및 복지점수 인정 등 인센티브 필요.

-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이익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서평가에 반영하여 부서장의 관심도와 책임감을 부여 할 수 있어 성별영향분석평가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음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에게 인센티브제를 적용하면 좋겠다. 실무자는 어렵고 힘들다. 그래도 본인 업무라서 열심히 해내려 한다.”사례11

“향후 성과에 대한 보상체계를 마련해 주었으면 한다. 그리고 성별 프로그램이 잘 된 곳은 견학도 시켜주고 탐방도 시켜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사례18

-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이행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부서평가에 반영하여 우수 부서로 평가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면 부서장의 정책 의지를 유도할 수 있음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의 경우 상시 학습으로 될 수 있거나 집합교육이라면 일반교육에 넣거나 사회복지점수 이수를 할 수 있다면 호응이 클 것 같다”사례5

“중요한 것은 이런 과제를 담당하는 담당자들에게 보상체계가 있었으면 좋겠다. 개인 평가에 반영이 된다는거. 교육을 받는 시간도 공무원 평가 점수에 반영이 되었으면 한다. 이런 사항을 적극 반영해주길 바란다. 신경은 쓰이는데... 중요도는 크지 않은 사업으로 전락해버리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사례29

□ 사업계획 단계부터 컨설팅 필요

- 사업의 경우 중간에 컨설팅을 받고 바로 예산반영 등이 어려움으로 사업 계획단계에 컨설팅이 접목되어 사업의 성평등 효과를 높이도록 하는 것이 필요(사례25)
- 공무원의 많은 사업이 수탁·위탁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과업지시서와 업무협약서 등에 성별, 연령별 분리통계, 성별에 따른 만족도 조사, 성평등 프로그램 등을 명시 하도록 컨설팅을 받는 것이 필요(사례24)
- 처음부터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염두에 두는 것
 - 사례 26의 경우 미리부터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염두에 두고 처음부터 세팅되었던 사업 이라서 이행점검 자료를 따로 만들지 않았고 기존의 운영안을 그대로 제출하였고 그것으로 충분히 이행점검자료가 되었음. 담당 공무원은 “성별영향분석평가가 다들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처음부터 기획되면 어렵지 않다. 그런 부분이 좀 더 활성화 되면 좋겠다”라고 말함

□ 경력 있는 공무원이 담당할 필요

- 공무원 근무경력 10년 이상인 공무원의 경우 개선안을 반영하는데 생각의 폭이 넓고

어떤 방식으로 반영해야 할지를 알 수 있고 추진력이 더 있고 영향력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음. (사례26)

- 그러나 신입 공무원의 경우 성별영향분석평가 업무에 대한 거부감이 덜 한 것을 발견할 수 있음. 공무원 시험공부에 성인지예산을 접한 경험이 있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어 거부심리가 없지만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부서 책임자 혹은 고참 공무원과 협업으로 담당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 함

□ 사례 및 관련 통계 정보 공유 필요

- 도내·외 비슷한 영역의 우수사례를 공유하여 형식적인 남녀수혜자 비율이 목표가 아니라 적절한 성별격차원인 분석을 기반으로 한 수혜자 중심의 사업 목표라는 것을 공유할 필요 있음

“기관별 샘플이 있으면 그런 내용을 공유하면 좋겠다. 서로 소통구간도 만들어주고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도 해보고...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발굴하여 보내주었으면 좋겠다.”사례18

“다른 지역의 사례들이 공유되고 좋은 프로그램들은 같이 벤치마킹하면서 만들어간다면 도서관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을 것 같다.”사례20

“사례발굴에 대한 정보제공이 많으면 좋을 것 같다. 방법론에 대한 고민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사례29

- 관련 통계 정보 제공이 필요함

- 인터뷰 결과 많은 공무원들이 전반적으로 관점을 가지고 사업수행은 가능하고 개선안과 결과를 내는 것도 가능한데 관련 통계 자료를 찾기 어려워하고 원인을 분석하고 명시적으로 보고서로 작성하는 것을 어려워하기에 관련 정보 제공이 필요함

“정보 등을 찾을 때 조금 어려워서 그런 부분을 좀 컨설팅 해주면 좋겠다. 사례 발굴도 된다면 같이 공유하면 좋을 것 같다. 그러다 보면 좋은 아이디어도 얻을 수 있고, 대안 등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사례2

“분석 시에도 남녀경제활동 통계라든지 기타 등 통계를 참고할 만한 정보를 주고, 어디에서 참고할 수 있는지 팁을 준다면 도움이 될 것 같다. 또 하나, 사례들도 같이 공유하면 좋겠다. 서귀포 사례도 보고 싶다. 다른 도의 사례들이 있다면 더욱 도움이 될 것 같다.”사례7

“통계를 잡는 기준이 어려웠기 때문에 이런 교육들을 통해 다각도로 분리통계를 낼 수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고, 협조요청을 해야 할 때는 더군다나 아주 협조적으로 바뀌어 서로 도와 줄 수 있을 것 같다. 사례들이 많이 공유되었으면 한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잘 된 선진국 사례가 있다면 벤치마킹하고 배우고 싶다. 그런 내용들에 대한 정보제공도 좋다” 사례27

□ 성별영향분석평가 인지 및 포괄적 평가 위한 시스템 보완

- GIA시스템에 입력하는 내용만으로는 사업내용 전체를 말 할 수 없고 성별격차분석 조치사항 항목별 이행점검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니 포괄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시스템 내에 첨부파일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필요함 (사례4)

□ 성별영향분석평가 인지 및 행정전반에 성인지적 관점이 반영되어야

-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인지(認知) 중요
 - 인사이드가 있는 시기에 공문으로 해당 사업이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것을 알리는 등 인지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 성인지예산 사업으로 표기하여 인지를 높이는 가능성 높음

“보고서 작성이나 개선안보다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함. 사업은 1년이고 연초 인사이드가 있고 2월 정도에 교육이나 아니면 공문이라도 보내주면 이 사업이 대상사업인 것을 인지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 사례12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사업 백퍼센트 성인지예산 사업으로 지정되기에 성인지예산으로 의무적으로 표시하여 처음부터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사업임을 인지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 사례17

- 행정전반에 성인지적 관점이 반영되고 분위기가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정책개선 이행 효과가 실현될 수 있음. 잦은 인사이드 때문에 계획이 수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제담당자가 개별적으로 관여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체적인 분위기가 성인지적으로 된다면 정책개선사항 이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 제공 필요

- 관리급 공무원, 전체 공무원 교육 받을 필요

“과제담당자인 우리보다 그 위에(관리급) 관리자들과 그리고 도의회 의원들이 성별영향과 성인

지에 대한 교육을 받고 인식이 좀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생겼다.” 사례29

“성인지 교육은 예산 담당자에게만 하지 말고, 전 공무원에게 교육 시켜주었으면 한다. 아직도 공무원들에게 인식이 덜 되기도 한 것 같고 이제는 공무원들도 바뀌어 이러한 내용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할 것 같다. 이 교육은 모든 공무원들이 다 같이 들어야 한다고 생각되었다. 서로 협조하면서 일을 해 나가려면 공무원 전반에 걸친 인식의 제고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다.” 사례27

○ 센터운영 등 큰 규모의 위탁사업의 경우 사업수행자 컨설팅 제공 필요

“사업 수행자인 oo센터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모르고 개선안도 모르고 있다. 전달을 받은 적도 없는데 이런 이행점검을 통해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업 수행자가 직접적으로 컨설팅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하고 그런 방법으로 방문컨설팅 등이 필요.” 사례9

다. 기관·총괄 담당 공무원의 업무경험과 정책요구

1) 기관·총괄 담당자로서의 역할과 어려움

□ 과제담당자들의 선정기준 관련 문의에 답변 어려움

- 기관·총괄 담당자들은 특히 과제 담당자들의 ‘민원에 시달려’ 업무 스트레스를 과도하게 받고 있고, 담당 업무수행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임.

“우선 가장 힘든 점은 본인의 사업이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업무가 되면 그렇게 불만을 표시하고 대상과제에서 빼달라고 계속 전화하고 항의하고 그런다. 빠질 수 없는 업무라고 말을 해도 거의 스톱킹에 가까울 만큼 전화하고 그러는 분이 있다.” 사례10

“도 보다는 직접 과제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제 담당자 분들을 상대하는 것이 더 어려웠다. 다른 과에서 못하겠다고 연락이 올 때, 그리고 다른 과의 계장님이 전화가 와서 빼주라고 할 때, 주무부서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대응을 안 해주시는 경우도 업무를 진행하는데 힘든 부분이었다. 건축/건설 분야 그리고 장애인 관련 업무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불만을 표시했다” 사례21

□ 성인지교육 참여를 동원, 수합 등 해야 하는 역할과 어려움

- 교육 일정이 급하게 결정되어 일반 공무원들의 참여 독려 어려움

“교육이나 컨설팅의 경우도 오라고 해도 오지 않고 공문 한번 보내서는 오지도 않는다. 공문을

서너번씩 보내고 전화하고 교육의 경우는 대상자를 꼭 찍어서 오라고 해야 올까말까이다.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제대로 홍보되어 있지 않고 아직도 환영하는 업무라고는 볼 수 없어서 진행도 어려움이 많다.” 사례10

“기간 내에 수합하는 것도 매우 힘들다. 업무과중이 되고 있고, 내 업무 중 차지하는 비중은 대략 25%정도가 되고 있다. 인원을 총원하거나 담당자가 확정되어 픽스되었으면 좋겠다.” 사례3

“도 단위로 평가가 되다보니 너무 부담이 되었다. 교육도 작년 15% 대비 25%로 올라가서 너무 부담이 되었다. 우리 부서는 힘도 없는 부서이고... 평가도 부담되고 교육도 해야 하고. 하반기에만 2번의 교육... 동원도 힘들고... 이래저래 심적으로도 많이 힘들다. 강사섭외문제도 힘들었던 부분이다. 도대체 어디서 협조를 받아야 하나... 너무 난감하고... 속이 상했다. 여가부(여성가족부)에 문의도 해보고... 나름 노력은 하는데 순조롭지 않다” 사례23

□ 성별영향분석평가 최종 검토의견 통보자로서의 역할과 어려움

- 성인지적 감수성 능력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업무 수행 능력이 충분치 않는 단계에 최종검토의견을 쓰는 것이 상당한 부담감. 이전에는 센터에서 도와주었지만, 올해부터 기관담당자가 직접 해야 해서 어려움(사례 30)
- 따라서 기관담당자로서의 역량강화가 필요. 컨설팅 워크샵에도 참여하고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자 했지만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응답함

□ 부서 담당의 협조 요청이 어려움

“부서 내 담당(계장님이나 과장님)은 하라고만 하지 적극적인 지원은 잘되지 않는 부분들이 어려웠다. 즉 협력적인 부분들이 없다고나 할까..” 사례21

“부서 담당(계장님)께 협조를 부탁했으나 소통이 원활해서 딱딱 지원되는 부분이 아니다보니 아주 힘들다.” 사례23

2) 기관·총괄 담당의 정책 요구

□ 인센티브, 가점, 독려 필요

- 우수사례에 인센티브를 주거나 특히 부서평가에 반영을 하는 등 전체적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로 인식하여 질적으로 더 열심히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필요

“공무원의 경우 불필요하게 업무가 추가되었다고 느끼니 이 업무를 하는 경우 가점이 주어 지거나 하는 방식으로 긍정적인 업무로 인식하게끔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승진 가점이라든지 교육을 일반교육 받은 걸로 한다든지 해서 이 업무를 맡는 것이 번거롭고 귀찮은 것이 아닐 수 있게 시스템이 되면 좋겠다.” 사례10

“공무원들 기관담당자가 못한다고만 하지 말고 잘한다고 의욕을 높여줄 필요가 있다. 여성 가족과는 워낙에 힘든 과인데 다들 못한다고 하면 의지가 생기지 않는다.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북돋아 주면 더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사례 10

“그런데 정작 바쁘다는 핑계로 교육 참여율도 저조하고... 힘들다. 따라서 뭔가 보상체계가 있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사례3

□ 성별영향분석평가 이름 자체가 갖고 있는 부정적 인식 개선 필요

“성별영향분석평가라는 이름이, 성별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니 남녀 성별로 세상을 인식하는 사업으로 느껴진다. 그래서 수혜자 비율을 맞출 수 없다. 수혜자가 남녀로 분리될 수 없는 사업 인데 왜 대상사업으로 이 사업을 넣었느냐 라는 말들을 하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이 이름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성별이라는 말은 아무래도 거부감이 있다. 성인지 라는 말을 사용해서 성인 지분석평가라든가 라는 방식으로 이름이 바뀐다면 거부감이나 사업진행에 있어서 더 나은 방향성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차원에서 평가서의 양식도 남녀이분법적으로 되어 있어 문제이다. 수혜자를 남녀로 나누어서 구분하는 방식이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사례10

□ 기본 DB 제공 필요

“기본 DB를 제공했으면 한다. 그 요구도(성별요구도 차이, 성별격차 원인을 말함)를 쓰는 것이 아주 어렵다. 사업진행은 하고 있는 거고 개선안도 컨설팅을 받으면 이해가 되는데 요구도나 그런 것을 객관적인 수치를 가지고 해야 하니 쓰기 어렵다. 컨설턴트의 경우도 사업을 잘 모르니 수치를 제공하기 어렵고, 그 부분의 DB를 제공하는 사이트나 그런 것이 있었으면 한다” 사례10

□ 전체 공무원, 특히 건축, 건설 등 분야 공무원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 필요

“전체 공무원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전체적으로 감수성이 높아지면 기관 담당자가 더 수월해질 것이다.” 사례10

“성별영향분석이나 성인지에 대한 인식이 더 필요한 곳이 있다고 보는 영역은 사실 건축, 건설 그리고 디자인분야라고 생각이 된다. 예를 들면 화장실만 해도 편의시설이나 장애인 등 약자들을 고려하고, 아동 그리고 노인들을 고려하여 설계하고 디자인하여 만들어 준다면 얼마나 의미 있고 좋은 일인가.” 사례3

□ 인재개발원 교육에 통합시킬 필요

“평가서 작성과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대한 컨설팅이 잘 이루어지면 좋겠다. 인재개발원 교육을 집합교육의 시간으로 넣어주면 그나마 부담감을 덜 느끼고 동원이 잘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사례3

“인재개발원의 교육을 시수로 인정해주면 좋겠다. 그러면 부담도 덜 될 것이다. 과제수를 적게 하고 질적인 부분에 대한 평가를 높여주면 좋겠다. 교육지원부분도 필요한 것 같고, 컨설팅에 대한 지원도 더 필요한 것 같다. 교육지원은 컨설턴트들의 컨설팅 지원뿐만 아니라 전문강사들을 양성하여 교육하는데 애로사항이 생기지 않길 바란다.” 사례21

라. 전문가의 정책요구

- 성별영향분석평가 이행점검 및 정책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도내·외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성인지정책 전문가 7명의 서면지문을 통해 의견을 수렴함. 전문가는 전·현직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턴트로 활동을 하고 있는 전문가 4명, 전·현직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를 맡고 있는 전문가 3명으로 구성함

□ 현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의 문제점

- 가장 큰 문제는 이 제도가 법적인 근거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보고서 제출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는 점
- 분석평가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담당자가 자주 교체되어 제도 추진의 실효성이 위협 받는다는 점
- 분석평가법이 있기는 하나 이를 시행하지 않았을 때, 혹은 불성실하게 시행했을 때의 불이익이 없고 이를 잘 시행했을 때의 인센티브도 충분하지 않다는 점(경기도는 올해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를 개정하여 경기도 자체적으로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포상금을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중)
- 분석평가를 통해 정책개선이 이루어진 사례들이 도민/주민들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
- 공무원들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 등 성인지 정책에 대한 낮은 인식 및 수용성
-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성평등 목표를 통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성평등 목표와 별개의 분석사업으로 진행되는 한계가 있음

- 성별분리통계를 활용한 성별 격차 등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어 여성 수혜율이 높은 도서관 또는 문화·교육 프로그램 등은 남성 참여율을 위한 고민만으로 천착되는 현상 발생
- 컨설턴트의 젠더감수성 및 성인지정책에 대한 이해정도에 대한 격차 발생

□ 이행점검의 필요성

- 성별영향분석평가 이행점검은 제도의 실질적인 환류를 위한 필수 절차
- 체계적인 이행점검 절차를 만들어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
-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이행점검 관련 항목

제11조 (정책 등 개선 권고 및 의견 표명)

-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 결과 성 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법령, 정책, 사업(이하 "정책 등"이라 한다)의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다만, 개선 권고를 하는 경우 그 개선의 조치기한을 정하여 권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2017.3.21] [[시행일 2017.9.22]]

- ② 제1항에 따라 개선 권고 또는 의견 표명을 받은 기관의 장은 30일 이내에 그 개선 계획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권고 및 의견 표명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2017.3.21]

[[시행일 2017.9.22]]

□ 효과적인 이행점검 방법

- 공무원이 주체가 되는 이행점검. 제주도청에서 연구원 혹은 성별센터에 용역과제 형식으로 의뢰를 하고 이행실적 취합 시 도청에서 공문을 발송하여주는 방식. 이행 여부와 함께 이행 관련 증빙자료를 공문으로 제출받는 방식임. 취합된 자료를 분석하고 보고서를 쓰는 것은 연구원이 하지만 이행점검의 주체는 도가 되는 것
- 이행점검의 일차적 주체는 공무원이 되고 현장 점검에 대해서는 시민모니터단을 참여시키는 방법. 이행점검에서 공무원과 모니터단의 역할과 기능을 구분하고, 전문가는 각각의 집단에 개입할 것

□ 공무원에 대한 컨설팅과 교육 지원

- 컨설팅과 교육의 유기적인 연계. 컨설턴트들 중 강의역량과 자질을 갖춘 분들을 전문강사로 양성하여 컨설팅과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센터는 컨설팅과 교육이 유기적으로 잘 진행되도록 컨설턴트의 활동을 지원하는 등 컨설팅 방향과 내용 등을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역할 담당
- 센터는 공무원, 컨설턴트, 일반시민 대상 각 집단별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 개발 또는 교육 매뉴얼 개발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급 필요
- 성인지 정책, 성인지 예산,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성인지 정책을 알 수 있는 대대적인 시민 대상 홍보, 교육 필요
-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예산, 성인지적 개선안 등을 '계획단계'에서부터 컨설팅이 시작되고, 세부사업 수준이 아닌 '단위사업' 혹은 사업 운영 전반을 고려한 컨설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제 선정과 운영이 이루어져야 함
- 여성친화도시와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을 묶어서 제시할 수 있는 교육 실시 필요
- 고위 및 중간 관리자 대상의 교육 진행 필요

□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 효과 제고 방안

- 추진과정의 제도적 측면
 - 정책개선 이행점검 혹은 이행 모니터링을 해마다 실시 필요
 - 지자체 기관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와 업무 연속성 확보를 위해 전문계약직을 채용하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차선택으로 기관담당 업무는 적어도 3년 이상 한 사람이 담당하게 하고 그 후 본인이 희망하는 부서배치 혹은 승진 가점 부여 등의 보상을 주는 제도 마련
 - 우수사례 담당 공무원 및 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공무원과 주민 대상으로 정책개선 우수사례에 대한 홍보 적극 추진
- 구체적 추진 방향 및 내용
 - 성평등 기본 목표(제주도의 성평등 지수를 고려한)를 중심으로 모든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진행할 필요 있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 선정에 집중할 필요 있음. 제도 초기단계이므로 성별

격차가 큰 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심층분석하여 실질적 개선안을 도출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성인지통계 생산이 모든 사업, 정책에 보편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해마다 핵심 분야를 선정해서(예를 들어 2018년 집중 과제 10선) 그 분야만큼은 집중적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교육을 하고, 강사나 컨설턴트도 관련 분야 업무나 사업에 대해 사전의 이해를 돕기 위한 쌍방향 워크숍이 필요. 컨설턴트의 성인지적 통합 역량강화 필요

○ 주민참여 방식 고민 필요

- 마을 단위에서 성인지 교육과 더불어 마을 과제를 가지고 동네 주민들과 함께 성별영향 분석평가 컨설팅 해 본 후 전문가가 한 컨설팅과 비교, 이행 점검 과정에서도 시민들이 컨설팅 한 것을 가지고 이행 점검단에 합류하여 같이 점검 하는 방향 모색

○ 성별영향분석평가서 작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성인지교육은 전체 공무원 대상으로 하더라도 업무와 사업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 특히 성별영향분석평가서를 작성할 때 마치 여성과 남성의 수혜율을 기계적으로 작성되지 않기 위해서 실습교육보다 워크숍으로 직접 성별영향분석평가서를 작성하는 형태 필요
- 우수사례로 선정되면 사례발표를 하게하고, 공무원 스스로 겪었던 문제와 어려움을 보다 구체화하여 워크숍 형식의 교육 진행 필요

○ 공무원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는 방법 필요

- 각 부서 주무 팀장 정도라도 참여하는 대상과제 선정 실무협의체 구성·운영하여 대상 과제 선정에 대한 저항감 감소 기대
- 각 실국 부서장의 관심과 책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부서장의 성과목표 작성 시 해당 부서의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과제의 양적 증가 및 개선과제 반영 여부 점검 등 질적 수준 점검 지표 등을 포함시키는 방법. 그러나 부서장의 성과목표로 평가하는 것은 매우 예민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부서(팀)평가 점수와 연동하도록 하는 방법
- 이행점검 후,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 패널티를 주는 등 강력한 제재 필요. 반영이 어려운 이유(반영 못한 이유)나 향후 점차적으로 반영할 계획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장(도지사, 시장, 군수)에게 제출토록 하는 등 강제성을 가져야 함

○ 내년 지방선거 도지사 공약으로 분석평가책임관 별도 조직 및 NGO 분석평가책임관 등 전문 인력 확보 필요

②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2.3, 2017.3.21] [[시행일 2017.9.22]]

1. 대상 정책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분석평가의 실시 및 분석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분석평가결과의 정책,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반영에 관한 사항
4.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개선 계획의 수립·시행·제출, 개선 조치결과의 제출에 관한 사항
5. 제15조에 따른 분석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
6. 분석평가 업무의 종합·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소속 기관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소결

- 본 연구에서는 2016년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실시한 법령, 계획,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성평등 조치사항이 실제 2017년에 어떻게 이행되었는지를 담당 공무원이 제출한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점검표와 그 실적 등을 통해 분석함
-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현황 분석 방법은 2016년 제주여성가족연구원에서 수행한 강경숙 외(2016)의 분석틀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성인지 정책 전문가 자문회의, 도내·외 전문가 FGI, 손영숙 외(2015)의 분석틀, 2016년 여성가족부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 등을 통해 분석 방향과 분석 지표를 구성함
 - 이행 수준은 과제별 개선이행을 체크하는 방식이 아니라 성평등 조치사항 관련 분야별(법령 관련/예산 관련/사업 관련) 각 단계에 해당하는 이행 수준을 체크하게 하여 성평등 조치사항 분야별로 성평등 조치사항 건수와 비율, 성평등 조치사항 내용별 건수와 비율로 제시함
- 특히, 본 연구에서는 사업뿐 아니라 법령, 계획에 대해서도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현황을 분석함. 법령의 경우는 2016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이후 공포된 자치법규 조항을 확인하여 성평등 조치사항 내용 반영 여부를 확인하였고, 계획 과제와 사업 과제의 경우는 2016년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개선의견을 제시거나 수용한 과제 중에서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점검표를 제출한 과제 중심으로 이행현황을 분석함

- 법령, 계획, 사업의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현황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2016년 제주특별자치도의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 사례를 제시하고 개정 조례 3개, 사업 6개의 우수사례(안)을 최종 선정함
- 법령의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 우수사례(안)는 여성가족부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의 법령 지표 중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된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조례, 위원회 구성 시 성 평등한 자격 기준을 제시한 조례를 선정함. 사업의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 우수사례(안)는 2015년 사업에 대한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 사례는 제외하고 분석평가서를 충실히 작성하고 성평등 조치사항을 완전 이행한 사업, 성인지적·구체적으로 이행한 사업, 성별 수혜자 규모 혹은 예산 규모, 지역사회 협력, 유사 사업에 미친 영향 등 파급 효과가 있는 사업 중심으로 선정함
- 공무원 대상 인터뷰는 성평등 조치사항을 완전 이행한 담당자, 과제 수행에 어려움이 많은 실무자, 성별영향분석평가 총괄 및 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제도의 정책효과 제고 방안을 모색할 목적으로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경험과 정책 요구를 수렴함

가. 법령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현황

-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현황 분석 대상은 2016년에 실시된 제주특별자치도 제·개정 조례 181개 중에서 ‘자체개선’ 및 ‘개선의견’ 등 개선의견이 있는 39개 제·개정 조례임
- 법령의 성평등 조치사항 반영률은 97.4%(38개)이며 개정 조례 반영률이 96.8%로 제정 조례 반영률 100.0%보다 조금 낮음. 이는 경기도 법령에 대한 정책개선 이행현황을 분석한 손영숙 외(2015) 연구 결과와 동일한 경향임
- 분석지표별 이행현황을 보면, 반영된 이행 건수가 가장 많은 지표는 ‘성별통계 생산’(20건)이고 이중 20건이 모두 이행하여 100.0%의 이행률을 보임. 그 다음으로는 ‘성별 균형 참여’가 19건의 개선의견에 대해 18건이 이행됨(94.7%). 즉, 법령과 관련된 개선안은 ‘성별통계 생산’과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남
- 성별통계 생산과 관련된 성평등 조치사항은 대부분 2014년 8월 7일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을 토대로 법령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엄격히 제한함에 따라

-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거나 각종 서식에 성별을 기입하도록 하는 내용임
- 성별 균형 참여 지표는 2015년 7월 1일 시행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근거하여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거나 위원회 자격 요건을 완화하도록 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임
- 성평등 조치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법령을 보면 ‘주민참여를 독려할 수 있도록 하여 성별 균형 참여에 해당이 없다’고 사유를 제시하고 있어서 향후 성인지 교육과 성별 영향분석평가 과제 담당자 교육을 통해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적극적 조치로서의 성별 균형 참여의 의미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필요한 대목임

나. 계획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현황

-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현황 분석은 2016년에 실시된 제주특별자치도 계획((5개) 과제 중에서 성평등 조치사항이 있는지 유무, 성평등 조치사항의 구체성 정도, 이행 수준 순으로 평가함
- 성평등 조치사항 유무를 살펴본 결과, 계획에 대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한 전체 5개 과제 중 80.0%인 4개 과제에 성평등 조치사항이 마련됨
- 다음 단계로 성평등 조치사항의 구체성을 이행 결과를 제출한 3개 계획 과제(75.0%)를 대상으로 성평등 조치사항을 이행할 때 성별 요구도 분석을 통해 사업 수혜 범위, 대상, 방법, 기대 효과 등이 예측 가능하도록 명확하게 제시되었는지를 분석함. 성평등 조치사항 분야별(법령, 예산, 사업 관련)로 평가한 결과, 전체 5건의 성평등 조치사항 중 80.0%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었고, ‘단순 제시’도 1건 있음
- ‘구체적으로 제시’한 성평등 조치사항의 예를 들면, ‘양성평등기본법 21조 반영’, ‘물류 종사자로만 교육대상이 한정하고 있어 실질적 예산 대비 수혜인원이 축소되지 않는 지 점검하여 교육 대상 확대’ 등 의 내용임
- 성평등 조치사항 내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사업 관련’ 성평등 조치사항이 71.4% (5건)이 가장 많고 이어서 ‘법령 관련’ 성평등 조치사항 28.6%(2건)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성별분리 통계 생산 및 활용’과 관련된 내용이 총 7건 중 42.9%(3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임
-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률은 이행 결과를 제출한 3개의 계획 과제 중에서 한 건이라도

이행한 과제 수는 2개로 66.7%의 이행률임. 이를 2016년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계획 과제 전체로 확대하면 정책개선 의견을 수용한 4개 계획 과제 중 50.0%임

다. 사업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현황

-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현황 분석은 2016년에 실시된 제주특별자치도 사업(180개) 과제 중에서 성평등 조치사항이 있는지 유무, 성평등 조치사항 구체성 정도, 이행 수준 순으로 평가함
- 성평등 조치사항 유무를 살펴본 결과, 사업에 대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한 전체 180개 과제 중 91.1%인 164개 과제에 성평등 조치사항이 마련됨. 이는 전년 대비 6.4% 증가함
- 다음 단계로 성평등 조치사항의 구체성을 이행 결과를 제출한 102개 사업 과제를 대상으로 성별 특성 및 성별 요구도 차이를 반영하여 사업 수혜자의 범위, 대상, 방법, 기대 효과 등에 대한 구체성과 ‘성별 분리 통계’ 등의 내용을 성평등 조치사항 분야별로 평가함. 평가한 결과, 전체의 76.0%(158건)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고, ‘성인지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된 것도 8.2% 차지함
 - ‘구체적으로 제시’한 성평등 조치사항의 예를 들면, ‘여성 위주의 금연지도자를 양성하여 자발적인 금연 홍보 참여로 금연 환경 조성에 기여’ 또는 ‘남성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처럼 대상과 방법 등은 구체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정확한 성별 요구의 차이가 반영되지 않은 채 한쪽 성에 편향적일 가능성이 있는 내용임
 - 성평등 조치사항 내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사업 관련’ 성평등 조치사항이 67.5%(179건)이 가장 많고 이어서 ‘예산 관련’ 성평등 조치사항 16.6%(44건), ‘법령 관련’ 성평등 조치사항이 15.9%(42건)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업 수혜자 선정 시 성별 고려 및 확대’와 관련된 내용이 총 265건 중 33.6%(89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임
-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률은 이행 결과를 제출한 102개의 사업 과제 중에서 한 건이라도 이행한 과제 수는 78개로 76.5%의 이행률임. 이를 2016년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 과제 전체로 확대하면 개선안을 수용한 164개 사업 과제 중 47.6%로 2015년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률 15.2% 대비 32.4%p 증가한 것임

- 성평등 조치사항 미이행 사유에 응답한 결과를 보면, ‘신청자 대부분이 여성으로 남성 신청자가 저조하여 프로그램에 적용하기 힘든 부분이 있음’, ‘행사에 동원되는 운용인력 및 체험객을 파악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됨’, ‘참가자 대부분이 초등학생이 대상이나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성향이나 참여 의지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가 많음’과 같이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으로서의 개선안의 필요성과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목적 등에 대한 이해가 결여된 것으로 보임. 따라서 향후 과제담당자 실무 교육 시에는 분석평가서 작성 실무와 동시에 다양한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 사례를 통한 성인지적 감수성 향상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라. 공무원의 성평등 조치사항 업무경험에 따른 정책요구

1) 과제담당 공무원의 성평등 조치사항 업무경험과 정책요구

- 성별영향분석평가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경험에 대해 응답한 결과를 보면, 과제 담당자들은 이행점검표 작성제출을 통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업무 확인, 이행점검을 계기로 성평등 조치사항대로 사업이 진행되었는지 점검하는 계기, 이행점검 인터뷰를 통한 지난 해 작성했던 분석평가서의 성평등 조치사항에 대한 확인과 올해 이행점검 증비서류 제출에 대한 재확인 등을 통해 발견된 문제점에 대한 컨설팅 지원 및 성인지관점 파급효과 등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음. 인터뷰 대상이 주로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 완성도가 높은 과제 담당자들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에 대한 이해와 실천 의지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 과정의 어려움에 대해 응답한 결과를 보면, 성별분리통계에 대한 이분법적인 사고, 잦은 인사이동과 인수인계가 원활하지 않는 점, 성별격차 해소하기 위한 업무자체의 어려움이 있었음. 또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필요성에 대해서 수긍할 수 있지만 이 정책의 강제성에 대한 문제 제기로 형식적인 대응을 하게 되는 심리가 있음도 발견할 수 있었음
- 성평등 조치사항을 잘 이행할 수 있는 점에 대해 응답한 결과를 보면, 부서장의 관심도, 사업 담당의 지속성, 컨설팅 및 교육을 받는 것, 처음부터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염두에 두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음. 담당 공무원은 “성별영향분석평가가 다들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처음부터 기획되면 어렵지 않다. 그런 부분이

좀 더 활성화되면 좋겠다”라고 말함

- 정책 요구로는 부서평가에 반영, 사업계획 단계부터 컨설팅, 경력 있는 공무원이 담당, 우수사례 및 성별격차 원인 분석 정보 공유, 처음부터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사업임을 인지 및 포괄적 평가를 위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시스템 보완 등을 제안함

2) 기관·총괄 담당 공무원의 성평등 조치사항 업무경험과 정책요구

- 기관·총괄 담당 공무원들은 과제 담당자들의 선정기준 관련 문의에 답변하기 어려움, 성인지교육 참여를 동원해야 하는 역할의 어려움과 동시에 성인지적 관점이 충분치 않은 단계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 최종 검토의견 통보자로서의 역할을 수행 하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있다고 호소함. 따라서 기관 및 총괄 담당자로서의 역량 강화가 필요함 부분임
- 정책 요구로는 BSC 부서평가 보다는 정책개선 이행 우수사례에 인센티브를 주거나 특히 부서 전체에 인센티브 혹은 표창 등이 필요하고 성별영향분석 업무 경력이 있는 공무원이 기관·총괄 담당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함
- 따라서 공무원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지점이며 각 실국 부서장의 관심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과 기관·총괄 담당자를 위한 특별 역량강화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임

3) 전문가의 정책요구

- 성인지 정책 전문가들은 성별영향분석평가 이행점검이 제도의 실질적인 환류를 위한 필수 절차이기 때문에 이행점검의 일차적 주체는 공무원이 되고 현장 점검은 시민 모니터단을 참여시키는 방법 등을 제안함
- 이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가 법적인 근거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보고서 제출에 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추진 동력을 갖기 위해서는 추진과정에 대한 이행점검 혹은 이행 모니터링을 해마다 실시할 필요가 있기 때문임

성별영향분석평가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 사례

1. '16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 사례
2. '16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 우수사례(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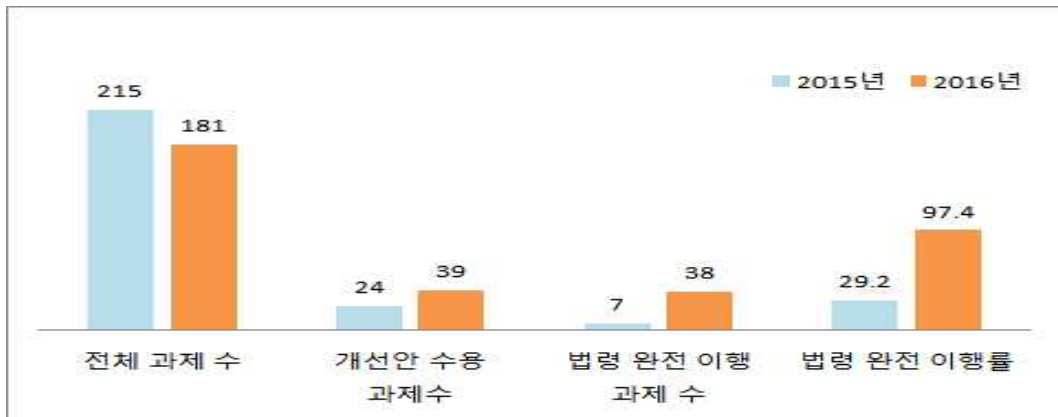
1. '16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 사례

가. 법령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5조에 근거하여 해당 연도의 제·개정 법령은 모두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고 2016년에 실시한 제주특별자치도의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는 181개 과제임. 그 중 성평등 조치사항이 있는 39개 과제(자책개선 6개+개선의견 수용 33개) 중에서 성평등 조치사항을 제·개정 조례에 반영한 이행 사례는 38개임. 개선안 수용과제 대비 97.4% 이행함

〈그림 4 -1〉 법령 성별영향분석평가 성평등 조치사항 완전 이행을

(단위: 개, %)



〈표 4-1〉 법령 성별영향분석평가 성평등 조치사항 완전 이행을

(단위: 개, %)

구분		전체 과제 수	법령에 대한 정책 개선안 수용 과제		
			개선안 수용 과제 수	완전 이행 과제 수	완전 이행률
법령	2015	215	24	7	29.2
	2016	181	39	38	97.4

- 2016년에 실시한 제주특별자치도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181개) 중 성평등 조치사항을 완전 이행한 38개 제·개정 조례는 다음과 같음

〈표 4-2〉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 사례

구분	법률명	개선안 방향	주요 성평등 조치사항 반영 내용
1	제주특별자치도 특별개발우대사업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별 특성 고려	· 주민번호를 생년월일로 바랍직하고 성별 분리통계 생산 필요 위해 서식에 대한 성별구분 명시 함. · 별지1호 서식 및 별지2호 서식에 성별란 기재 반영 <개정 2016.6.22.>
2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성별 특성 고려	· 생년월일로 정비할 경우 성별분리 통계생산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별지1호 성별란 기재 <개정 2016.6.22.>
3	제주특별자치도 도지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성별 특성 고려	· 별지1호 서식 에 대한 성별분리통계 생산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성별란의 기재 <개정 2016.6.22.>
4	제주특별자치도 인증생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안 (조례 명칭 변경: 인증생산물 관리 및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성별 균형 참여	· 제7조(위원회 위원의 위촉 및 임기 등)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하되 성별균형을 고려 해야 하며,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시행 2016.07.08.]
5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성별 균형 참여	·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113조제1항에 따라 구성하되 성별균형은 「양성평등기본법」 에 따른다. [시행 2016.09.28.]
6	제주특별자치도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성별 특성 고려	· 성별 분리 통계 생산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별지 제1호 서식] 성별란 기재 반영 [시행 2016.08.04.]
7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조례	성별 균형 참여	· 제4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 한다. <개정 2011.3.9, 2016.9.28.>
8	제주특별자치도립 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별 특성 고려	· 서식 중 인적대상과 관련된 경우 모두 성별 기재 . 통계생산을 위해 <별지 제1호 서식> 신원인수인 변경 신고서, <별지 제2호 서식> 노인요양원 입소 신청서에 성별 구분 명시[시행 2016.12.30.]
9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별 균형 참여	· 제8조(구성 및 임기)① 제주특별법 제30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 하여 구성하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16.11.9.>
10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별 균형 참여	· 제10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8.>

구분	법률명	개선안 방향	주요 성평등 조치사항 반영 내용
11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별 특성 고려	· 제·개정 사항 중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성별 구분란 반영 <개정 2017.3.29.>
12	제주특별자치도 주민투표 조례	성별 특성 고려	· 별지 서식에 대한 성별분리 통계 생산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성별란의 기재 반영 [별지 제1호서식]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별지 제3호서식]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별지 제4호서식]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별지 제5호서식] 청구인서명부, [별지 제6호서식] 주민투표청구서, [별지 제7호서식] 이의신청서 <개정 2016.11.23.>
13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별 특성 고려	· 제8조의3(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시설 구조 및 설치기준 등) ① 제주특별법 제406조제2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 및 관광객을 위한 오락·휴양·편의·관광시설 등 연령과 성별의 구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고려할 것. [본조신설 2017.3.29.]
14	제주특별자치도 골재채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별 특성 고려	· [별지 제2호서식]골재채취허가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복구계획서에 성별란 기재 <개정 2016.11.23.>
15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도로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별 특성 고려	· 제·개정 사항 중 [별지 제1호 서식] 농어촌도로 정비허가 신청서에 성별란 명시 <개정 2016.11.23.>
16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별 균형 참여 및 성별 특성 고려	· 제6조(공공수련시설건립심의위원회)에 성별 고려 하여 위촉될 수 있도록 노력 · 제·개정사항 중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수련시설 사용허가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청소년수련시설 사용허가서에 성별 구분을 명시 <개정 2016.11.9.>
17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육성 및 지원 조례	성별 균형 참여	· 제4조(향토음식육성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당연직 위원은 향토음식 육성업무 담당 국장과 관광 등 관련부서 과장으로 하며,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특정 성(性)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18	제주특별자치도 선도농업인육성기금 조례 일부 개정	성별특성 고려 및 성별 균형 참여	· 제8조(선도농업인육성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 ② 위원회의 위원은 성별균형을 고려 하여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12.30.>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과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장, 농업기술원 기술지원국장이 된다. 다만, 제1호의 경우는 2명으로 한다.<개정 2016.12.30.>

구분	법률명	개선안 방향	주요 성평등 조치사항 반영 내용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 기금운용이나 기금관련 분야 전문가 3. 농업인단체 관계자 4. 농업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
19	제주특별자치도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조례	성별 균형 참여	·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②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 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6.12.30.>
20	제주특별자치도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조례 명칭 변경: 제주특별자치도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성별 균형 참여	· 제2조(구성)① 제주특별자치도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균형을 고려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1	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시행규칙	성별 특성 고려	· [서식]에 성별분리 통계 생산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서식 2호, 서식 3호 성별 구분란 기재 <개정 2016.12.7>
22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성별 특성 고려	· 제2조(설치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하 “지원단”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5. 공공보건의료 자원 실적통계, 지역 내 성별·연령별 등 공공보건의료 이용 현황과 실태에 관한 사항 구축 및 모니터링[시행 2017.03.08.]
23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성별 균형 참여	· 제8조(제주어보전육성위원회 설치)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 하여 구성한다.<개정 2011.4.6, 2017.3.8.>
24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성별 균형 참여	· 제37조(지하수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지하수관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 구성한다.[시행 2017.09.30.]
25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성별 특성 고려	· [별지 제1호서식]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보청기 구입비 지원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보청기 검수확인서에 대한 성별분리 통계 생산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성별란 반영 <제정> 2016-12-30>
26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및 감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성별 특성 고려	· [별지 제12호서식] 전문모집인과의 계약내역서, [별지 제14호서식] 카지노종사원 변동내역에 대해 성별란 반영 <제정> 2016-12-30>
27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행동강령	성별 특성 고려	· 생년월일란에 성별 구분 반영, 성별 통계 구축 기반 마련 ·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별지 제13호서식],[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6.12.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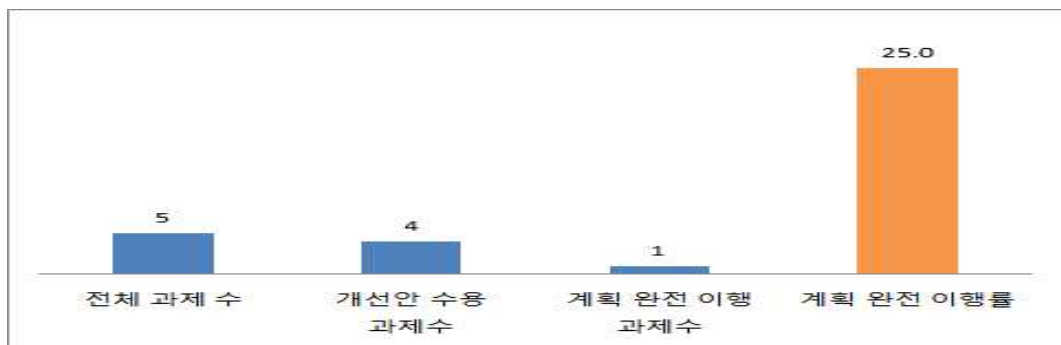
구분	법률명	개선안 방향	주요 성평등 조치사항 반영 내용
28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별 균형 참여	· 제4조(공동위원회 구성) 4. 공동위원회 수는 25명 이내로 하되, 성별균형을 고려 한다. <개정 2017.3.29.>
29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성별 균형 참여	· 위원회 구성시 성별 균형 참여 고려. 명시된 대로 위원회를 구성함(조례에는 별도 명시 안 됨)<시행 2016.09.28.>
30	제주특별자치도 주거복지 조례 (조례명 변경: 제주특별자치도 주거복지 기본 조례)	성별 균형 참여	· 양성평등기본법에 위촉직 위원일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고 명시된 대로 위원회를 구성함 (조례에는 별도 명시 안 됨) <시행 2016.09.28.>
31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별 특성 고려	· 별지 제10호서식, 제12호서식까지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하고, 성별 구분란 추가 반영 <개정 2016.11.9.>
32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별 균형 참여	· 제5조의3(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 구성한다. <시행 2017.01.01.>
33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성별 균형 참여	· 제14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심의)④ 당연직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 기업지원을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위원의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개정 2016.12.30.>
34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안	성별 특성 고려	· 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 서식에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성별 구분란을 기재 하도록 반영[시행 2017.01.27.]
35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시설공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별 균형 참여	· 제1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하되 성별균형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다. <개정 2016.12.30.>
36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성별 특성 고려	·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에 성별란 반영 <개정 2017.3.29., 시행 2017.7.1.>
37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등 지원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성별 특성 고려	· 별지2호서식에 성별란 반영 [시행 2016.06.22.]
38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 희생자 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시행조례”)	성별 특성 고려	· 별지1호서식, 별지2호서식, 별지3호서식 성별란 반영. [시행 2016.12.30.]

나. 계획

-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5조에 따라 3년 이상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중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계획에 대해 해당 계획을 수립하기 전⁹⁾까지 원칙적으로 분석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의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는 2012년 4개, 2013년 1개가 과제가 이루어졌으며 2014년과 2015년은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가 (강경숙 외, 2016), 2016년 5개 과제가 있지만 여전히 미흡한 실정임
- 2016년에 실시한 제주특별자치도의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는 총 5개 과제이고 그 중 개선안을 제시하거나 수용한 4개 과제 중에서 성평등 조치사항을 완전 이행한 과제¹⁰⁾는 1개로 개선안 수용과제 대비 완전 이행률은 25.0%임. 성평등 조치사항이 완전 이행된 계획 과제는 「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2016.9.28.) 제9조에 근거하여 계획이 수립된 ‘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 계획’(완전이행)로, 위원회의 성별 균형 참여(내부 지침) 및 성별 특성 고려 시설 개선을 위해 ‘시범사업’ 추진 설계 완료 전에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내부 지침에 명시함(디자인건축지적과-21403(2017.7.26.)

〈그림 4 -2〉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성평등 조치사항 완전 이행률

(단위: 개, %)



9) '계획 확정 3개월 전, 위원회 상정 60일 이전 또는 부처(부서) 협의 전까지' 중 빠른 시기에 비전과 목표, 전략 및 중점과제에 대한 분석평가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관의 분석평가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여성가족부, 2017. '2017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

10)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중 정책개선안을 자체적으로 제시하거나 개선의견을 수용한 과제 중 이행점검표를 접수한 3개 과제를 중심으로 평가한 것임

〈표 4-3〉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성평등 조치사항 완전 이행률

(단위: 개, %)

전체 계획 과제 수	계획에 대한 성평등 조치사항이 있는 과제		
	개선안 수용 과제 수	완전 이행 과제 수	완전 이행률
5	4	1	25.0

1) 「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 계획 수립의 필요성

- 고령사회의 진입, 장애인구 증가, 국제화로 인한 외국인 방문객 증가 및 남녀노소 누구나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안전한 도시공간 조성

○ 성평등 조치사항

- 법령 개선안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반영
- 사업 개선안 : ‘시범사업 평가 후 환류방안 마련’ 제시

○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 내용

- 성별 균형 참여 및 안전한 도시공간 조성
 - 법령 개선안 완전이행 : 위원회 구성 시 특정성별이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니버설디자인위원회(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와 통합 운영) 구성 근거 마련(‘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구성계획’-디자인건축지적과-21403(2017.7.26.))

※ 건축위원회 유니버설 및 범죄예방환경디자인 분야 전문위원회 폐지 후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와 통합 운영(위원회 29명 중 여성비율 39.2%)

- 사업 개선안 완전이행 :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화북지구, 법환지구)은 행정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NEW 삼무형 주거환경관리사업에 포함하여 추진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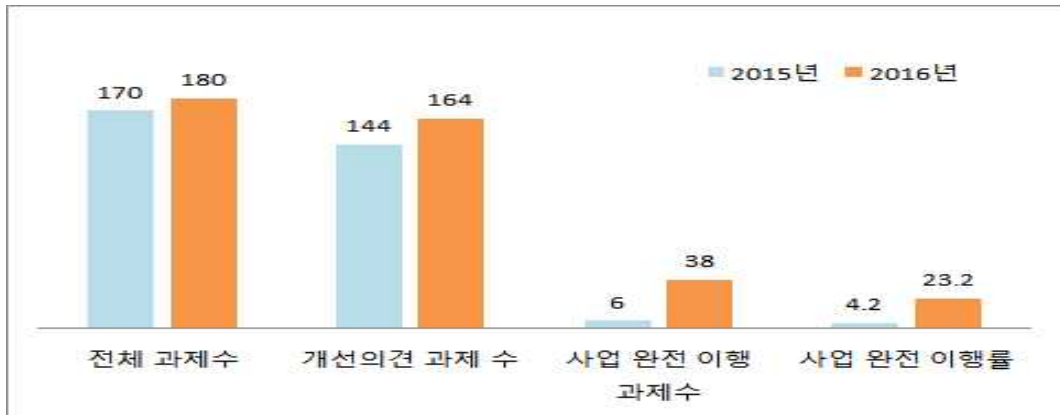
※ 주거환경관리사업 설계 완료 전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명시

다. 사업

- 2016년에 실시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전체 180개 과제 중에서 성평등 조치사항을 제시하거나 개선의견을 수용한 과제는 164개이고 그 중 성평등 조치사항을 완전 이행한 과제는 38개¹¹⁾임. 성평등 조치사항이 있는 과제 대비 완전 이행률은 23.2%이고 전년 대비 19.0%p 상향된 것임

〈그림 4-3〉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성평등 조치사항 완전 이행률

(단위: 개, %)



〈표 4-4〉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성평등 조치사항 완전 이행률

(단위: 개, %)

구분		전체 과제 수	사업에 대한 성평등 조치사항이 있는 과제		
			개선안 있는 과제 수	완전 이행 과제 수	완전 이행률
사업	2015	170	144	6	4.2
	2016	180	164	38	23.2

- 2016년에 실시한 제주특별자치도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180개) 중 성평등 조치사항을 완전 이행한 38개 과제는 다음과 같음

11)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중 정책개선안을 자체적으로 제시하거나 개선의견을 수용한 164개 과제(연구진 분석평가서 검토 확인한 과제 수로 GIA시스템 상 개선의견 과제 수보다 4개 더 많음) 중 이행점검표를 접수한 자료 102개(원안동의 1개 과제 제외)를 기준으로 평가한 것임

〈표 4-5〉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성평등 조치사항 완전 이행 사례

	부서명	사업명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 내용 및 효과
제주 자치 도	인재개발원	도민 정보화 교육 운영	○ 사업 관련 이행 - 주말반 개설을 통해 직장인을 포함한 중장년층까지 정보화 교육 참여율 확대 운영
	제주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훈련사업	○ 사업 관련 이행 - 2017년 농기계 교육훈련과정에 여성 맞춤형 농기계를 구입하여 여성의 실무 중심의 농기계훈련과정 별도 신설하여 운영 ※ 참여자 도청 홈페이지에 후기 게재는 물론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다른 센터에 좋은 모델링 사례를 제시하여 파급효과 나타남
	보건건강 위생과	광역치매센터운영	○ 사업 관련 이행 - 치매인식개선 홍보대상이 여성에 편중되지 않도록 성평등을 추구하는 새로운 형태로 치매인식 개선 캠페인 등 실시 - 치매교육시 파트너 및 파트너플러스에 대한 성별분리 통계 제시하고 남성 파트너플러스 활동의 필요성에 대한 강조를 통해 남성의 비율을 확대 - 직장 동아리 및 남자 중고등학교 활용한 인식개선 교육 실시 - 남성의 치매파트너 및 파트너플러스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교육과정 및 교육 형태 다양화 - 도민 치매인식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향후 개선안 보완
	미래 산업과	생활과학지도자과정 운영사업	○ 사업 관련 이행 - 교육내용별로 수혜자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성별 구분하여 교육 만족도 조사를 실시 - 제주지역 문제와 연계된 강의 진행(꽃자왈, 제주연안 해양생물, 제주신재생에너지, 제주지역경제, 제주관광의 미래 등)
	문화 정책과	제주문화예술포럼 지원센터	○ 법령 관련 이행 - 프로그램 운영계획에 성별분리 통계 생산할 수 있도록 공모 사업 계획서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운영 시에 성(性)이 교육 참여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근거 조항 명시
	기술지원 조정과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운영	○ 사업 관련 이행 - 농업 종사 여성 참여 제고를 위해 여성농업인 단체 및 생활개선회 회원 등을 대상으로 신입생 모집 시 다각적으로 홍보하고, 자기관리 요령, 지역 자원을 활용한 농업의 융복합 내용 및 스마트폰 활용 교육 등 프로그램을 운영 ※ 2018년 위탁사업 계약서에 성별분리 통계 및 프로그램 운영 방향 등 근거 조항 마련 계획에 있음
	동부 농업기술센터	농업인 전문교육	○ 법령 관련 이행 - 농업인 전문교육에 부부참여 및 가족동반 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한 다각적 홍보 강화함
	기업통상과	중소기업 창업 프로그램 운영	○ 사업 관련 이행 - 프로그램 운영 시 교육 참여자 만족도 조사를 통해 수요를 파악하고 프로그램 개선안 마련

	부서명	사업명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 내용 및 효과
	경제 일자리정책과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종합아카데미 사업	○ 법령 관련 이행 - 프로그램 운영 시에 성별 격차 원인을 분석하여 성별 특성에 따라 시간대와 찾아가는 교육 등과 사업 참여자에 대한 성별분리 통계 생산관련 내용 명시 ○ 사업 관련 이행 - 신청서 등에 '성별' 포함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유형별, 업종별, 계층별 특성 자료 구축 및 결혼이민자, 청년 등 다양한 수혜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주민센터, 학교 내 홍보, 주민자치센터 등 홍보 다각화
	기업 통상지원과	지역특화 청년무역전문가 양성사업	○ 사업 관련 이행 - 제주대학교 매년 교육 참가자에 대해 성별, 연령별, 학년별, 학과별 현황을 파악 하여 프로그램 운영 및 개선 방안 마련
	세계자연유산 문화재부	문화유적지 체험프로그램 운영	○ 사업 관련 이행 -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한 부서 전직원 매월 친절교육 및 직무연찬을 실시 및 문화유적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한 어린이 선호 프로그램 및 가족단위 프로그램 개발 운영 ※ 인근 초등학교와 협약을 통해 상시 문화유적지 공간을 활용한 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하도록 지역사회 연계 네트워크 구축 및 담당하고 있는 모든 사업에 성인지 관점으로 추진 영향 줌
	평화 대외협력과	평화아카데미 운영	○ 사업 관련 이행 - 프로그램 참여자 대상 양성평등 관련 교육 의 일환으로 '상속제도' 주제로 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참여자의 만족도 조사 를 실시하여 지속적 개선방안 노력
	정보융합 담당관	고령인 정보화교육	○ 사업 관련 이행 - 고령인 대상 교육참가자의 성별, 연령별, 교육경험별 이용 만족도와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조사 실시
	환경자산물 관리과	제주올레 콜센터 운영	○ 사업 관련 이행 - 제주올레콜센터 전문상담사 4명이 올레여행객으로부터 전화 상담해오는 숙소, 식당, 올레주변 행사문의, 안전대책 등 내용별로 성별통계 집계될 수 있도록 위탁 과업지서에 명시 - 콜센터에 대한 홍보가 되면서 성별 참여율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따른 고객 대응을 위해 (사)올레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콜센터 인력의 제주도내 올레 길 현장 교육 실시
	문화정책과	문화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 사업 관련 이행 - 부족한 문화 환경 에 대한 성별요구 차이를 반영한 양질의 콘텐츠 개발과 접근성을 고려하여 찾아가는 방문교육 확대 추진하고 성별, 연령별, 지역별 구분란을 만든 신청서를 활용하여 성별분리 통계 생산
	해양수산 자원과	최고해양수산업 경영자과정	○ 사업 관련 이행 - 프로그램 모집 및 홍보방법을 개선하고 참여자의 교육 시간 및 근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강좌를 개설 하고, 교육실시 후 만족도 조사 를 통한 교육 평가 및 개선방안 노력
	관광진흥과	제주별빛누리공원운영(제주별빛누리공)	○ 사업 관련 이행 - 2016년도 교육 주제가 여학생보다 남학생의 관심도가 높은 로봇

	부서명	사업명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 내용 및 효과
제 주 시		원 가족 프로그램 운영) ※ 2015 정책개선 우수사례	과학에 대한 체험교육이었는데 2017년에는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과학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 홍보 시에는 과학에 대해 관심을 높이기 위해 과학체험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여학생과 남학생의 모습이 동시에 담겨있는 이미지 홍보함
	도시재생과	자전거타기이용 활성화 사업 (공공자전거 무인이용시스템 운영	○ 예산 관련 이행 - <u>성별 신체적 차이 고려하여 여성용 장비구입 자전거를 구입하여 남녀노소 만족도 제고</u> 와 동시에 자전거 이용 시민대상 사고 대비 <u>자전거보험 가입 및 자전거도로 정비</u> ○ 사업 관련 이행 - 초·중 자전거이용활성화 프로그램 교육 시 <u>남성과 여성이 공존하는 자전거 문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방문 교육</u> ※ <u>담당하고 있는 타 사업에 대해서도 성인지적 추진 의향</u> 보임
	주민복지과	아라중합사회복지관 야간보호사업	○ 사업 관련 이행 - 대상 아동·청소년들의 <u>선호도를 반영한 프로그램 개선</u> (마술교실 개설) 및 참여자들이 <u>프로그램에 집중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설</u> 하여 운영하여 만족도 높음 - 특히, 평소 아동 및 청소년들이 프로그램에 <u>열심히 참여할 시 스티커를 지급</u> 하여, 평소 모은 스티커로 <u>학용품 등을 교환</u> 할 수 있는 <u>'마켓데이' 운영</u> 으로 참여자의 집중도 높임 - <u>프로그램별 성별분리 통계 구축, 이동폭력·성추행 예방 교육 강화 및 성평등의식 개선 교육 실시</u> ※ <u>담당하고 있는 타 사업에도 성인지적으로 추진 의향</u> 보임
	자치행정과	자원봉사서비스강화 (자원봉사 활성화 시책 추진사업)	○ 법령 관련 이행 - 2017년 자원봉사 활성화 시책 추진사업에 대한 보조금 교부 결정 및 <u>교부시 사업참여자 성별 현황 자료를 포함하여 실적보고서 제출 요청, 성별분리 통계 생산을 위한 지침 마련</u> ○ 예산 관련 이행 - 은퇴 이후 남성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재능나눔 전문봉사단 조직·운영 구축사업지 2백만원 등 2017년 자원봉사 활성화 시책 사업비 반영(예산 삭감으로 요구액 76백만원→40백만원 반영) ○ 사업 관련 이행 - <u>재능나눔 전문봉사단 조직·운영</u> 구축사업 등 2017년 자원봉사 활성화 시책 사업 추진
	공원 녹지과	도시공원조성 및 관리(공원화장실 리모델링)	○ 사업 관련 이행 - 여성친화적이고 안전한 공간을 위해 <u>안전성(비상벨, 조명밝기), 편의성(기저귀교환대 등) 고려한 화장실 개선사업 추진</u>
	주민복지과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 사업 관련 이행 - 아동의 특성(장애아동, 다문화, 청소년)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및 문화체험 및 교육기회가 적은 취약계층 아동들이 대부분이므로 문화체험 프로그램 강화하여 추진 - 수혜에 있어 성별 격차가 나지 않으나 세부 프로그램에 따라 성별 참여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세부프로그램별 성별분리통계 구축하여 참여현황 분석

	부서명	사업명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 내용 및 효과
			- 최근 아동성폭력, 성추행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므로 예방, 대처 교육에 대한 이행여부 점검
	환경면	한경도서관 관리운영(한경도서관 문화학교 운영)	○ 사업 관련 이행 - 야간·휴일 프로그램 확대 운영 및 컴퓨터와 같이 남성의 관심 분야 혹은 이론과 체험을 병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남녀 모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운영
	환경관리과	제주시지속가능발전 협의회 사업추진	○ 사업 관련 이행 - 보다 많은 학생들이 제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추진하는 환경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추진 - 지구의 날 기념행사 이며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지구환경축제 개최 시 보다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양호한 장소 또는 여러 장소에서 다양한 주제로 체험프로그램 추진
	마을활력과	농촌체험 프로그램 운영기반 조성사업	○ 법령 관련 이행 - 평가위원의 성별비율을 균등하게 함으로서 평가 시 한쪽 성향에 치우치지 않도록 사업추진
서 귀 포 시	정방동	문화의집 프로그램 운영(강사수당 등)	○ 예산 관련 이행 - 남성의 수요를 반영한 신규교육 내용을 위한 예산 편성 ○ 사업 관련 개선 -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 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남성의 요구를 반영한 기획 프로그램을 개발·운영 하고 홍보를 강화하여 지역주민들의 능동적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 ※ 한자서예, 건강요가, 밴드동아리 등 ‘17년 남성참여율 21.0%
	서귀포 예술의 전당	문화가 있는날 프로그램 동행콘서트	○ 법령 관련 이행 - 여성·가족 관람객 및 공연제공자 여성 확대 위한 지침 마련 ○ 예산 관련 이행 - 여성 출연료 확대를 위한 예산 반영 ○ 사업 관련 이행 - 저조한 원인 분석 및 보완하여 가족프로그램 등으로 확대
	건설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	○ 사업 관련 이행 - 성별 특성 파악하여 만족도 조사를 실시 하고 사업수행 지침에 여학생 참여 적극 조치 하여 운영
	마을활력과	귀농귀촌 정착교육사업 ※ 2015년 정책개선 우수사례	○ 법령 관련 이행 - 연간운영계획 수립 시 여성참여율이 높은 교육과정 선정을 위한 지침 반영 ○ 예산 관련 이행 - 여성 귀농귀촌인들이 선호하는 교육과정 개설 위한 예산 반영 ○ 사업 관련 이행 - 여성 귀농귀촌인들이 선호하는 교육과정(퀵트, 천연염색, 천연비누 화장품 교육 등)을 점차 확대 개설 및 사전수요조사를 통해 여성 교육참여자의 요구를 반영 하는 사업 시행을 통한 창업컨설팅, 창업교육과정을 통해 여성 귀농귀촌인 정착률 제고
			○ 예산 관련 이행 - 남녀 성별 구분없이 평등하게 교육 참여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부서명	사업명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 내용 및 효과
서귀포시	마을활력과	매력있는 마을만들기 교실 운영 ※ 2015년 정책개선 우수사례	성별 수혜 고려 예산 배분하여 추진 ○ 사업 관련 이행 - 지역주민의 역량강화를 교육에 대한 대상자 선정 시 남녀 비율 조정 및 남녀 평등관련 교육 예를 들면 인권과 성인지 감수성과 관련 교과목 신설하여 추진 ※ 교육대상: 읍면동리더, 사무장, 주민(누구나 가능) 세부교실 운영: '인권과 성인지 감수성'교육
	공원 녹지과	도시공원내 어린이놀이시설 정비사업	○ 사업 관련 이행 - 매년 어린이놀이시설 정비 추진 중: '17년 사업비 100백만원, 정비내용-놀이시설 정비, 시설환경 개선 등,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실시(연중) - 공원 화장실 비상벨 설치추진(16개소, 160백만원)→목적: 범 죄예방 기반 시설 확충, 도시공원 환경정비 연중 실시
	대천동	거동불편 독거어르신 장애인 가스오수기 지원사업	○ 예산 관련 이행 - 사회적 취약계층의 생활 편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사업으로 예산 지원시 성별격차 고려하여 예산 반영함. 전체 예산 7백만원 등 모집단에서 성별격차 비율인 여성 73%, 남성 27%를 반영하여 여성노인 및 장애인에게는 예산의 70%인 4.5백만원, 남성노인 및 장애인에게는 예산의 30%인 1.9백만원 예산집행
	서귀포 보건소	치매관리사업	○ 예산 관련 이행 - 노인 인구대비 점점 늘어나는 치매환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예산 증감 및 남성 노인 대상 치매조기검진사업비 확보 ○ 사업 관련 이행 - 유병률은 여자 치매환자가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남성 치매환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치매환자 발견 및 등록관리 - 60세이상 지역주민 중 남성 치매검진 강화 및 여성노인이 스트레스를 풀어낼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운영
	안덕면	안덕산방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 사업 관련 이행 - 남성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설하고 선호프로그램 사전 조사 및 결과 반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 운영 - 가족단위의 프로그램 개설로 남녀 공동참여 및 다양한 연령대의 참여 유도했을 뿐 아니라 직장인을 위한 야간프로그램, 주말 프로그램 확대 운영 - 안덕면 관내 청년회 및 KICS국제학교 학생 등 단체협력 프로그램 개설로 남성참여 확대는 물론 이동·가족 만족도 향상 ※ 담당자를 포함한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자 3명 모두 성인지적 프로그램 개설하여 서로 협력하며 운영 관리함
	중앙동	산업육성 및 지역개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지역개발사업)	○ 사업 관련 이행 - 여성이용자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여성 등 보행자의 특성을 고려한 시설개선, 보완
	여성 가족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	○ 사업 관련 이행 - 다문화가족의 건강성 증진을 위해 결혼이주여성 및 배우자, 자녀들이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 운영

	부서명	사업명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 내용 및 효과
			- 이주여성 정착 초기에는 한국어교육, 통번역서비스를 제공과 동시에 단계적으로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발달 지원, 결혼이민자 멘토링 사업, 가정폭력 예방 및 가족갈등의 해소를 위한 가족관계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가정해체방지 도모 및 가족 관계 개선 위해 노력
	성산읍	신산청소년문화의집 프로그램운영	○ 사업 관련 이행 - 프로그램 운영 시 별도의 양식 통해 성별, 연령별 통계 생산 하고 또한 프로그램 운영 전 설문조사 등을 통한 남, 여 청소년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하여 참여 만족도 조사 실시
	건축과	서귀포 건축포럼	○ 사업 관련 이행 - 여성 참여율 제고하여 서귀포 건축포럼 운영위원회 구성 (위원장 (여성학자) 포함 총 12명, 여성 25.0%) ※ 건축 관련 여성 전문가 확보가 어려운 점 감안하여 성인지적 관점을 갖춘 여성학자와 여성 디자이너 등을 위원으로 위촉

2. '16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 우수사례(안)

가. 법령

1) 법령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 우수사례(안) 선정 기준

- 법령에 대한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 우수사례(안) 선정 기준은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 (여성가족부, 2016)에서 법령의 '성별 구분 및 고정관념', '성별 특성', '성별 균형 참여'에 대해 3개 분석평가 항목으로 구성된 분석평가 항목을 기준 지표로 구성함

〈표 4-6〉 법령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 우수사례(안) 선정 기준

단계	지표	선정 기준
1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 수준	· 성평등 조치사항을 성인지적으로 완전 이행하였는가?
2	세부 기준	성별구분
		· 제·개정 법령의 적용 대상에 성별 구분 조항 등을 반영하였는가?
		성별특성
		· 성별에 따른 신체적, 사회·문화적 차이를 고려하고 있는가? · (성별 통계)제·개정 법령과 관련한 별지 서식, 실태조사 등에 성별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는가?
		성별균형 참여
		· 위원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는가? · (성평등 자격 기준)위원회 구성 등을 위한 자격 요건이 특정 성에 불리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는가?

2) 법령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 우수사례(안)

- 우수사례(안) 기준에 따라 2016년 제주특별자치도의 제·개정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 분석평가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 우수사례(안)로 ‘성별 균형 참여’ 관련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개정안 조례 3개를 선정함.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 우수사례(안) 개정안은 위원회 등 구성시 성별을 고려하여 ‘특정 성(性)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구체적으로 명시함. 또한 위원회 구성 등을 위한 자격 요건이 특정 성에 불리하지 않도록 성평등한 자격요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해당 관련 경험이 많은 민간인까지 참여가 가능한 기준을 추가 명시함

〈표 4-7〉 ‘16년 법령 성별영향분석평가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 우수사례(안)

구분		법률명	선정 사유
성별 균형 참여	성별 균형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평등 조치사항을 개정 조례에 반영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육성 및 지원 조례	· 위원회 구성 시 성별균형에 대한 「양성평등기본법」 제 21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성평등 자격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선도농업인육성기금 조례 일부 개정	· 성평등 조치사항을 개정 조례에 반영 · 위원회 구성 시 성 평등한 자격 기준을 추가하여 명시

(1)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행 2016.9.28.)(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1678호, 2016.9.29., 일부개정)

○ 개정 목적

- 개정안은 비정규학교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이 행정시로 사무위임 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학교지원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도, 행정시 업무담당 국장 추가 및 구성인원 조정 등의 조문을 정비하여 변경함

○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 내용

- 성별 균형 참여

- 의사결정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았지만 특정 성(性)의 참여가 배제되지 않도록 관련 조항에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명시함(관련 조례 제10조제1항)

○ 해당 조항

성별영향분석평가 이전	성별영향분석평가 이후
제10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0조(구성 등) ① _____,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8.>

출처: 법제처 <http://www.moleg.go.kr/main.html>., 2017.11.30검색.

(2)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 2016.11.9.)(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1721호, 2016.11.9., 일부개정)

○ 개정 목적

-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인증 음식점 선정 및 관리체계 개선에 관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변경함

○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 내용

- 성별 균형 참여

- 의사결정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았지만 특정 성(性)의 참여가 배제되지 않도록 관련 조항에 '특정 성(性)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명시함(관련 조례 제4조)

○ 해당 조항

성별영향분석평가 이전	성별영향분석평가 이후
제4조(향토음식육성위원회)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당연직 위원은 향토음식 육성업무 담당 국장과 관광 등 관련부서 과장으로 하며,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4조(향토음식육성위원회) ④ _____, 특정 성(性)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출처: 법제처 <http://www.moleg.go.kr/main.html>., 2017.11.30검색.

(3) 「제주특별자치도선도농업인육성기금 조례」

(시행 2017.1.1.)(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1795호, 2016.12.30., 일부개정)

○ 개정 목적

-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 마련 등 상위 법령 인용 조문 변경에 따른 사항 등을 정비하고, ‘선도 농업인육성기금운용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변경함

○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 내용

- 성별 균형 참여
- 의사결정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았지만 특정 성(性)의 참여가 배제되어 왔다는 점에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명시함(관련 조례 제8조제2항)

- 성 평등한 위원회 자격 기준 충분히 고려

- 위원회 등의 위원 자격 요건이 특정 성(性)에 불리하게 작용하여 의사결정 과정에 한 성이 결과적으로 배제되지 않도록 ‘기금관련 전문가’ 및 ‘농업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민간인’으로 했던 자격 조건을 ‘농업인단체 관계자’를

위원회 대상에 포함시켜 성평등한 관점에서 자격조건을 충분히 고려함(관련 조례 제8조제4항4.)

○ 해당 조항

성별영향분석평가 이전	성별영향분석평가 이후
제8조(선도농업인육성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 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농업기술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중 당연직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축산국장, 농업기술원 기술지원국장이 되며, 위촉직은 <u>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2명, 기금운용이나 기금관련분야에 관한 전문가나 농업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민간인</u>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제8조(선도농업인육성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 ② 위원회의 위원은 <u>성별균형을 고려하여</u> .<개정 2016.12.30.> ③ _____. ④ 위원은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u>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과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장, 농업기술원 기술지원국장이 된다. 다만, 제1호의 경우는 2명으로 한다.<개정 2016.12.30> 1. _____ 2. _____ 3. 농업인단체 관계자 4. _____

출처: 법제처 <http://www.moleg.go.kr/main.html>, 2017.11.30검색.

나. 사업

1) 사업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 우수사례(안) 선정 기준

○ 사업에 대한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 우수사례(안) 선정 기준은 강경숙 외(2016)의 개선 사례 선정 기준을 참고하되 보다 더 강화하여 3개의 평가 지표로 구성함. 평가 지표는 2015년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 사례로 선정된 사업은 제외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분석평가서를 충실히 작성하였는지, 성평등 조치사항을 성인지적이고 구체적으로 완전하게 이행하였는지, 성별 수혜자 혹은 예산 규모 등에 파급효과가 있었는지 등임

〈표 4-8〉 사업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 우수사례(안) 선정 기준

단계	지표	선정 기준	
		성평등 정책 개선 사례 (강경숙 외, 2016)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 우수사례(안) (본 연구)
1	분석평가서 작성 수준	· 성평등 조치 사항이 적절하게 작성 되었는가?	· 성별영향분석평가서를 충실히 작성 하였는가?(단, '15년 개선사례 제외)
2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 수준	· 성평등 조치 사항이 구체적이고 성 인 지적으로 모두 이행하였는가?	· 성평등 조치사항을 완전 이행하고, 성인지적이고 구체적으로 이행하였 는가?
3	파급효과		· 성별 수혜자 규모, 예산 규모, 지역사 회 협력, 유사 사업에 미친 영향, 참 여 자 만족도 등 항목 중에서 파급효 과가 있었는가?

2) 사업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 우수사례(안)

○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 우수사례(안) 선정 기준에 따라 2016년 제주특별자치도의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 우수사례(안)로 성별영향분석평가서를 충실히 작성하고 정책개선안을 성인지적이고 파급 효과가 나타나도록 완전 이행한 사업 6개를 선정함.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 우수사례(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농기계훈련 사업'(제주농업기술센터), '문화유적지 체험 프로그램 운영'(세계유산 문화재부) 등 2개 사업, 제주시의 '아라중합복지관 야간보호사업'(주민복지과), '자전거 타기 이용활성화 사업'(도시재생과) 등 2개 사업, 서귀포시의 '안덕산방도서관 프로그램 운영'(안덕산방도서관), '서귀포 건축포럼'(건축과) 등 2개 사업임

〈표 4-9〉 '16년 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 우수사례(안)

연번	영역	담당기관	사업명	선정 사유
1	농림 해양 수산	제주도 제주농업 기술센터	농기계 훈련사업	· 성인지적·구체적 개선안 제시 및 개선안 완전 이행 · 여성 맞춤형 소형 농기계 구입을 통한 여성 농업인 실무 중심 교육으로 수강생 만족도 제고(※ 도청 홈페이지 '칭찬 합시다'코너에 참가자 후기 게재) · 담당 공무원의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대면 컨설팅 의견을 반영한 성인지적 사업 추진 결과, 프로그램 모델링 파급 효과 나타남

연번	영역	담당기관	사업명	선정 사유
2	문화 체육 관광	제주도 세계유산 문화재부	문화유적 지체험 프로그램 운영	· 성인지적·구체적 개선안을 제시하고 완전 이행 · 성별고정관념 탈피한 프로그램 운영 및 인근 초등학교 교와의 협약을 맺어 학습 공간 제공 등 지역 사회 협력 네트워크 구축 · 담당 공무원의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대면 컨설팅 의견을 반영하여 맡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에 영향 (※ 전체 10개 사업(예산: 2억여원)에 긍정적 효과)
3	사회 복지	제주시 주민 복지과	아라종합 사회 복지관 야간보호 사업	· 성인지적으로 제시한 개선안 5건 모두 완전 이행 · 성별 요구 차이 반영 및 수혜율 성평등 제고로 참여자의 높은 만족도 등 사업 내용이 우수함 · '17년 신규공무원이지만 성별영향분석평가 대면 컨설팅 의견 반영하여 FM대로의 성인지적 사업 추진
4	국토 및 지역 개발	제주시 도시 재생과	자전거 타기 이용 활성화 사업	· 성인지적·구체적 개선안을 제시하고 완전 이행 · 성별신청자(여성>남성)와 이용자(남성>여성)비율에 차이가 있었는데 장바구니 자전거 구입 후 남녀노소 자전거 이용률이 높아지는 효과 나타남 ※ 담당자는 '이런 부분이 사소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부분이구나' 깨닫고 사업에 반영 · '17년 신규공무원이지만 적극적 의지 돋보임
5	문화 체육 관광	서귀포시 안덕산방 도서관	안덕산방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 제시한 정책 개선안 5건 모두 완전 이행 · 도서관 직원(3명) 모두 친밀한 협업을 통해 성인지적 프로그램 개발하고 추진한 결과는 물론 의지 돋보임 ·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 및 청년회, 국제 학교 학생(NLCS) 등 지역 자원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기 참가자의 개강 전 문의 등 인지도 높음
6	환경	서귀포시 건축과	서귀포 건축포럼	· 제시한 정책 개선안 완전 이행 · 도시공간 관련 여성 전문가 부족한 인력풀에도 불구하고 성인지적 관점의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여성학자(위원장), 여성 디자이너 등을 포함한 위원회 구성

가) 농기계훈련사업(제주특별자치도 제주농업기술센터, 농림해양수산 분야)

○ 사업 개요 : 농업·농촌의 기계화 영농을 선도할 농기계 기술인력 양성, 취급 조작 교육훈련을 통한 사용능력 향상 및 안전사고 예방 등 농업인의 자가 정비기술능력 향상을 통해 영농현장 어려움 해소하기 위한 사업임

- 교육 참가자 중 여성참여율(15.0%)이 남성(85.0%)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원인이 기존

농기계의 대형화와 작동 시 큰 소음, 많은 조작레버 등 여성이 농기계를 다루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성별 격차 원인분석에 따라 성평등 조치를 위한 개선안을 마련함

○ 성평등 조치사항

- 사업 개선안 : 2017년 농기계 교육훈련과정에 여성 맞춤형 농기계훈련과정 별도 신설

○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 내용 : 여성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소형 농기계 구입을 통한 프로그램 운영

- 사업 개선안 완전이행 : '2017년 여성친화형 농기계 교육 추진계획'(제주농업기술센터-7966(2017.6.5))에 근거하여, 여성농업인 농업노동 부담 완화 및 농작업 참여율 제고를 위한 교육과정 신설
 - 교육내용 : 여성 교육생 맞춤형 소형트랙터, 운반차 등 여성친화형 농기계 운전 실습
 - 추진결과 : 1기(교육인원 21명, 수료인원 20명), 2기(교육인원 21명, 수료인원 21명)
 - 추진성과 : 수요자 중심의 부서 핵심과제로 추진하여 제주도내 농업기술센터 간 교류를 통해 다른 센터에서도 유사한 교육과정을 고려하는 등 파급력이 나타남

※ 담당자의 적극적 의지가 반영된 교육 운영 결과, 이 교육과정을 수강했던 여성농업인은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칭찬합시다' 코너**에 과정을 들은 후기를 게재할 만큼 참가자의 만족도가 높음

※ 김○○님 글 발췌

전직 호텔리어에서 **농업으로 뛰어들**지 **어언 15년이 되고 있지만 여자라서** 그리고 여자니까 몰라도 되고 모를 수밖에 없던 농업의 많은 어려움들이 많은 기관의 교육프로그램들을 통해 하나씩 제 머리와 제 손에 익숙하게 자리 잡고 있었지만 **가장 어렵고 두려웠던 농기계 작동법과 특히 동력분무기 고장 시 응급 대처 또는 수리방법**에 대해 이번 제주농업기술원 농기계안전교육을 통해 제대로 배운 것 같아서 너무 뿌듯합니다. <중략> 지금 총 3대의 동력분무기를 해체하고 조립하며 농기계안전교육센터에서 배웠던 **트랙터운전, 미니굴삭기작동법, 관리기사용법, 파쇄기상하차운반법** 등 교육을 받기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많은 농기계들이 지금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사용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 과제담당자 인터뷰

“**농기계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 신청할 수** 있다. 남성으로 한정해서 신청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성에게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을 작년에 듣고는 뒤로 빠져서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여성들이 생각이 났다. 여성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2016년부터 여성 맞춤형 교육을 개발하고 진행을 하고 있다. 이전에 여성가족연구원에서 연구한 주제가 있다.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였는데 그 논문을 보고 많이 참고가 되었다...여성친화형 교육과정은 미니트렉터, 동력분무기 등 조작이 쉽고 가벼운 그러면서도 농사에 꼭 필요한 기계를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했다. 금년에는 이 사업을 부서핵심과제로 선정하고 우리 부서 사업 중 가장 중점을 두고 진행하고 있다. 꼭 필요한 사업이고 수요자 중심으로 하게 되어서 기쁘다... (대면)컨설팅을 받을 때 개선안을 받아 이 과정을 기획하였고 이후에는 좋은 개선안으로 인정받았다. 더 잘하고 싶은 마음도 있다.”

○ 관련 사진

성별영향분석평가 이전	성별영향분석평가 이후
크고 조작레버가 많고 사용하기 어려운 농기계	여성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크기가 작고 조작이 간단한 농기계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농업기술센터 내부 협조자료

나) 문화유적지체험 프로그램 운영(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문화재부)

- 사업 개요 : 제주 목관아 삼양동유적 등 도심 속 문화유적지 답사를 통해 청소년 세대에게 제주의 고유한 역사와 소중한 문화유산에 대한 생생한 체험 등 문화체험 기회제공을 제공하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임
- 청소년 참여 비중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 다양한 체험 문화 프로그램 자체가 전통적 성별고정관념이 반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사업 추진이 필요함

○ 성평등 조치사항

- 사업 개선안
 -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한 매월 친절교육 및 직무연찬 지속 시행
 - 2017년 프로그램 운영 시 남성어린이, 여성어린이 선호 프로그램 개발 및 학부모 참여로 가족단위 프로그램 개발 실시

○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 내용 : 성별고정관념 개선한 문화유산 체험프로그램 운영

- 사업 개선안

-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한 매월 1회 친절교육 및 직무연찬 실시
- 문화유적지 관람객 대상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
(내용: 10대~60대 이상 연령별, 거주 지역별, 직업별, 방문이유, 재방문의향 등)
- 문화유적지 어린이 및 가족 참여프로그램 운영 : ‘어린이 역사유적 기행’

※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를 포함한 모든 관련 프로그램을 성인지적으로 추진

○ 공무원 인터뷰

“바로 옆의 초등학교와 업무 협약하여 함께 하고 있다. 수문장 그리고 과거시험을 하고 있다.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과거시험 등을 보도록 한다. 남녀를 동등하게 바라보는 사업이다...이 업무를 이곳에 와서 바로 맡았고 3년째 연속으로 업무를 하고 있다. 3년 계속 하다 보니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비롯해서 사업의 연속성을 가질 수 있어서 좋고, 효과성을 가질 수 있었다...이 사업은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사업이지만 예산이 900만원 정도이다. 그런데 내가 맡고 있는 전체 사업이 10여개 예산이 2억여원인데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영향으로 전체 사업 모두를 이러한 관점(성인지적 관점)을 가지고 하고 있다. 이런 관점이 스스로에게 내면화되었다고 느낀다.”

○ 관련 사진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문화재부 내부 협조자료

다) 자전거타기 이용활성화 사업(제주시 도시재생과,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 사업 개요 : 공공자전거 규격이 일반 성인의 신체조건에 맞춰져 있어서 여성의 승·하차 및 소지품 수납 시 불편하여 이용률이 낮아 성별 신체적 차이를 고려하여 여성 장바구니 자전거 구입 비율 증대를 통해 자전거타기 이용을 활성화하는 사업임

○ 성평등 조치사항

- 예산 개선안

- 성별 신체적 차이 고려하여 여성과 아동용 자전거 구입 비율 증대
- 자전거이용활성화 정책에 따른 안전한 자전거 타기 문화 환경 개선(시민 자전거보험 가입 및 자전거도로 정비)

- 사업 개선안

- 초·중 자전거이용활성화 프로그램 교육 시 남성과 여성이 공존하는 자전거 문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교육
- 이용자 만족도 체크(2~3개)를 통한 지속적 개선안 마련 계획

○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 내용 : 성별 신체적 차이 반영한 수혜율 성형평성 고려

- 예산 개선안 완전이행

- 성별 신체적 차이 고려하여 여성용 장바구니 자전거 5대 구입(예산 1,925천원)
- 안전한 자전거 타기 문화 환경을 위한 ‘제주시민 자전거보험 가입’(예산 118,396천원)
- 2017년 생활권역형 자전거도로 정비(예산 178,832천원)

- 사업 개선안 완전이행

- 초·중 자전거이용활성화 프로그램 교육 시 남성과 여성이 공존하는 자전거 안전교육 실시(16회, 893명 이수, '17년 9월말 기준)
- 지속적 개선안 마련을 위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토대로 '18년도 지속 반영

○ 과제담당자 인터뷰

“장바구니를 설치한 자전거 이용률이 높아지는걸 보고 뿌듯함을 느끼면서 동시

에 ‘이런 부분들이 사소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부분에 속하는구나’하고 새삼 깨달았다. 성별의 차이를 알아봄으로써 성평등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고, 인식이 조금은 바뀌는 듯한 생각이 든 것만으로도 성장한 것 같다. 그래서 이런 업무를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공무원들의 인식, 성평등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나아가서는 소외계층이나 약자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개선되지 않을까 기대한다.”

○ 관련 사진

여성용 장바구니 자전거



찾아가는 자전거 타기 교육



제주시민 자전거보험

자전거 씽씽~ 안심하고 타게 마씽!

「제주시민 자전거보험」혜택 안내

● 보험가입 내용

- 피보험자 : 제주시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
- 보장기간 : 2016. 10. 14. ~ 2018. 4. 13.
- 보상요건 : 3만 이내로 정수해가 보장
- 가입절차 :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제주시민이면 자동 가입

● 보험가입 혜택

구분	보장 내용	보장 금액
자전거사고 사망	제주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500만원
자전거사고 후유장애	제주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
자전거사고 진단위보금	제주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지급 (최초 진단7일, 1회에 한해 지급)	· 진단 4주(28일)이상 20만원 · 진단 6주(35일)이상 30만원 · 진단 8주(42일)이상 40만원 · 진단 10주(49일)이상 50만원 · 진단 12주(56일)이상 60만원
자전거사고 입원위보금	제주시민이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고, 1주일(7일)이상 입원한 경우	추가 20만원
자전거사고 발발	제주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상해하여 확정판결로 판결을 부담하는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최고 2,000만원 한도
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제주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상해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만원 한도
자전거보험사고 처리지원금	제주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만15세미만자)의 상해를 입은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2월 3,000만원 한도

※ 단, 피보험자의 고의, 범죄행위, 상습수질, 정신질환, 강간 등 다른 지급제한
■ 2017. 4. 13. 발령한 사고는 사망, 후유장애 보상금액이 다릅니다.

○ 자전거사고요건?

-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 자전거를 운전하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 도로 주행중의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일은 급격하도 주원한 외래의 사고

● 보험금 청구

- 청구서를 작성시 다음의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 1. 증빙서류 : 보험청구서, 초진진료기록지, 진단서(전단주수입어약), 입퇴원확인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 2. 후유장애 : 장애인연금신청서(또는 치료제명), 다만 운동장애의 경우 JAMA의 장애인연금
- 3. 기타 필요 서류 : 보험사에 문의 바랍니다.
- (※ 보험금청구서 양식 : 제주시 도시재생과 홈페이지, 보험사 문의)

○ 문의 : 동부동계재생부(주) ☎ 02-475-8115 FAX 0505-181-5624
제주시 도시재생과 ☎ 064-728-3531-3554

Jeju 제주시 도시재생과

자료: 제주시 도시재생과 내부 협조자료

라) 아라종합사회복지관 야간보호사업(제주시 주민복지과, 사회복지 분야)

○ 사업 개요 : 한부모 및 저소득 가정 등 보호자의 귀가로 방임되는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야간보호를 통해서 건강한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임

- 수혜자 비중이 높진 않지만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선호도를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프로그램별 성별 분리통계를 구축하고 제주동부청소년 경찰학교와 연계하여 아동폭력 및 성추행 예방교육 등을 통해 대상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이 필요

○ 성평등 조치사항

- 사업 개선안
 - 대상 아동·청소년들의 선호도를 반영한 프로그램 개선(미술교실 개설)
 - 참여자들이 프로그램에 집중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설
 - 마켓데이 : 평소 아동 및 청소년이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할 시 스티커를 지급하여, 마켓데이에는 스티커로 학용품 등과 교환하는 프로그램
 - 프로그램별 성별분리 통계 구축, 아동폭력·성추행 예방교육 강화 및 성평등의식 개선 교육 실시

○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 내용 : 아동·청소년 선호도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 및 성평등 의식 함양

- 사업 개선안 완전이행
 - 대상 아동·청소년 선호도를 반영하여 '2017년 드림하이 프로그램 내 미술교실 운영
 - 참여자들이 프로그램에 집중하여 참여할 수 있는 '마켓데이' 개설하여 운영
 - ※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1, 2, 3등 대상으로만 선물 지급
 - 프로그램별 성별분리 통계 구축, 아동폭력·성추행 예방교육, 성평등 교육 실시

○ 과제담당자 인터뷰

“신규공무원으로 9월 신규발령으로 이 사업을 맡게 되었다. 발령받자마자 컨설팅과 교육이 있어서 알게 되었고 컨설팅을 받으면서 많이 배웠다... 아동청소년의 선호도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프로그램별 성별 분리통계 구축, 아동폭력 성추행예방교육 강화 및 성평등 개선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개선안이었다. 본인이 오기 전에 분리통계 등은 일부 진행되어 있었고 성폭력예방교육은 제주동부청소년 경찰학교를 통하여 진행하였다. 개선안을 이행하기 위하여 복지관과 접촉하는 등 여러 가지로 노력했다...공무원 공부를 할 때 성인지예산과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전체적

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대도민 서비스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다른 사업을 진행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 관련 사진



자료: 제주시 주민복지과 내부 협조자료

마) 안덕산방도서관 프로그램 운영(서귀포시 안덕산방도서관, 문화체육관광)

- 사업 개요 : 독서진흥문화프로그램 활성화로 농어촌지역 독서 문화활동 지원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와 삶의 질 향상 및 지역사회 프로그램으로 유입인구 지역 정착 지원
- 성인대상 프로그램의 경우 남성 도서관 이용 및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도, 생업 종사에 따른 직장인의 주간 프로그램 제한 등 이유로 여성 수혜율 비중이 높은 편임.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성인대상 수요 파악 후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및 직장인 시간대 고려한 야간, 주말 프로그램 개설과 관내 청년회 협력은 물론 농·어촌 지역으로 열악한 교육환경을 고려하여 국제학교(NLCS) 활용한 영어교육 프로그램 운영

○ 성평등 조치사항

- 사업 개선안

- 남성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설
- 선호프로그램 사전 조사 및 결과 반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
- 가족단위의 프로그램 개설로 남녀 공동참여 및 다양한 연령대의 참여 유도

- 직장인을 위한 야간 프로그램, 주말 프로그램 확대 운영
- 안덕면 관내 청년회 등 단체협력 프로그램 개설로 남성참여 확대

○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 내용 : 지역 인적 자원 활용 및 수요조사 결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사업 개선안 완전이행
- ‘2017년 안덕산방도서관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독서교실, 야간 인문학, 재능 기부(NLCS 청소년)프로그램, 도서관 문화학교, 지역사회 협력 프로그램 등 운영

○ 공무원 인터뷰

“관내 청년회 등 단체 협력 프로그램의 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야간 주말 프로그램 운영 및 인문고전 탐방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남성들의 참여를 유도했다. 지역의 NLCS를 활용하여 그 학교 학생들과 영어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시골이다 보니 영어학원도 없을뿐더러 전문교육에 소외된 지역 아동들에게 좋은 기회를 주고 있다. 하부루타교육도 그 중 하나이다…주말에 아빠가 데려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점을 착안하여 가족프로그램도 만들어 아빠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숨어 있지만 홍보에 따라 참여도가 달라지는 것을 볼 때 힘들지만 보람을 느끼고 있다…이런 업무는 나의 성평등에 대한 생각을 새롭게 하고 소외계층을 한 번 더 찾아내는데 노력할 수 있는 힘을 주고 인식개선에 많은 영향을 줄 것 같다.”

○ 관련 사진





자료: 서귀포시 안덕산방도서관 내부 협조자료

바) 서귀포시 건축포럼(서귀포시 건축과, 환경 분야)

- 사업 개요 : 건축물은 도시경관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건축물은 반영구적이란 점에서 '시민이 도시를 바꾼다'는 일환으로 민간 주도의 건축포럼 활동을 통해 서귀포다움 추진 및 자발적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한 “도시의 주인되기” 사업 추진
 - 다양한 분야에 성인지적이고 인문학적 감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건축포럼 운영 위원으로 여성학자 및 디자이너, 연구원 등 여성위원들을 위촉

○ 성평등 조치사항

- 사업 개선안

- 서귀포 건축포럼 운영위원 여성참여율 제고 위해 건축포럼 운영위원 현황(8명, 여성 위원 2명/남성위원 8명)을 건축포럼의 내용 성인지성 구성 시 양성평등위원 및 여성 학자 포함, 여성의 섬세함이 요구되는 디자이너 추가 포함 예정

○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 내용 : 성인지적 도시공간 조성을 위한 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 참여 노력

- 사업 개선안 완전이행

- 건축포럼 위원회 구성(위원장 1명(여성학자) 포함 총 12명, 여성 3명/남성 9명)

○ 공무원 인터뷰

“서귀포다움이라는 컨셉안에서 이루어진 사업이다. 건축포럼이라는 것이 한 분야의 것이 아니라 안전, 디자인, 도시계획 등 다양한 분야의 것을 담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컨설팅을 통하여 건축 포럼 운영에 운영위원으로 여성위원들을 위촉하고 여성학자 및 디자이너 연구원 등 여성참여율을 높였다. 여성학자인 위원장을 통하여 인문학적 감수성을 반영할 수 있었고, 경관을 바라보는 데에 있어서도 여성의 섬세한 시선도 도움이 되었다…미리부터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염두에 두고 처음부터 세팅되었던 사업이라서 이행점검 자료를 따로 만들지 않았다. 기존의 운영안을 그대로 제출하였고 그것으로 충분히 이행점검자료가 되었다. 성별영향분석평가가 다들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처음부터 기획되면 어렵지 않다. 그런 부분이 좀 더 활성화되면 좋겠다. 본인이 근무한지 10년이 넘는 고참 공무원인 것도 영향을 미쳤다. 아무래도 개선안을 반영하는 데에 생각의 폭이 넓고 어떤 방식으로 반영해야 할지를 알 수 있었다.”

○ 관련 사진

위원 추가 위촉(2016.11.)	건축인문학 강좌(2017.2.28)
	
건축포럼, 건축과/건설과/도시과, 용역업체 회의	새로운 시각/발상에서 서귀포 경관 논의
	

자료: 서귀포시 건축과 내부 협조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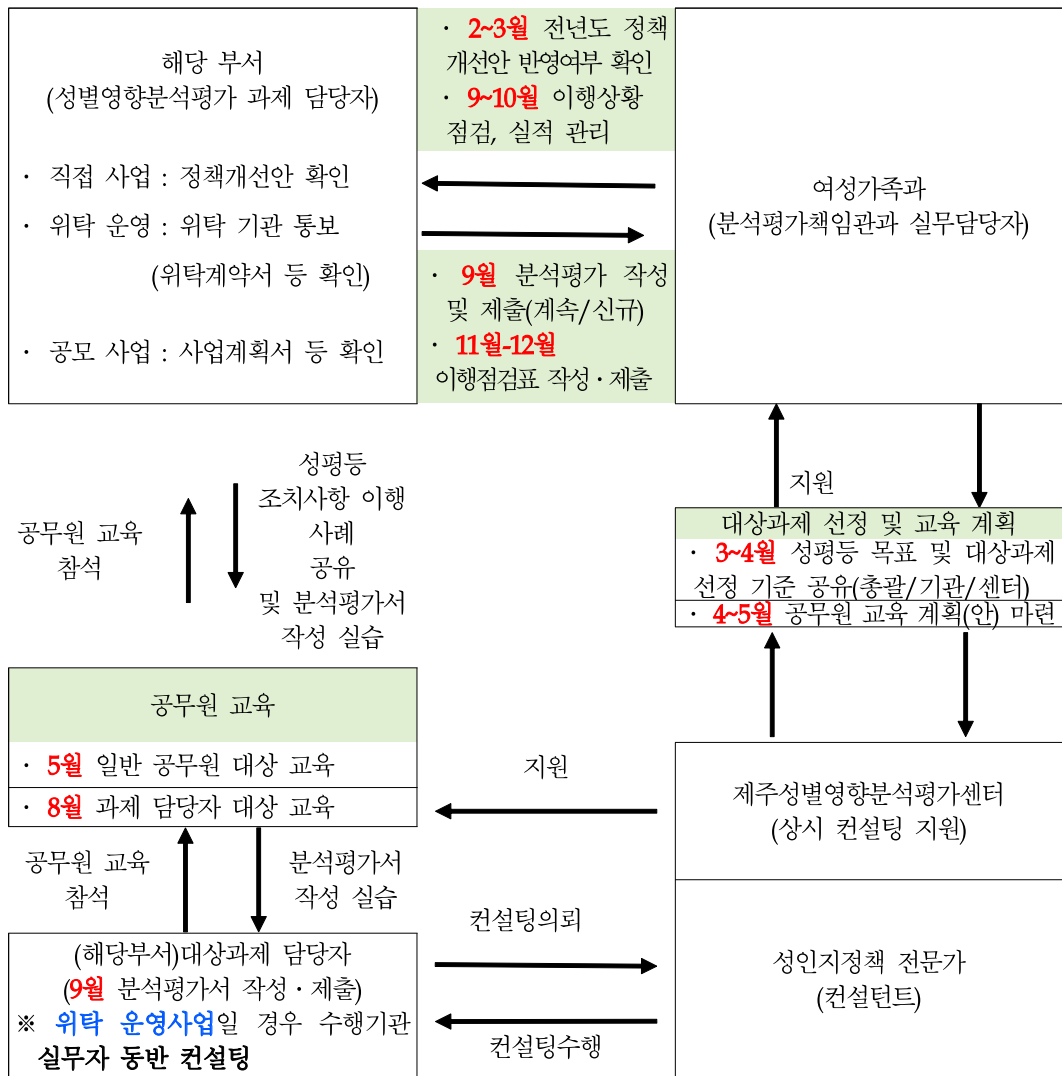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효과 제고 방안

1. 이행점검 과정의 체계화
2. 성별영향분석평가 기관·총괄 담당자 특별역량강화 지원
3. 사례 및 실습 중심의 공무원 성(性)인지 교육 운영 체계화
4.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 사례집 등 홍보 강화
5. 컨설팅 효과 제고를 위한 매뉴얼 개발 및 역량강화

1. 이행점검 과정의 체계화

- 상반기 이행점검 알림 공문을 통한 본인 담당 사업에 대한 인지 및 실행 동력 부여
- 하반기 이행점검 실시를 통해 실적 관리 및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정책 실효성 제고
- 기관·총괄담당자는 이행점검 알림 및 이행결과 증빙서류 접수, 제주여성가족연구원에서는 연구 진행

〈그림 5-1〉 성별영향분석평가 이행점검 추진 체계(안)



2. 성별영향분석평가 기관총괄담당자 특별역량강화 지원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개정 성별영향분석평가법(‘17.6.21.시행) 제14조에 근거하여 분석평가책임관과 실무담당자를 지정하여 분석평가 업무의 종합·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을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음(제14조2항6.)
- 정책개선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하는 업무는 총괄·기관 담당자 입장에서는 과중한 부담이 될 수 있고, 정책개선 이행 실적을 연말에 점검하려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애로를 겪을 수밖에 없음(손영숙 외, 2015). 객관성을 확보한 정책개선 실적 관리를 위한 한 가지 방법은 본 연구에서 활용한 ‘정책개선 이행 점검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임
- 또한 년 초에 제주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를 중심으로 도, 행정시 기관·총괄담당자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체계 및 일정,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예산 이해, 성별영향분석평가 업무관리자로서의 역할과 역량강화 등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
- 본 연구의 인터뷰 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 담당자는 기관·총괄 담당자는 물론 과제 담당자의 절반 정도는 1년 미만인 경우가 많고 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의 25.0% 정도 수준에 불과하지만 분석평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과제 담당자의 스토키 수준의 항의나 남들은 하지 않을 수도 있는 분석평가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불만 등을 들어 주고 감수하기에는 과중한 부담감을 느낄 수 있다는 점임
- 기관·총괄 담당자의 부담감을 줄이기 위한 대안 중 하나는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선정, 컨설팅 일정, 교육일정 등에 대해 총괄·기관 담당자와 제주성별영향분석센터 간의 추진 과정을 체계화하여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임

3. 사례 및 실습 중심의 공무원 성(性)인지 교육 운영 체계화

-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가장 큰 어려움이자 좋은 점은 이 제도가 일종의 자체 평가(손영숙 외, 2015)라는 사실에서 본 연구의 인터뷰 결과 ‘처음부터 기획되면 어렵지 않다는 응답처럼 과제 담당자 스스로 개선안을 찾아낸다면 자신이 담당하는 사업에 반영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임
-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업에 대한 분석평가서에 제시된 성평등 조치사항의 76.0%가 구체적으로 제시한 개선안으로 그에 따른 정책개선 이행률은 76.5%이

- 있음. 이는 분석평가 수행 과정에서 과제 담당자 교육과 컨설팅이 비교적 잘 이루어진 결과임. 그러나 성인지적이고 구체적인 개선안은 8.2%에 그쳐서 좋은 개선안이 도출되고 다음 해 사업계획에 반영되어 지속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부서의 과제 담당자 교육과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의 업무 인수인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공무원 대상의 성인지감수성교육,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예산 교육을 공무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례 및 실습 중심의 교육으로 업무의 일부분처럼 체계화하는 작업이 필요함
 - 또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예산 교육 이수 시 사회복지 점수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교육에 능동적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일 수 있음

4.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 사례집 등 홍보 강화

-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사례는 여성가족부의 '100가지 사례'와 연도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외에도 각 지역별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사례집의 형태도 있음(여성가족부, 2016; 인천여성가족재단, 2014)
- 공무원이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개선안의 필요성을 알고 찾아내기 위해서는 단순히 분석평가 전·후만 간략하게 비교하는 것보다는 정책개선안이 기획단계에서부터 실제 이루어지는 전 과정에 대해 들려주고 보여줄 수 있는 사례가 더 효과적일 것임
- 본 연구에서 발굴한 정책개선 우수사례(안)는 과제 담당자가 개선안을 인지하고 이행 점검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개선 결과를 정리하고 인터뷰를 통해 정책개선 수행 과정에 대한 생생한 경험담이 담긴 사례를 구성하여 향후 교육과 컨설팅에 활용한다면 공무원에게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의 효과를 설득하는 데 효과적일 것임
- 따라서 도내·외 정책개선 이행 사례집 공유를 통해 공무원의 성별영향분석평가서 작성 및 이행 효과를 제고할 뿐 아니라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한 정책개선 이행 사례를 라벨 표기하여 일반 시민까지도 체감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인식도 개선되고 정책 효과성까지 자연스럽게 파악시킬 수 있는 홍보 방법의 하나로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서귀포시 청사 로비나 주민들이 많이 오가는 공공시설물 로비에서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 사례 사진 자료를 활용한 전시회 등을 해 보는 것도 추가로 제안함

5. 컨설팅 효과 제고를 위한 매뉴얼 개발 및 역량강화

-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과정에서 컨설팅은 과제 담당 공무원이 성인지적으로 자신의 사업을 다시 볼 수 있는 시각을 열어 주고 현실성 있는 좋은 정책개선안을 찾아내서 자신의 사업에 반영하도록 설득하는 중요한 과정임
- 행정 경험이 많은 공무원에게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컨설팅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의 세부사업과 정책에 대해 공무원 버금가는 이해가 수반되어야 할 것임
- 본 연구의 인터뷰 과정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은 ‘부서 자체 사업’, ‘위탁기관 대행사업’, ‘공모사업’ 등 다양한 형태로 수행되고 있어서 일반적인 세부사업 하나로만 컨설팅을 하게 되면 이론과 현업의 차이가 생겨서 신뢰감을 줄 수 없을 것임
- 따라서 공무원을 설득시킬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컨설팅이 되기 위해서는 사업특징별 컨설팅 매뉴얼 개발 필요함. 즉, 부서 자체 사업의 경우, 위탁기관 대행사업의 경우, 특수 직렬의 사업특징별로 매뉴얼을 개발하여 정책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체계화된 컨설팅 방향 및 내용 구축이 필요함
- 또한 공무원에게 전문가로서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컨설턴트로서의 성인지 통합적 역량강화가 필요함. 이를 위해서 지속적인 성별영향분석평가, 여성친화도시 사업, 성인지예산, 성과주의 예산, 주민자치예산 등 통합적인 교육내용으로 컨설턴트 역량 강화 지원이 필요함

참고문헌

- 강경숙 · 김민선. 2016.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성과 분석 및 개선 방안」. 제주여성가족연구원.
- 김희경 · 조규진. 2013.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의 법률 및 법령 개선효과 분석: 2012년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 이후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제22권 제4호.
- 문옥희 · 박경애. 2014. 「전남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운영실태와 환류 활성화 방안」. 전남여성플라자.
- 손태주 · 김민선 · 강경숙. 2016. 「2016년 제주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운영사업 결과 보고서」. 여성가족부 ·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 손영숙 · 김선희 · 노경혜 · 이원형. 2015. 「2014년 경기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이행현황 분석」.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안태윤 · 손영숙 · 김선희. 2014. 「경기도 자치법규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환류현황 분석 및 매뉴얼 개발」.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여성가족부. 2017. 「2017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16. 「2016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16. 「공공정책을 변화시키는 성별영향분석평가 100가지 사례」. 여성가족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여성가족부. 2017. 「2016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여성가족부.
- 인천여성가족재단. 2014. 「인천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사례집」. 인천여성가족재단.
- 임우연 · 이향숙. 2016. 「충청남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효과 연구」.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
- 허미영. 2014. 「성별영향분석평가 모니터링 방안」.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부 록

1.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 점검표 예시 119
2. 면접 질문지(과제 담당자/기관총괄 담당자/전문가)
3. 대상과제 분야별(법령/계획/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반영계획

부록 1.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 점검표 예시

가. 기관 및 부서명: 축산과

문 1. 다음은 귀 부서의 2016년에 실시했던 성별영향분석평가서에 성평등 조치사항으로 제시한 내용입니다. 과제가 어느 정도 추진되었는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2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제9조에 근거하여 실적관리를 하고자 하오니 해당 사항에 체크해 주십시오.

부서명	사업명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 (정책개선 및 환류)		이행 여부
축산과	말산업 특성화대학 지원	법령 계획	- 향후 위원회 구성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원 위촉 - 사업계획 승인시 여성참여가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계획에 반영토록 주문	☐ 미이행(☞문2-1로 이동) ☐ 이행예정(☞문2-2로 이동) ☐ 일부이행(☞문2-3로 이동) ☐ 대체로 이행(☞문2-3로 이동) ☐ 완전이행(☞문2-3로 이동)
		사업 수행 계획	- 해외 말산업 선진사례 등 홍보를 통한 여성의 참여 확대 유도 - 사업 완료 시 성별 참여인원을 명시토록 개선	☐ 미이행(☞문2-1로 이동) ☐ 이행예정(☞문2-2로 이동) ☐ 일부이행(☞문2-3로 이동) ☐ 대체로 이행(☞문2-3로 이동) ☐ 완전이행(☞문2-3로 이동)

문 2. 이행 여부에 체크한 부분에 대한 질문에 응답해 주십시오.

2-1. 이행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2-2. 언제까지 이행할 계획입니까?

2-3. (일부이행/대체로이행/완전이행 체크) 관련된 사업계획서, 실적보고서, 관련 사진 등 증빙자료를 이행점검표와 함께 첨부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2. 면접 질문지

가. 과제 담당자

구 분	세 부 내 용
도입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 및 이행점검표 작성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장 좋았던 점은 어떤 것인가요?)
이행 점검	1. 올해 성평등 조치사항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면 어떤 것이 있나 요? (법적 근거, 성과 관리, 컨설팅, 담당역할, 추진일정, 업무부담, 인사이동 등) 2. 올해 성평등 조치사항(법령, 사업수행)의 이행 과정과 결과는 어떠했는 지 말씀해 주세요. (지난 해 성별격차원인 분석, 성평등 조치사항 및 항목별 이행 결과 점검, 내년 계획 반영 등) 3. 성별영향분석평가서 작성 및 개선사항 수행에 있어 어떠한 지원이 필요 한가요? (성인지교육, 평가서 작성 서면 컨설팅/대면 컨설팅, 정보제공, 사례 발굴 등)
정책 효과 제고 방안	1. 올해 성인지교육 및 컨설팅 교육을 받으셨다면 어떤 것들이 도움이 되었 나요? (제도이해, 성별요구도 분석, 성별격차원인 분석, 성평등 조치사항 발굴, 인식개선, 성과관리 등) 2. 향후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중점 지원 사업은 어떤 것이 되면 좋을까요? (평가서 작성 컨설팅, 과제선정, 예산서 작성 컨설팅, 정보제공, DB구축, 사례 발굴 등) 3. 성별영향분석평가 업무를 해보니 어떤 점이 기대되고, 어떤 점이 개선되 어야 할까요? (기대 정책의 성평등 수준 제고, 공무원 인식개선 등 개선 성과관리(BSC)에 포 함, 교육 및 컨설팅 등)

나. 기관총괄 담당자

구 분	세 부 내 용
도입	도/제주시/서귀포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업무 담당 관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장 좋았던 점은 어떤 것인가요?)
어려움 · 필요 지원 내용	1. 올해(예전) 성별영향분석평가 업무를 관리하면서 느낀 어려운 점, 보람된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전달체계, 제도이해, 교육 및 컨설팅 일정, 담당역할, 업무부담, 인사이동, 성과관리 등) 2. 성별영향분석평가 업무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어떠한 지원이 필요한가요? (교육 지원, 서면/대면 컨설팅 지원, 정보 제공 등)
정책 효과 제고 방안	1. 올해(예전) 진행한 성인지 교육 및 서면/대면 컨설팅 지원이 어떤 도움이 되었나요?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에 대한 이해, 평가서 작성, 성과관리 등) 2. 향후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중점 지원 사업은 어떤 것이 되면 좋을까요? (평가서 작성 컨설팅, 예산서 작성 컨설팅, 정보제공, DB구축, 사례 발굴 등) 3. 성별영향분석평가 업무를 해보니 어떤 점이 기대되고, 어떤 점이 개선되어야 할까요? (기대 정책의 성평등 수준 제고, 공무원 인식개선 등 개선 성과관리(BSC)에 포함, 교육 및 컨설팅 등)

다. 전문가

구 분	질 문 내 용
이행 점검 및 정책 효과 제고 방안	1. 성별영향분석평가 선정 과제에 대한 이행점검의 필요성 및 효과적 방법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 필요성 - 효과적 방법 2.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에서 주된 지원 사업은 어떤 것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 컨설팅(서면/대면/전화 등) - 교육(성인지교육/실습교육 등) 3. 지방정부 정책의 성평등 실현을 위해 현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의 문제점과 정책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 문제점 - 정책효과 제고방안
종합 의견	번거로우시겠지만, 지방정부(제주특별자치도)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 효과 제고 방안에 대한 종합적 의견을 반드시 적어주세요

3. 대상과제 분야별 검토의견 반영계획

가. 법령

연번	기관	법률명	개선 방향	주요 반영 계획	비고
1	투자 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특별개발우대사업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별 특성 (서식 의 성별 항목 기재)	주민번호를 생년월일로 바꿈직하고 성별 분리통계 생산 필요위해 서식에 대한 성별 구분 명시. 별지1호 서식 및 별지2호 서식 에 성별란 기재 반영	개선 (수용)
2	투자 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성별 특성 (서식 의 성별 항목 기재)	생년월일로 정비할 경우 성별분리 통계생 산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성별란 기재	개선 (수용)
3	투자 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토지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성별 특성 (서식 의 성별 항목 기재)	별지1호 서식에 대한 성별분리통계 생산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성별란 의 기재	개선 (수용)
4	디자인 건축 지적과	제주특별자치도 주거복지 조례	성별 균형 참여	양성평등기본법에 위촉직 위원일 경우 특 정성이 위촉직 위원 수 10분의 6을 초과하 지 아니하도록 한다.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정 필요	개선 (수용)
5	국제 자유도시 계획과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별 균형 참여	공동위원회 구성시 성별균형 고려 반영	개선 (수용)
6	경제 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인증 생산품 통합상표 관리 조례안	성별 균형 참여	제6조 위원회에 대해 성별 균형 참여가 명 시되지 않아 구성시 한쪽성에 불리할 수 있기에 성별 균형 참여 고려	개선 (수용)
7	정보화 담당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등 지원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성별 특성 (서식 의 성별 항목 기재)	서식에 대한 성별분리 통계 생산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성별란 기 재 반영	개선 (수용)
8	국제 자유도시 계획과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별 균형 참여	주민참여 독려할 수 있도록 성별균형 등 적극 조치 바랍(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규약 제4조 기준참조)	개선 불수용
9	여성가족 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성별 균형 참여	위원회 구성시 성별 균형 참여 고려	개선 (수용)
10	교통 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성별 균형 참여	제3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 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균형을 고려한다.	개선 (수용)

연번	기관	법률명	개선 방향	주요 반영 계획	비고
11	산림휴양 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성별 특성 (서식 의 성별 항목 기재)	성별 분리 통계 생산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성별란 기재 반영	개선 (수용)
12	보건 위생과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조례	성별 균형 참여	위원회 성별 고려하여 특정성이 10분의 6 이 넘지 않도록 함	개선 (수용)
13	보건 위생과	제주특별자치도립 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별 특성 (서식 의 성별 항목 기재)	서식 중 인적대상과 관련된 경우 모두 성별 기재. 통계생산을 위해 서식에 성별 구분 명시	개선 (수용)
14	보건 위생과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별 균형 참여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에 대한 성별 균형 참여 명시하여 적극적 조치 반영	개선 (수용)
15	평생 교육과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별 균형 참여	위원회 구성시 한쪽 성이 불리하지 않도록 명시	개선 (수용)
16	친환경 농정과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별 특성(서식 의 성별 항목 기재)	제개정 사항 중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성별 구분란 반영	개선 (수용)
17	자치 행정과	제주특별자치도 주민투표 조례	성별 특성 (서식 의 성별 항목 기재)	별지 서식에 대한 성별분리 통계 생산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성별란 의 기재 반영	개선 (수용)
18	도시 건설과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별고려 명시	제8조의3(도시계획시설중 유원지의 구조 및 설치기준 등) 1.주민 및 관광객을 위한 오락·휴양·편익·관광시설 등 연령과 성별의 구분없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고려할 것	개선 (수용)
19	도시 건설과	제주특별자치도 골재채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별 특성 (서식 의 성별 항목 기재)	제개정 사항 중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에 성별 구분이 이루어지지 않아, 성별 통계를 구축하지 못하도록 되었음 서식변경을통해성별통계구축할것을개선 의견으로제시함	개선 (수용)
20	도시 건설과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도로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별 특성 (서식 의 성별 항목 기재)	제개정 사항 중 별지 제1호 서식에 성별 구분이 이루어지지 않아, 성별 통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서식 개선	개선 (수용)

연번	기관	법률명	개선 방향	주요 반영 계획	비고
21	복지 청소년과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별 균형 참여, 성별 특성 (서식 의 성별 항목 기재)	-제6조(공공수련시설건립심의위원회)에 성 별 고려하여 위촉될 수 있도록 노력 -제개정사항 중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 호서식에 성별 구분을 명시하여 성별통 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개선	개선 (수용)
22	식품위에 특작과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육성 및 지원 조례	성별 균형 참여	제4조(향토음식육성위원회)에 성별 고려하 여 위촉될 수 있도록 고려	개선 (수용)
23	정보융합 담당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성별 특성 (서식 의 성별 항목 기재)	생년월일란에 성별 구분란을 추가하여 성 별 통계 구축 기반 마련	개선 (수용)
24	해양 산업과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별 특성 (서식 의 성별 항목 기재)	별지 제10호서식부터 제12호서식까지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하되, 성 별 구분란을 기재한다	자체
25	환경 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별 균형 참여	제5조의3(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 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자체
26	농업 기술원 기술지원 조정과	제주특별자치도 선도농업인육성기금 조례 일부 개정	성별 균형 참여 및 성별고려 명시	-제8조 ②의 위원회 구성시 성별 균형을 고 려하여 구성 고려 -제8조 ④ ‘3. 농업인단체 대표’의 경우, 대 표로만 설정되어 있어 위원회 구성시 참 여자가 한정될 수 있기에 ‘농업인 단체 관 계자’로 조정할 것을 개선	개선 (수용)
27	복지 청소년과	제주특별자치도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조례	성별 균형 참여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에 대 해 성별균형 고려	개선 (수용)
28	기업 통상과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성별 균형 참여	제14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심의) ④ 당연직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 기업지 원을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위원의 성별 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자체
29	디자인 건축 지적과	제주특별자치도부동산평 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성별 균형 참여	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성별 균형 참여 고려	개선 (수용)

연번	기관	법률명	개선 방향	주요 반영 계획	비고
30	방호 구조과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안	성별 특성 (서식 의 성별 항목 기재)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 서식의 경우,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성별 구분란을 기재하여 성별 통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	자체
31	방호 구조과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시설공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별 균형 참여	제14조(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 여 5명 이상 9명 이하로 성별 균형을 고려 하여 구성한다.	자체
32	도시 건설과	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시행규칙	성별 특성 (서식 의 성별 항목 기재)	[서식]에 성별분리 통계 생산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서식 2호, 서식 3 호 성별 구분란 기재.	개선 (수용)
33	보건 위생과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성별고려 명시	공공보건의료 자원 실적 통계, 지역 내 성 별·연령별 등 공공보건의료 이용현황, 실 태에 관한 사항 구축 및 모니터링	개선 (수용)
34	문화 정책과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성별 균형 참여	제8조(제주어보전육성위원회 설치)에 대해 성별 균형 참여가 명시되지 않아, 구성시 한쪽 성에 불리할 수 있기에 개선안 제시	개선 (수용)
35	환경 자산물 관리과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성별 균형 참여	제37조(지하수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제주특별법 제385조에 따라 도지사 소속으 로 두는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 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 려하여 구성	개선 (수용)
36	공항확충 지원과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성별 특성 (서식 의 성별 항목 기재)	제개정 조항에 대한 개선사항 없음. 다만, [서식 제1호], [서식 제2호]에 대한 성별분 리 통계 생산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성별란을 기재	개선 (수용)
37	카지노 감독과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및 감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성별 특성 (서식 의 성별 항목 기재)	성별 특성, 성별 고정관념, 성별 균형 참여 등 해당조항 없으나, 서식 12호, 14호에 대 해 성별란을 기입필요	개선 (수용)
38	청렴 감찰관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행동강령	성별 특성 (서식 의 성별 항목 기재)	생년월일란에 성별 구분란을 추가하여 성 별 통계 구축 기반 마련	개선 (수용)
39	민속자연 사박물관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 운영 조례	서식에 대한 성별란 기재 되지 않음	성별특성, 성별 고정관념, 성별 균형 참여 중 성별 특성에 대해 고려할 수 있도록 서 식에 성별란 고려하여 향후 통계나 실태조 사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자체

나. 계획

연번	부서	분야	계획명	주요 반영 계획	비고
1	보건 위생과	보건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발전 계획	○ 계획 및 사업 개선 -보건기본계획 현황 및 조사 자료는 성별분리 통계 제시 필요 -질환의 종류는 성별, 연령별에 따라 다르며 이용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세부사업 추진 시 성별, 연령별 분리하여 기초자료 생성할 수 있도록 운영관리 필요	개선 (수용)
2	교통 안전과	수송 및 교통	지방대중교통 계획	○ 사업 반영 계획 -실태조사시 그룹(성별, 연령별, 신체적 특성 등)을 고려한 통계의 구축 필요 -이동장애요소를 고려한 사업 추진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성별 및 지역별 구분은 필요	자체
3	디자인 건축 지적과	국토 및 지역 개발	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 법령 반영 계획 -조례 개정 시 심의위원회 구성 등 한쪽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성별 고려(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정책결정과정 참여) ○ 사업 반영 계획 -다양한 계층의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시범사업 평가를 통한 지속적 환류방안 마련	자체
4	해운항만 물류과	수송 및 교통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물류 기본계획	○ 사업 반영 계획 -비전통직종인 물류산업에 여성의 점진적인 진출확대로 여성의 취업영역 확대 -물류분야 여성종사자의 직무능력 향상과 학교와의 연계 등 여학생의 전문분야 능력개발로 고용추진 및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네트워크 구축에 따른 전문성 제고 -전반적인 성별 통계 데이터 구축하여 기초자료로 활용 -교육 대상의 확대 필요. 물류종사자로만 한정하고 있어 실질적 예산대비 수혜인원이 축소되지 않는 지 점검. 따라서 교육 대상들의 확대 필요	자체

다. 사업

1) 제주특별자치도청

	부서명	사업명	주요 반영 계획	비고
1	축산과	말산업 특성화대학 지원	○ 법령개선 -위원회 구성시 성별 균형을 고려할 수 있도록 명시 필요 -교육 참여시, 특정성(性)을 저해하지 않는 것을 지침에 명시 ○ 사업내용·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 -교육 참여시, 성별균형을 고려한 홍보방식다양화 -성별통계구축	개선 (수용)
2	문화유적 관리과	문화유적지 체험프로그램 운영	○ 사업내용·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만족도 조사 실시 -성별요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확대 등	개선 (수용)
3	세계유산 본부	세계자연유산해설사 운영	○ 사업내용·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 -아동 및 장애인 등 편의와 안전시설 설치 필요 -해설사 서비스 이용 만족도 조사 필요	개선 (수용)
4	경제 정책과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종합아카데미 사업	○ 사업내용·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 -유형별, 업종별, 계층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 격차 발생시 이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 마련 -사회적 경제 기업가, 경영자, 실무자, 미래인재 양성과정 교육 등 사업추진시 참여자의 특성별, 성별 통계 자료 구축, 신청서 등의 서식·성별란 반영 -유형별, 업종별, 계층별 특성을 고려한 홍보방식 다양화 -사업 계층에서 취약계층(경력단절여성, 다문화 결혼이민자, 청년등)인 경우에 다양한 수혜자의 특성이 파악되기 때문에 참여를 독려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계층별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 단체들에 대한 홍보를 다각화할 필요 있음(이주민 센터, 학교내 홍보, 주민자치센터 등)	개선 (수용)
5	친환경 농정과	후계농업경영인 교육	○ 사업내용·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 -여성농어민이 주로 가입되어 있는 단체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여성후계자들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교과목 신설 -부부가 공동으로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부부가 교육 함께 참여	개선 (수용)
6	친환경 농정과	친환경농업육성 교육지원사업	○ 사업내용·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 -친환경농업 육성 교육지원 사업 부부 프로그램 신설 -성별통계의 구축(농가 및 부부대상 교육 등 참가시, 참가 신청란 성별란 반영)	개선 (수용)
7	노인장애	장애학생 취업연수	○ 사업내용·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	개선

	부서명	사업명	주요 반영 계획	비고
	인복지과	프로그램 운영	-향후 실제 참여자들의 교육에 대한 평가(만족도 및 성별 요구도 조사)를 통해 개선사항을 점검	(수용)
8	방호 구조과	의용소방대 전문화 교육	○ 사업내용·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 -의용소방대 교육운영 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사업계획 시 기초 자료로 활용하도록 함 -2017년도까지 사업을 추진하여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사업추진에 반영하도록 함.	자체
9	문화 정책과	제주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	○ 사업내용·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 -프로그램 운영계획에 성별 교육 수혜율 집계 규정(공모시 이러한 부분 명시) -프로그램 운영계획에 성(性)이 교육 참여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규정	개선 (일부 수용)
10	디자인전 촉지적과	제주형 공공건축전문가 운영	○ 사업내용·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 -분석결과, 도내 건축 전문가인력풀 부족. 특히 여성건축전문가가 남성에 비해 적은 현실임 -추후 선정기준 등 고려하여 여성건축전문가를 우선 위촉하며 여성비율 30%이상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함(성인지예산 등 연계됨)	자체
11	자치 경찰단	주민봉사대원 운영	○ 사업내용·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 -남성 참여율 '16년 대비(27.7%) '17년에는(30%) 상향 조정 -남성·여성이 함께하는 봉사 분위기 조성 -양성평등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봉사의 질 향상 -자영업자(남성)대한 자원봉사 및 주민봉사대 홍보로 참여 독려	자체
12	문화 정책과	문화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 사업내용·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 -부족한 문화 환경에 대한 성별요구 차이를 반영하여 양질의 콘텐츠 개발과 접근성 고려한 찾아가는 방문교육 지원 확대 추진 등 -성별분리통계 생산을 위해 성별, 연령별, 지역별 분리된 신청서 활용	개선 (수용)
13	인재 개발원	도민 정보화 교육 운영	○ 반영완료 사항 -정보화 교육 참여에서 젊은 층의 참여가 낮은 편이기에 교육시간 등을 젊은층이 이용할 수 있는 주말단기 시간대로 편성 홍보하여 참여율을 높이고 있음 -교육에 참가하지 못하는 교육신청자들에게 교육 참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타 기관 연계 홍보 ○ 사업내용·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 -주말단기반을 구성하여 직장인 및 젊은층에게 정보화 교육 참여율 확대 보급	자체
14	평생 교육과	산학협력선도 전문대학 육성사업	○ 사업내용·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 -현장실습 참가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자체

	부서명	사업명	주요 반영 계획	비고
			-성별간 현장실습에 대한 만족도에서 차이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부분 때문에 만족도 차이가 있는지 등 조사결과를 분석하여 추후 사업계획에 반영	
15	미래 에너지과	현장기반형 에너지융복합 전문기업 인력양성 사업	○ 사업내용·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 -주요 대상 기업의 여성 비율이 16%로 나타나며 이는 디자인 업무 경향이 많은 것으로 판단됨. 현재까지 진행된 교육의 경우 디자인 보다는 기술적 분석/설계 위주의 교육이었음. 향후 여성 기술직군의 구성이 많은 디자인 업무 교육을 추가로 개설하겠음 -교육프로그램 모집과 선발과정에 성별과 관계없이 교육생 모집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교육생 수요인원이 계획대비 초과할 경우 여성의 참여율 제고를 위하여 여성할당제(15~20%) 범위에서 정원의 수강생으로 선발	자체
16	기술지원 조정과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운영	○ 사업내용·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 -여성농업인의 교육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홍보 강화	개선 (수용)
17	균형 발전과	마을발전 읍·면·동 단위 워크숍 개최	○ 법령(지침 포함) 반영 계획 -관련 조례에 의한 마을만들기사업 지원시 여성참여에 따른 가점 및 선정혜택 부여 등 검토 ○ 예산 반영 계획 -성별에 따른 차별이 없는 사업 예산반영 검토 ○ 사업내용·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시 부녀회 등 여성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사업추진의 다양성 확보	자체
18	균형 발전과	찾아가는 정착주민 제주이해하기 프로그램 운영	○ 사업내용·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 -“제주이해하기” 사업내용에 제주어 교육뿐 아니라 정책 수혜자의 요구 반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다각화 필요 예를 들어 선주민 이주민이 함께 참여하고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 -참가자들의 수요를 파악할 수 있는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추진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개선 (수용)
19	체육 진흥과	종목별 생활체육교실 운영	○ 법령(지침 포함) 반영 계획 -종목별 생활체육교실 운영 사업계획 수립시 성별 교육 수혜율 권고치 마련 -성별 참여 가능 종목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 실시 ○ 예산 반영 계획 -법령(지침 포함) 등 개선 후 성별 요구도에 따른 예산 배분 ○ 사업내용·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 -사업 운영시 프로그램에 대한 성별 통계 자료 작성 -여성 참여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시간 조정 -사업 계획 수립과 함께 도민 홍보 방법의 다양화 -프로그램 종료시 참여자 만족도 조사 실시	자체
20	동부농업	농업인 전문교육	○ 법령(지침 포함) 반영 계획	자체

	부서명	사업명	주요 반영 계획	비고
	기술센터		-향후 사업추진시 부부참여 및 가족동반 참여독려를 위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임	
21	도립 미술관	제주도립미술관 미술관 대학	○ 사업내용·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 -사업운영의 시간대 조정, 가족참여 프로그램운영	개선 (수용)
22	해양수산 자원과	최고해양수산업 경영자과정	○ 사업내용·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 -교육 시간 및 근무시간등을 고려한 교육시간 필요 -모집 및 홍보방법의 개선 -교육실시의 만족도 조사를 통한 교육 평가 및 개선	자체
23	정보융합 담당관	고령인 정보화교육	○ 사업내용·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 -만족도 조사 실시 -교육참가자 항목(성별, 연령, 교육경험) -조사항목(교육시간, 교육방식, 교육효과, 장소, 홍보 등)	개선 (수용)
24	산림 휴양과	산림기능인 교육 훈련	○ 법령(지침 포함) 반영 계획 -산림교육 공고시 많은 여성이 참여할수 있도록 모집 공고 요강 변경 필요 ○ 예산 반영 계획 -여성 교육생을 위한 소형 기계톱 등 구입 확대 ○ 사업내용·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 -각종 산림사업은 근무형태상 각종 산림작업시 근로자 안전사고 발생 확률이 높고, 별목 작업은 극한 노동에 해당 되므로 여성이 산림기능인이 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산림기능인 교육과정 개설시 여성인원이 확대할 수 있는 숲 가꾸기 및 산림사업설계 등에 대한 교육 확대 필요	자체
25	문화 정책과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공모	○ 법령(지침 포함) 반영 계획 -작은 도서관의 이용자에 대한 설문조사 등 통계자료 확보 ○ 예산 반영 계획 -공모계획에 의한 지원예산 반영추진 ○ 사업내용·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 -프로그램 운영 결과에 따른 만족도 조사 후 개선	자체
26	복지 청소년과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운영	○ 사업내용·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 -사업내용 2016년의 경우, 2015년 8회에서 7회로 방문횟수가 줄어들었으나, 방문이 어려운 추자도의 경우 1박2일로 행사진행을 예정했었음. 다만 방문당일 태풍의 영향으로 교통편(선박) 이용이 불가하여 당일 행사로 변경 시행 됨 -‘성별 수혜도’의 차이는 크지 않으나, 주민의 요구인 문화 공연(영화상영)을 반영하여 체육관 등 시설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 -‘양성평등’에 대한 교육을 접해 보지 못한 주민들(대다수 노인층)을 위해 양성평등과 관련한 영화나 공익광고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여성영화제 출판작 등 활용예정. -사전수요 조사 시, 수요조사 대상인 마을리장, 경로당 임	자체

	부서명	사업명	주요 반영 계획	비고
			원 등 대부분이 남성임에 따라, 부녀회 등 수요조사 대상에 여성을 추가하는 방안을 강구.	
27	민속자연사박물관	박물관 제주학아카데미 운영	○ 예산 반영 계획 -예산중액(서귀포시 지역에서 찾아가는 박물관 제주학아카데미 추가 실시) ○ 사업내용·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 -서귀포시에서도 개최(지역적 고려)	자체
28	복지청소년과	청소년지도자 역량 강화 사업 지원	○ 사업내용·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 -청소년 지도자 성별통계 구축, 사업추진시 성인지 교육과 정 편성 필요, 청소년 지도자 협력체계 구축	개선(수용)
29	소방정책과	범도민안전체험 한마당 운영	○ 사업내용·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 -‘성별통계’ 생산을 위해 참가자 성별, 연령별 파악할 수 있는 신청양식 활용 요구	개선(수용)
30	해양산업과	크루즈산업 전문인력 육성	○ 사업내용·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 -지침 등에 성별 요구 이용도 조사 등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 -크루즈전문인력 양성사업 참여자들의 교육에 대한 평가(만족도 및 성별 요구도 조사)를 통해 개선사항 점검	개선(수용)
31	자치행정과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정책 제안 세미나	○ 사업내용·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 -2017년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신규 모집시, 남성 비율을 높이고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에 대한 정책 홍보 강화	자체
32	자치행정과	전문자원봉사자 양성 아카데미	○ 예산 반영 계획 -남성 자원봉사자 수요 교육과정에 예산 확대 필요 ○ 사업내용·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 -남성 자원봉사자 수요 교육과정 확대 -남성 자원봉사 리더의 발굴, 육성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 참가자 모집 시 남성참가자 우선 선발 실시	자체
33	여성가족과	다문화가족 역량강화 사업	○ 사업내용·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 -실적보고 시 성별 통계자료가 산출될 수 있도록 공모 단계부터 구분통계 작성 -만족도 조사 또는 수요조사 결과를 프로그램에 반영	자체
34	생활환경과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	○ 법령(지침 포함) 반영 계획 - 녹색구매란 상품을 구입할 때 같은 용도의 다른 상품과 비교하여 환경과 건강에 끼치는 유해성이 적은 상품을 선택하는 것을 말하는데 일상생활에서 소비의 주체가 대부분 여성이다 보니 녹색제품에 대한 관심도와 행사개최 등 사업시행 시 여성참여도가 높음 - 이에 따라 남성들의 녹색제품에 대한 관심도와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ex. 남성 소비자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구성) 개발 필요	자체

	부서명	사업명	주요 반영 계획	비고
			○ 예산 반영 계획 - 남성, 여성을 대상으로 녹색제품에 대한 인식도 조사 등 분석을 바탕으로 남성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프로그램 (남성대상 인식전환 교육 등) 운영 등에 수반되는 예산배분 검토 ○ 사업내용·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 - 일부 프로그램(대학생 홍보 기자단 등) 참여자 모집 시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의 참여를 더욱 높일 수 있는 방안 강구	
35	해운항만 물류과	물류 전문인력 양성과정 개설지원	○ 법령(지침 포함) 반영 계획 - 지침에 교육대상의 확대, 성별통계 구축, 이용자 만족도 조사, 물류분야 여성종사자 직무능력 향상 과 고용촉진, 성별 통계 데이터 구축, 교육대상자확대, 홍보강화	개선 (수용)
36	환경 정책과	기후변화교육운영 지원	○ 법령(지침 포함) 반영 계획 - 환경관련 교육 내용이 주로 일상생활에서의 쓰레기 분리수거, 에너지 절약 등 남성보다는 여성들의 영역이라는 인식이 많음 - 교육의 목적이 생활태도 개선 등 계도의 목적이 강하고, 취업 등 직업과 관련성이 적어 남성의 호응이 적음 ○ 사업내용·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 - 성별 통계가 미구축으로 정확한 계획수립이 어려움에 따라, 향후 교육 시 성별 통계를 하도록 교육 기관에 지시 - 남성의 교육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개선된 교육운영(교육시간, 교육참여 형태, 교육내용 등) 계획 수립	자체
37	제주농업 기술센터	농기계 훈련사업	○ 사업내용·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 - 2017년 농기계 교육훈련과정에 여성 맞춤형 농기계훈련과정 별도 신설 예정	자체
38	평화 대외 협력과	평화아카데미 운영	○ 사업내용·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 - 남녀 구분 만족도 조사 실시 - 양성평등에 관한 주제로 강좌 운영	자체
39	환경 정책과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추진	○ 사업내용·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 - 참가자의 성별통계 구축, 이용자 만족도 조사지침 마련, 주말시간대를 고려한 가족참여 프로그램 개발	개선 (수용)
40	균형 발전과	귀농귀촌인 재능기부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 법령(지침 포함) 반영 계획 - 수요조사, 만족도조사(성별)를 통한 여성 참여율 독려 - 공동체 형성을 위한 선주민과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예산 반영 계획 - 제주에 정착하고 있는 귀농귀촌인과 선주민과의 정서적 공유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17년도 사업비 증액 (도비 40,000천원 33.3% 증액) ○ 사업내용·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 - 수요조사 및 만족도조사를 통한 분석으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내실화 도모	자체

	부서명	사업명	주요 반영 계획	비고
41	한라산 국립공원 관리소	자연환경해설사 운영	○ 사업내용·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 -성별에 따른 편의와 안전(야외 현장 관련 작업이 많은 특성상, 휴게시설, 화장실, 안전 등)을 고려한 시설관리 필요 -아동 및 장애인, 유모차를 동반한 가족, 임산부, 노약자 등 다양한 관람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 -자연환경 해설사 이용시 이용 편의 및 해설사 운영에 따른 이용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불편사항에 대한 점검 및 민원처리를 위한 노력필요	개선 (수용)
42	미래 에너지과	생활과학지도자과정 운영사업	○ 사업내용·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 -성별 수혜자의 요구를 파악할 수 있는 만족도 조사 실시 (성별 구분, 요구파악) -실생활의제주지역문제와연계된과학프로그램마련	개선 (수용)
43	기업 통상과	중소기업 창업 프로그램 운영	○ 사업내용·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 -이용자 만족도 조사 실시	개선 (기수용)
44	기업 통상과	지역특화 청년무역전문가 양성사업 (국가직접지원사업)	○ 사업내용·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 -본 종합 검토사항은 분석된 내용을 재점검하여 고지하는 것으로 혹시 고려하지 못한 사항이나 반영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기 위함	개선 (수용)
45	교통 안전과	버스정류소 안전조명 설치사업	○ 사업내용·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 -야간안전상의 우선순위 조사해서 순차적으로 개선할 필요 있음 -대중교통의 경우, 여성, 학생, 노인층의 경우 많이 사용함. -향후 개선할 곳의 야간 안전상의 우선순위(외지거나 주변 조명이 없어 어두운 경우등)조사해서 순차적으로 개선할 필요 있음	개선 (수용)
46	교통 안전과	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 시설개선 사업	○ 법령(지침 포함) 반영 계획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명시된 시설기준 개선 건의 (현행 보도 연석 15cm 이하 → 개선안 18~22cm 적합)	자체
47	환경자산 물관리과	제주올레 콜센터 운영	○ 사업내용·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 -사업수혜에서의 성별 특성 반영 완료 사항: 성별 통계 구축 및 안전대책 및 올레길 현장 교육 등 실시, 관련 사항 계획서 반영 -제주올레콜센터 전문상담사 4명이 올레여행객으로부터 전화 상담해오는 숙소, 식당, 올레 주변 행사문의, 안전대책 등 내용별로 성별통계 집계 실시 -현재 올레길 여행객 중 콜센터로 전화문의건수에 대한 성별통계로서 올레길의 특성상 여성여행객이 많으며 사업 대상 중 성별비율은 여성 45%, 남성 55%임 -콜센터 운영 초기에는 콜센터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인하여 남성비율이 낮았으나, 콜센터가 알려지기 시작하고 패스포트 관련문의가 증가하면서 남성비율이 증가 -2016 제주콜센터 운영 계획 반영 : 성인지 예산관련 콜센	자체

	부서명	사업명	주요 반영 계획	비고
			터 전화 문의 시 내용별(숙소, 식당, 올레 주변 행사 문의, 안전대책 등)/ 성별 통계 집계 -사)제주올레 협조 아래 콜센터 인력에 대한 제주올레 길 현장 교육 실시	
48	보건 위생과	광역치매센터운영	○ 사업내용·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 -치매인식개선 홍보대상이 여성에 편중되지 않도록 성평 등을 추구하는 새로운 형태로 치매인식 개선 캠페인 등 실시 -치매교육시 파트너 및 파트너플러스에 대한 성별분리 통계 제시하고 남성 파트너플러스 활동의 필요성에 대한 강조를 통해 남성의 비율을 확대 - 직장 동아리 및 남자 중고등학교 활용 -남성의 치매파트너 및 파트너플러스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교육과정 및 교육 형태 다양화 -도민 치매인식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보완	자체

자료: 2016년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결과보고

2) 제주시청

연번	부서명	사업명	주요 반영 계획	비고
1	제주 보건소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건강생활 실천사업)	○ 사업내용·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 -남성의 주 생활터인 직장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건강 사업장 만들기' 사업 발굴 추진 -월 1회 정기 건강관리 교육 -비만관리 위한 운동 프로그램 운영 : 6개월간(주 2~3회) -사업장 내 건강생활실천 환경 조성위한 '걷기 동아리' 구성 유도	자체
2	안전 총괄과	시민안전 종합계획 추진(지역안전지수향상 및 안전문화 활성화)	○ 사업내용·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 -생활안전교육에 있어서 성역할 고정관념이 강화되지 않도록 주의 필요(위기상황에서 여성과 어린이는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고, 남성의 경우 위기상황에서 과하게 반응하지 않도록 하여 위험에 노출되지 않을 수 있는 교육 실시)	자체
3	해양 수산과	도시민 어촌유치 프로그램	○ 사업내용·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 -프로그램 운영 시 성별 분리 통계 작성 -성별 격차 해소 및 어촌정착 관심 증대를 위한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조사 및 만족도 조사 실시	자체
4	문화 예술과	문화예술 활성화(제주문화원 문화대학 운영)	○ 사업내용·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 -만족도 조사를 통해 성별, 연령별 교육프로그램 요구사항 조사할 필요성이 있음	자체

연번	부서명	사업명	주요 반영 계획	비고
5	애월읍	읍행정기능활성화(문화의집 프로그램 운영)	○ 법령(지침 포함) 반영 계획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에는 남녀의 성별 요구도 및 형평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에 반영하는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음. - 따라서, 주민자치센터 및 문화의집 상/하반기 운영결과에 남녀의 참여율을 포함한 결과보고를 포함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 ○ 사업내용·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 -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 시 남녀의 성별 영향을 분석하는 내용의 조문을 조례에 추가하도록 개정 필요 -만족도 설문조사 시 남녀의 선호 프로그램을 발굴할 수 있도록 내용 개정이 필요하며, 특히 남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프로그램 발굴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아울러, 여성의 참여가 도드라지는 퓌르교실, 요가교실 등 이·미용 및 건강 프로그램 등은 주중에 편성하고, 남녀 또는 남자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은 주중 야간 또는 주말시간에 편성될 수 있도록 유도 -문화의집 근무자들의 가족사랑의 날(수요일, 금요일) 초과근무를 위해 총무과와 협의하여 초과근무 인정 필요 -사회문화적으로 고착화된 남녀의 역할기대에 따른 프로그램 외, 남녀가 같이 수강할 수 있는 프로그램 추가 개설 필요	자체
6	이도2동	문화의집 프로그램 운영	○ 법령(지침 포함) 반영 계획 - 자체 규정이나 규칙을 통해 프로그램 및 운영 계획이 공개될 수 있도록 하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 예산 반영 계획 - 프로그램 결정 시 성별 요구 반영을 토대로 시간대와 프로그램 유형들을 고려하여 운영 ○ 사업내용·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 - 남녀 및 다양한 계층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필요	자체
7	총무과	전문인력 양성 및 정감있는 조직인사 운영(공무원교육훈련강화-교육기관 공무원 위탁교육)	○ 예산 반영 계획 -교육기회의 공정한 제공을 위한 예산편성을 통하여 행정 능력의 편중 방지 ○ 사업내용·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 -하위직급을 포함한 모든 직원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제안·발굴 및 직원참여 유도	자체
8	조천읍	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문화강화 운영(조천읍도서관운영)	○ 예산 반영 계획 -남성 참여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프로그램 예산편성 비율을 높이는 것으로 반영 ○ 사업내용·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 -남학생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남성 상담자 비율을 높이거나, 남학생 친화적 프로그램 강사를 발굴 -프로그램 기획시 다양한 계층에 의견을 수렴하여 프로그	자체

연번	부서명	사업명	주요 반영 계획	비고
			램 개설	
9	안전 총괄과	민방위운영관리(실전체 험훈련 강사수당)	○ 사업내용·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 -여성지원민방위대 활성화 및 민방위대장(리통장)의 성비 균형 확보를 통해 민방위 교육의 여성 참여율을 높일 필 요가 있음.	자체
10	마을 활력과	농촌체험 프로그램 운영기반 조성사업	○ 사업내용·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 -평가위원의 성별비율을 균등하게 함으로서 평가시 한쪽 성향에 치우치지 않도록 사업추진	자체
11	경로 장애인 지원과	장애인·노숙인 복지시설지원 및 생활안정 도모(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운영지원)	○ 사업내용·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 -이미 성별, 장애유형·등급별 요구를 반영하여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으나 직접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음 -장애인의 취업불안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마련으로 정서적안정 지원	자체
12	환경 관리과	환경수도조성(생태관광 지역지정 육성사업)	○ 사업내용·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 -여성참여자의 근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생태 관광 해설 전문가 육성) 확대 -생태관광협의체 회의 여성의 참여율 확대 -생태탐방 프로그램 개발 등 각종 사업 참여자 성별분리 통계 생산	자체
13	공원 녹지과	도시공원조성 및 관리(공원화장실 리모델링)	○ 사업내용·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 -여성친화적이고 안전한 공간조성: 안전성(비상벨, 조명박 기), 편의성(기저귀교환대 등)	자체
14	환경 관리과	제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 회 사업추진	○ 사업내용·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 -보다 많은 학생들이 제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추진하 는 환경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찾아 가는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추진 -지구의 날 기념 행사이며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생활 실 천을 위한 지구환경축제 개최 시 보다 많은 시민과 관광 객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양호한 장소 또는 여러 장소에서 다양한 주제로 체험프로그램 추진	자체
15	연동	동행정운영 (문화의집관리운영)	○ 사업내용·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 -지역단체장 회의 시 의견 수렴 및 지역 남성을 한 설문조 사를 통해 남성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일정비율 개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기존에 고착화된 성별 고정관념에 기인하는 여성용/남성 용 프로그램 외에 남녀가 수강 할 수 필요가 있는 프로그 램도 추가 개설(예: 성평등인식교육, 남녀가 함께하는 목 공예공예 등)	자체
16	해양 수산과	해변 민간안전요원 인건비	○ 법령(지침 포함) 반영 계획 -민간안전요원 성별분리 통계를 위하여 안전요원 선발 후 남, 녀를 구별하여 안전요원 명단을 작성하고 안전요원 모집공고시 여성 비율을 정하여 선발 -해수욕장 운영기간 중 남, 녀 안전요원의 의견을 수렴하	자체

연번	부서명	사업명	주요 반영 계획	비고
			여 개선 방안 마련	
17	문화 예술과	문화기반시설 확충 (동부지역 문화센터 실시설계 용역)	○ 사업내용·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 -시설의 안전성과 접근성을 고려하여 설치될 수 있도록 용 역사업 과업지시서 내용 추가 -해당지역 주민대상 요구수렴 후 설계 반영	자체
18	도시 재생과	자전거타기이용활성화 사업(공공자전거 무인이용시스템 운영 관리)	○ 예산 반영 계획 -성별 신체적 차이 고려하여 여성과 이동용 자전거 구입 비율 증대 -이용자 만족도 체크(2-3개)를 통한 지속적 개선안 마련 계 획 -자전거이용활성화 정책에 따른 안전한 자전거 타기 문화 환경 개선(시민 자전거보험 가입 및 자전거도로 정비) ○ 사업내용·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 -초·중 자전거이용활성화 프로그램 교육 시 남성과 여성 이 공존하는 자전거 문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교육	자체
19	안전 총괄과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 법령(지침 포함) 반영 계획 -자율방재단 활동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서 이 뤄지는 것이므로 법령(지침) 등으로 여성 비율을 고정할 것이 아니라 사업운영방식 개선 등을 통하여 여성참여율 은 높이는 방안 마련 ○ 사업내용·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 -여성의 지역자율방재단 가입을 통한 지역사회활동 및 봉 사활동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현재 이뤄지고 있는 방 재활동 외에 여성 참여자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활동계 획을 제시하여 방재활동에 대한 인식 전환을 통한 여성 참여율 향상 도모(성별 맞춤형 교육 실시, 재난홍보 및 안 전문화캠페인 전개)	자체
20	우당 도서관	어린이 상설 프로그램 운영	○ 자체개선안 도출되지 않음. 원안동의사례로 수정되어야 함	자체 (원안 동의)
21	지역 경제과	중소기업 지원 (생활과학교실 운영)	○ 사업내용·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 -현재 제주대학교에서 진행하는 생활과학교실 프로그램은 남녀 학생 모두가 관심이 있어 하는 수업으로 편성되어 남녀학생의 참여비율의 차가 크게 나타나지 않음 -생활과학교실 강사로 이공계를 졸업하였지만 가정에서 쉬고 있는 가정주부 등을 채용함으로써 여성 일자리를 창출하는 동시에 교사비율을 남녀평등하게 고용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현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과 강사의 남녀성비차이 가 크게 나타나지 않으나 정확한 성별분리통계는 기존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다음연도 사업에서는 공모계획 및 결과보고서 등에 성별분리통계와 학생들의 수업 만족도 및 요구도 조사 등이 포함된다면 해당사업은 충분히 개	자체

연번	부서명	사업명	주요 반영 계획	비고
			선될 것으로 보임	
22	우당 도서관	우당실버대학운영	○ 사업내용·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 -어르신들의 경우 남, 녀 모두 신체적 약화와 경제적으로 여류롭지 못한 경우가 많아 이를 고려한 건강 프로그램과 정서적으로 안정을 취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필요 -여성 어르신들의 사회참여와 평생교육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평균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지속적인 예산증액이 필요함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설문조사 등 사후 만족도를 분석하여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어르신들의 참여욕구를 증가시키고 접근방식이 편리한 홍보방식 개발 필요	자체
23	한림읍	읍행정기능 활성화 (문화의집 관리운영)	○ 사업내용·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 -직장인 남성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여가생활을 즐기 위한 프로그램이 아닌 직장인들의 자기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개설 필요가 있음. -특히 남성들이 선호할 수 있는 프로그램(예: 낚시교실 등) 개설 시 읍지역 특성상 강사를 초빙하는 어려움이 있어 전문 강사가 아니더라도 지역에서 능력있는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	자체
24	건설과	교통사고 다발지역 안전시설 설치	○ 사업내용·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 -운전자 및 보행자 야간 및 우천 시 안전 고려 가드레일 설치 시 형광이나 자체 발광 센서 등 고려 개선	자체
25	마을 활력과	마을만들기 역량 강화 및 일반(마을만들기 아카데미 운영)	○ 법령(지침 포함) 반영 계획 -여성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 참여 비율 설정 -마을발전사업에 성평등 관점을 반영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진행	자체
26	지역 경제과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 사업내용·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 점점 줄어드는 시점에 매해 최저인건비가(4대보험포함) 10%이상 인상됨에 따른 청년층 대상 일자리사업 발굴도 어렵고, 참여대상자 결정시 여성세대주에 대한 가산점이 부과 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비세대주 여성에 대한 차별이 되고 있으면 실질부양의무자인 경우 가산점이 부과되지 않아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봄. -취약계층에 대한 성별분리통계 자료가 필요함. -매해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결과를 사업에 반영을 해야 더 개선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 마련 가능	자체
27	체육	유소년체육 육성교실	○ 사업내용·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	자체

연번	부서명	사업명	주요 반영 계획	비고
	진흥과	운영	-유소년체육교실 참여 아동대상 체육행사 지원 예산 확충 지원 -여학생들이 참여 할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를 통해 참여 유도	
28	주민 복지과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 사업내용·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 -아동의 특성(장애아동, 다문화, 청소년)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문화체험 및 교육기회가 적은 취약계층 아동들이 대부분 이므로 문화체험 프로그램 강화 -수혜에 있어 성별 격차가 나지 않으나 세부 프로그램에 따라 성별 참여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세부프로그램 별 성별분리통계 구축하여 참여현황 분석 -최근 아동성폭력, 성추행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므로 예방, 대처 교육에 대한 이행여부 점검	자체
29	애월읍	애월도서관 문화학교 운영	○ 예산 반영 계획 -중앙단위 공모사업 활발한 참여로 강좌 예산 확보 -야간, 주말반 운영을 위해선 운영비 추가예산 확보 필요 할 수 있음 ○ 사업내용·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 -다양한 주제 분야의 프로그램 확대 시행 -남성우위, 여성우위로 구분되는 강좌 외에도 남녀 유사한 비율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양성 포괄형 신규 강좌 추진 이나 성평등 인식개선 교육과 같은 양성평등 지향 강좌 운영도 가능 -기타로 야간, 주말 강좌 운영을 위해선 탄력근무제 등 내부 복무규정제도 정비가 요구될 수 있음	자체
30	주민 복지과	아라종합사회복지관 야간보호사업	○ 사업내용·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 -대상 아동·청소년들의 선호도를 반영한 프로그램 개선(마술교실 개설) -참여자들이 프로그램에 집중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설 -마켓데이 : 평소 아동 및 청소년들이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할 시 스티커를 지급하여, 마켓데이에는 스티커로 학용품 등과 교환하는 프로그램 -프로그램별 성별분리 통계 구축, 아동폭력·성추행 예방 교육 강화 및 성평등의식 개선 교육 실시	자체
31	제주 보건소	도시보건지소 운영관리 (건강생활실천 및 만성질환관리프로그램 운영)	○ 사업내용·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 -프로그램 신청시 남녀 제한을 두지 않았으나 여성의 참여가 많고 남성의 참여가 저조하여 남성의 요구도에 맞는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운영	자체
32	농정과	농업경영컨설팅	○ 법령(지침 포함) 반영 계획	자체

연번	부서명	사업명	주요 반영 계획	비고
		지원사업	-농림축산식품사업 지침 또는 법령 개정 시 성비에 대한 기준 적용을 요구할 것임 ○ 사업내용·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 -사업의 특성상 사업수혜자가 보조사업자 신청자 본인만 될 수는 없기에(ex. 경영주인 남성의 이름으로 보조사업을 신청하여 수혜를 받지만 그 혜택은 경영주의 농업인인 여성에까지 미치게 됨) 경영주가 남성, 경영주 외 농업인이 여성으로 등록되어 있는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자뿐만 아니라 공동경작자에게까지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할 예정	
33	자치행정과	주민자치센터 특화프로그램	○ 법령(지침 포함) 반영 계획 -매년 말 운영 보고를 하고 있으므로 해당 결과를 기술하는 과정에 각종 행정 통계 및 보고 통계에서 성별분리통계를 작성할 근거 조항 명시 -자체 규정이나 규칙을 통해 프로그램 운영 계획이 공개될 수 있도록 하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 예산 반영 계획 -프로그램 운영은 성별 요구 반영을 토대로 하게 되므로 시간대와 프로그램 유형들을 고려하여 예산 반영이 필요함. ○ 사업내용·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 -꾸준히 성별·연령별 등 다양한 계층의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설 및 시간대 운영이 필요함	자체
34	체육진흥과	국제규모의스포츠메카 도시인프라 구축 (마을체육시설정비 및 기능보강 사업)	○ 사업내용·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 -이용자의 특성(여성, 아동, 노인 등)을 고려한 체육기구 설치 및 규칙의 다양화 -마을 체육시설의 주변환경(조도)을 개선, 사각지대에 설치하지 않도록 주의 -운동기구에 성차별적인 문구 자체(특히, 여성의 몸매 강조)	자체
35	여성가족과	청소년건강육성 및 활동지원(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 예산 반영 계획 -남녀의 성향 및 욕구 차이를 반영한 상담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의 필요에 따라 지속적인 예산 증액이 필요함 ○ 사업내용·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 -상담신청자의 성별차이 및 성별 요구를 보다 세분화하여 조사 -남녀의 상담욕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상담 프로그램 개발 -성별차이에 따른 상담 프로그램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한 위기청소년 보호	자체
36	경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 사업내용·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	자체

연번	부서명	사업명	주요 반영 계획	비고
	장애인 지원과	운영	-2017년에는 부모자조모임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어머니 모임, 아버지모임으로 실시할 계획임. 아버지자조모임 계획 시 아버지들의 많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주말을 이용하여 진행해야 호응도와 참여율을 높일 수 있음 -남성의 교육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 및 시간편성 등을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다양화 시키고 성별을 고려해 수혜자 비율이 골고루 분배되도록 개선	

자료: 2016년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결과보고

3) 서귀포시청

	부서	사업명	주요 반영 계획	비고
1	건축과	서귀포 건축포럼	○ 사업내용·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 -위원회 여성비율 증진 -성인지 전문가의 활용(전문가 의견 수렴 등)	개선 (수용)
2	녹색 환경과	생태마을체험프로그램 운영	○ 사업내용·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 -성별 요구도 조사 및 성별 통계 생산 -교육 프로그램 신설 또는 강화(교육시간 확대, 교육 매뉴얼 개선 등)	개선 (수용)
3	해양 수산과	해수욕장 관리운영사업	○ 사업내용·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 -양성평등한 참여 제고(적극적 조치 시행, 자격 기준 완화 등)	개선 (수용)
4	영천동	소규모 주민숙원 및 지역개발 사업	○ 사업내용·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 -예산 집행시 사업 내용 추가사항	개선 (수용)
5	해양 수산과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 사업내용·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 -사업지침에 근거 지급요건에 따른 사업수행	개선 (수용)
6	예래동	예래사우나 앞 게이트볼 클럽 조성공사	○ 사업내용·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 -지원체계 및 시설 등 환경 개선	개선 (수용)
7	여성 가족과	청소년수련시설 주5일제 수업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직영)	○ 사업내용·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 -여학생들이 정적인 프로그램, 남학생들이 동적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이 현실이지만 남녀가 함께 참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고정관념을 타파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필요함. 여학생들을 위한 포켓볼 교실 등을 개설 운영할 예정임 -성별분리통계자료를 만들고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여학생의 참여율이 높은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 토록 할 예정임	개선 (수용)
8	서귀포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 예산 반영 계획	자체

	부서	사업명	주요 반영 계획	비고
	보건소	서비스	-2016년 여성비율 예산이 48백만원에서 2017년 51백으로 반영 ○사업내용·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 -여학생 및 여성 흡연자 대상 찾아가는 이동 금연클리닉 운영 확대 -취약계층 여성 집단 및 여성 사업장 발굴, 여성 집단에 지속적인 흡연의 폐해 등에 대한 교육 실시 -여성위주의 금연 지도자를 양성하여 자발적인 금연홍보 참여로 금연 환경 조성에 기여 -여성흡연에 대한 리플릿 개발 제작 보급 등	
9	서귀포 보건소	치매관리사업	○ 예산 반영 계획 -노인 인구대비 점점 늘어나는 치매환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예산 증감 필요 -노인 남성 노인 대상 치매 검진 확대위한 치매조기검진 사업비 확보 ○ 사업내용·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 -유병률은 여자 치매환자가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남성 치매환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치매환자 발견 및 등록관리 -60세이상 지역주민 중 남성 치매검진 강화 및 여성노인이 스트레스를 풀어낼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마련	자체
10	관광 진흥과	제주올레아카데미 운영사업	○ 사업내용·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 -교육프로그램 신설 또는 강화(교육시간 확대, 교육 매뉴얼 개선 등)	개선 (수용)
11	여성 가족과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 사업내용·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 -성별 요구도 조사 및 성별 통계 생산 -교육 프로그램 신설 또는 강화(교육시간 확대, 교육 매뉴얼 개선 등)	개선 (수용)
12	안덕면	안덕청소년문화의집 프로그램 운영(청소년의 행복 네트워크 프로그램 운영)	○ 예산 반영 계획 -남자 청소년들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활동적인 프로그램(탁구, 포켓볼, 농구)을 개인참여보다 단체활동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전환을 모색. -지역의 대학생 자원봉사자나 지역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남자 청소년들이 문화의집을 정기적이고 장기적으로 꾸준히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구상.	개선 (수용)
13	동부 보건소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 사업내용·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 -여성흡연자의 접근성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일대일 찾아가는 금연클리닉을 운영 확대 -취약계층 여성 집단 및 여성 사업장 발굴 등 지속적인 흡연의 폐해 등에 대한 교육 실시 -여성위주의 금연지도자를 양성하여 자발적인 금연홍보 참여로 금연환경 조성에 기여	자체
14	체육 진흥과	파크골프장 기능보강사업	○ 사업내용·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 -지원체계 및 시설 등 환경 개선	개선 (수용)

	부서	사업명	주요 반영 계획	비고
15	문화 예술과	서귀포문화원 문화학교 운영지원	○ 사업내용·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 -성별 요구도 조사 및 성별 통계 생산 -교육 프로그램 신설 또는 강화(교육시간 확대, 교육 매뉴얼 개선 등)	개선 (수용)
16	서귀포 예술의 전당	문화가 있는날 프로그램 동행콘서트	○ 사업내용·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 -성별 요구도 조사 및 성별 통계 생산 -교육 프로그램 신설 또는 강화(교육시간 확대, 교육 매뉴얼 개선 등)	개선 (수용)
17	지역 경제과	일자리 확충과 창조적 인재양성(창업아카데미 운영)	○ 사업내용·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 -교육 참여자 대상 설문조사 내용에 남녀 성별 구분 표시 항목을 추가하여, 성별 요구도 및 만족도 조사를 통해 얻은 결과를 다음 사업에 반영	자체
18	남원읍	남원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	○법령(지침 포함) 반영 계획 -문화의집 이용현황을 바탕으로 참여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연간 문화의집 운영 계획에 포함시켜 참여율이 낮은 성별에 따라 프로그램 계획을 진행 ○예산 반영 계획 -성별 요구차이를 반영하여 예산을 분배했을 시 참여도가 균등하게 예측할 수 있는 효과가 미흡하다고 생각됨에 따라 문화의집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남·여학생의 참여율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와 프로그램을 개발(안)을 강구하여 예산을 배분할 계획임 ○사업내용·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 -각 초·중학교 방문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여 수혜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계획 및 실시 예정임	자체
19	공원 녹지과	도시공원내 어린이놀이시설 정비사업	○ 사업내용·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 -지원체계 및 시설 등 환경 개선	개선 (수용)
20	녹색 환경과	지속가능발전 실천사업 지원	○ 사업내용·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 -사업수혜자의 성별 비율 파악을 위하여, 내년도 사업 추진 시 각 사업에 대해 참여자 명단(연령, 성별 포함) 작성토록 보조사업자와 협의 필요 -각종 프로그램 운영 시 참여자(사업수혜자)에 대한 기본적인 성인지 마인드가 뒷받침될 수 있도록 보조사업자 대상 교육 필요	자체
21	여성 가족과	드림스타트 사업	○ 사업내용·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 -성별 요구도 조사 및 성별 통계 생산 -서식 개선(성별 항목 추가, 등급 조정 등) -교육 프로그램 신설 또는 강화(교육시간 확대, 교육 매뉴얼 개선 등)	개선 (수용)
22	문화 예술과	공예공방 운영관리	○ 사업내용·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 -홍보 강화 -만족도조사실시	개선 (수용)
23	자치	자원봉사참여 활성화	○ 사업내용·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	개선

	부서	사업명	주요 반영 계획	비고
	행정과		○ 양성평등 교육을 연간 1회 이상 진행 계획	(수용)
24	주민 복지과	주민서비스 지원 및 연계 (읍면동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지원)	○ 사업내용·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 ○ 양성평등 교육을 연간 1회 이상 진행 계획	자체
25	평생교육 지원과	청소년 대중문화 캠프 운영	○ 사업내용·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 ○ 전체 참가자의 고른 성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운영보안 할 예정이며 기존 통합적으로 조사했던 만족 도 조사를 성별 만족도를 파악할 수 있게 변경하여 차 후 여성·남성 차이를 분석하여 운영에 반영할 계획	자체
26	평생교육 지원과	진로정보센터 운영사업	○ 사업내용·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 -만족도조사 실시	개선 (수용)
27	도서관 운영 사무소	기적의 도서관 운영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 사업내용·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 -성별 요구도 조사 및 성별 통계 생산 -교육 프로그램 신설 또는 강화(교육시간 확대, 교육 매뉴 얼 개선 등)	개선 (수용)
28	마을 활력과	매력있는 마을만들기 교실 운영	○ 사업내용·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 -지역주민의 역량강화를 교육에 대한 대상자 선정시 남녀 비율 조정 및 남녀 평등관련 교육 예를 들면 인권과 성 인지 감수성과 관련 교과목 신설할 계획임	자체
29	송산동	솔동산 문화의 거리 야간환경 개선 사업	○ 사업내용·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 -서식 개선(성별 항목 추가, 등급조정 등)	개선 (수용)
30	도서관 운영 사무소	서부도서관운영 (독서문화프로그램운영)	○ 사업내용·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 -성별에 따른 욕구 조사 실시 등을 통해 프로그램 계획 수 립시 남성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프로그램 수립	자체
31	서부 보건소	치매관리사업	○ 예산 반영 계획 -인지재활프로그램 및 치매 가족지지 프로그램 운영을 위 한 예산 반영 예정 -남성 노인 대상 치매 검진 확대를 위한 치매조기검진 사 업비 추가 확보 ○ 사업내용·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 -60세 이상 지역주민 중 남성 치매검진 강화 -인지재활프로그램 및 가족지지 프로그램 운영 -여성노인의 스트레스를 풀어낼 수 있는 경로당 치매예방 프로그램 운영	자체
32	표선면	문화의집 관리운영	○ 법령(지침 포함) 반영 계획 -청소년문화의집은 남녀 성별 차이를 두고 모집이나 프로 그램을 진행하지 않음 -남성 청소년이 관심이 높은 동적인 스포츠 프로그램 개 발 및 운영 ○ 예산 반영 계획 -청소년문화의집은 남녀 성별 차이를 두고 모집이나 프로 그램을 진행하지 않음 -남성 청소년 선호 프로그램을 조사 및 결과 반영	자체

	부서	사업명	주요 반영 계획	비고
			○ 사업내용·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 -청소년문화의집은 남녀 성별 차이를 두고 모집이나 프로그램 진행하지 않음	
33	건설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	○ 사업내용·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 -성별 요구도 조사 및 성별 통계 생산 -양성평등한 참여 제고(적극적 조치시행, 자격 기준 완화 등)	개선 (수용)
34	대정읍	사랑 나눔의 날 추진	○ 사업내용·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 -성별 요구도 조사 및 성별 통계 생산	개선 (수용)
35	정보화 지원과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 사업내용·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 -만족도 조사 실시	개선 (수용)
36	감굴 농정과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 사업내용·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 -평가항목 개선 -사업신청시 공동 영농일 경우 경영자, 배우자 이름 공동 기재.	개선 (수용)
37	마을 활력과	귀농귀촌 정착교육사업	○ 법령(지침 포함) 반영 계획 -연간운영계획 수립 시 여성참여율이 높은 교육과정 선정 하여 반영 ○ 예산 반영 계획 -여성 귀농귀촌인들이 선호하는 교육과정 개설을 위한 예산 반영 ○ 사업내용·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 -여성 귀농귀촌인들이 선호하는 교육과정(윌트, 천연염색, 천연비누 화장품 교육 등)을 점차 확대 개설 -사전수요조사를 통해 여성 교육참여자의 요구를 반영하는 사업 시행 -창업컨설팅, 창업교육과정을 통해 여성 귀농귀촌인들의 정착률 제고	자체
38	효돈동	쇠소각 청소년 서핑교실	○ 법령(지침 포함) 반영 계획 -프로그램 기본계획에 성별 교육 수혜율 집계를 규정 할 계획 -프로그램 기본계획에 성이 교육 참여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규정 할 계획 ○ 예산 반영 계획 -쇠소각 서핑 프로그램 평가 시 여성의 교육 참여 비율을 평가지표에 반영할 계획 -여성 청소년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 개설을 위한 예산 반영 예정 ○ 사업내용·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 -여학생이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맞춤형 형과정 개설, 실내 프로그램 개발 등 프로그램형태를 다양화 할 예정	자체

	부서	사업명	주요 반영 계획	비고
39	서홍동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사업내용·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 -성별 요구도 조사 및 성별 통계 생산 -교육 프로그램 신설 또는 강화(교육시간 확대, 교육 매뉴얼 개선 등)	개선 (수용)
40	동홍동	동홍동 어르신이야기사업	○ 사업내용·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 -성별 요구도 조사 및 성별 통계 생산	개선 (수용)
41	안전 총괄과	시민이 주도하는 안전문화 확산 시책추진	○ 사업내용·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 -사업공모시 여성관련 안전정책사업 일정 부분 채택 적극 검토	개선 (수용)
42	안전 총괄과	지역자율방재단 재난예방활동 등	○ 사업내용·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 -여성참여자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활동 개발(재난예방 홍보 등) -재난방재 관련 교육 시 성인지적 재난방재교육 실시 -여성참여율 제고 위한 인센티브 마련(재난 심리적지지 교육 수강 지원 등)	자체
43	여성 가족과	서귀포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 사업내용·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 -성별 요구도 조사 및 성별 통계 생산 -서식 개선(성별 항목 추가, 등급 조정 등)	개선 (수용)
44	평생교육 지원과	2016년 행복학습센터 운영 사업	○ 사업내용·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 -남성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남성의 요구를 파악하고 그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음. 남성 참여를 높이는 프로그램인 스포츠뿐만이 아니라 아버지 프로그램, 아빠 육아 교실과 같은 실생활에 필요한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고 봄	자체
45	동부 보건소	치매예방관리사업	○ 예산 반영 계획 -노인인구대비 점점 늘어나는 치매환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예산 증감 필요 -남성노인 대상 치매검진 확대를 위한 치매조기검진사업비 확보 -남성노인 대상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확대를 위한 사업비 확보 사업내용·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 -취약계층 가정방문 시 남자어르신에 대한 치매조기검진 적극 실시 -경로당 등 집합보건교육 시 상대적으로 소수인 남자어르신에 대하여 치매예방교육 참여독려 및 보건소 치매사업에 대한 안내와 홍보실시 -여자치매환자에 대한 상담 시 배우자(남편)의 건강상태와 병력 등 가족상담운영으로 대상자 발굴	자체
46	복지 위생과	(대륜동) 주민편의시설 및 재해취약지구 안전시설	○ 예산 반영 계획 -기존에는 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한 시설 정비사업 예산	자체

	부서	사업명	주요 반영 계획	비고
		정비	- 을 편성하였다면, 2017년에는 성별특성을 고려하여 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예산 반영 ○ 사업내용·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 -기존에는 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한 시설 정비사업을 실시하였다면, 2017년에는 성별특성을 고려하여 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시설을 이용하는 대륜동 거주주민에 대하여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예정임	
47	성산읍	신산청소년문화의집 프로그램운영	○ 사업내용·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 -성별 요구도 조사 및 성별 통계 생산 -서식 개선(성별 항목 추가, 등급 조정 등) -평가항목개선	개선 (수용)
48	도서관 운영 사무소	중앙도서관운영 (독서문화프로그램운영)	○ 법령(지침 포함) 반영 계획 -성별육구조사 실시 등을 통해 프로그램 계획 수립시 남성 및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예산 반영 계획 -성별에 따른 육구조사 실시 후에 추후 개선 여부 조정. ○ 사업내용·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 -사업 참여자에 대한 성별 분리 통계가 2016년부터 집계되고 있음. -남성 및 여성의 요구를 반영한 홍보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필요에 따라 육구조사 실시예정 -교사, 강사에 대한 성폭력 범죄 조화가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나 성폭력 교육과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	자체
49	도서관 운영 사무소	동부도서관운영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 사업내용·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 -평가항목 개선	개선 (수용)
50	성산읍	성산일출도서관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 사업내용·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 -교육프로그램 신설 또는 강화(교육시간 확대, 교육매뉴얼 개선 등)	개선 (수용)
51	경로장애 인지원과	장애인고용장려금지원	○ 사업내용·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 -여성장애인 고용 업체 발굴	개선 (수용)
52	서부 보건소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 예산 반영 계획 -여성 대상 흡연 교육 및 프로그램 확대 운영을 위한 예산 반영 예정 ○ 사업내용·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 -여학교 대상 찾아가는 금연클리닉 및 프로그램 운영 -취약계층 여성집단 및 여성 사업장 발굴, 여성집단에 지속적인 흡연의 폐해 등에 대한 교육 실시 -여성흡연에 대한 교육자료 제작 보급	자체
53	정방동	문화의집 프로그램 운영(강사수당 등)	○ 예산 반영 계획 -분석평가 결과 남성의 수요를 반영한 신규교육 내용 개발에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자체

	부서	사업명	주요 반영 계획	비고
			○ 사업내용·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 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남성의 요구를 반영한 기획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홍보를 강화하여 지역주민들의 능동적 문화 활동 참여 도모	
54	천지동	혼디드렁 친환경 체험 농장 운영(주민참여예산)	○ 사업내용·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 -홍보 강화	개선 (수용)
55	관광진흥과	창조형미래인재 관광도슨트 육성사업	○ 사업내용·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 -교육프로그램 신설 또는 강화(교육시간 확대, 교육매뉴얼 개선 등)	개선 (수용)
56	도서관운영사무소	삼매봉도서관운영(독서문화프로그램운영)	○ 사업내용·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 -교육프로그램 신설 또는 강화(교육시간 확대, 교육매뉴얼 개선 등)	개선 (수용)
57	평생교육지원과	서귀포시 행복드림 아카데미 운영	○ 사업내용·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 -성별 요구도 조사 및 성별 통계 생산 -서식개선(성별 항목 추가, 등급 조정 등)	개선 (수용)
58	여성가족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	○ 사업내용·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 -교육프로그램 신설 또는 강화(교육시간 확대, 교육매뉴얼 개선 등)	개선 (수용)
59	중앙동	산업육성 및 지역개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지역개발사업)	○ 사업내용·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 -지원체계 및 시설 등 환경 개선	개선 (수용)
60	표선면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 사업내용·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 -지역 인적 자원 활용 성별에 따른 선호 프로그램 사전 조사	개선 (수용)

자료: 2016년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결과보고

연구보고서 2017-11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효과 제고 방안

발 행 일 2017년 12월 22일
발 행 인 이 은 희
발 행 처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30(연동)
☎064-710-3482, Fax.064-710-3489
www.jewfri.kr
발 행 인 신우인쇄

※ 이 보고서는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롭게 인용은 가능하나 내용의 무단 전제나
복제를 금합니다.

ISBN : 979-11-87026-23-5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효과 제고 방안



제주여성가족연구원

6312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30(연동)

✉ jewfir@jewfri.kr 🌐 www.jewfri.kr



9 791187 026235

ISBN : 979-11-87026-23-5